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금융감독원의 약속입니다

알기 쉬운

新 외부감사법 가이드 북

기업 실무자의 新 외부감사법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서

FSS www.fss.or.kr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19. 12



발 간 사

일련의 대형 회계부정 스캔들 이후 회계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자 회계개혁이 추진되었으며, 그 결과 외부감사법이 전면적으로 개정(2017.10.31.)되었습니다.

新외부감사법은 회사와 감사인 등 회계시장 참여자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계시장에 파급효과가 큰 주기적 지정제, 감사인 등록제, 심사제도, 회계분식 과징금 등 새로운 제도가 대거 도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감사인 선임절차, 내부통제 인증수준 강화(검토-감사) 등 기존의 제도도 적지 않게 개선되었으며, 그 시행시기도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회계정보의 생성·유통 당사자인 회사가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회계개혁 성공의 첫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회사의 입장에서 新외부감사법을 이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외부감사법 안내서를 발간하게 되었으며, 회사의 편의를 고려해 외부감사법이 적용되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 외부감사법의 대상여부 - 감사인의 선임·지정 - 감사인의 해임·변경 - 재무제표의 작성 제출 -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각 장별로 상세히 설명하고 비교적 회사 입장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는 감사인 등록제와 감리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기술하였습니다.



이무쫘록 본 안내서가 회사의 회계실무자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됨과 동시에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 新외부감사법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新외부감사법 안착을 위하여 여념이 없음에도 본 책자의 발간을 위해 노력한 회계관리국 최상 국장과 회계관리총괄팀 김종근 팀장 및 백주현 선임(변호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본 책자를 검토해 주신 오광욱, 황문호 차문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12월

금융감독원 회계전문심의위원

백주현



Contents

발간사

제1장

외부감사법의 개요

- I. 외부감사법이란? · 12
 - 1. 외부감사의 의미 · 12
 - 2. 외부감사법의 목적 · 13
 -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4
- II. 주요용어 및 관련 유관기관 · 14
 - 1. 주요용어의 의미 · 14
 - 2. 관련 유관기관 등 · 16
- III. 관계 법규 · 18
 -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8
 -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
 -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9
 - 4.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 20
 - 5.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20

제2장

외부감사의 대상

- I. 외부감사 대상 회사 · 22
 - 1. 주권상장법인 · 22
 - 2. 상장예정법인 · 22
 - 3. 비상장주식회사 · 24
 - 4. 유한회사 · 29
- II. 외부감사 면제 회사 · 32
 - 1.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 33
 - 2. 단순 신설법인 · 33
 - 3. 합병·분할 신설법인 · 34
 - 4. 특수한 형태의 회사 등 · 37

제3장

감사인의 선임

I. 감사인의 자격	· 44
1. 개요	· 44
2.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에 대한 감사제한	· 44
3.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감사제한(감사인 등록제)	· 45
II. 감사인 선임기한	· 46
1. 개요	· 46
2. 통상의 회사	· 47
3.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	· 47
4. 직전 사업연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한 회사	· 48
III. 감사인 선임대상 사업연도	· 49
1.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	· 49
2. 그 밖에 비상장회사 등	· 50
IV. 감사인의 선정	· 51
1. 개요	· 51
2. 감사인의 선정	· 51
3. 감사인의 선정절차	· 52
4. 감사인선임위원회	· 55
V. 감사인의 선임절차	· 64
1. 감사인 선정기준 및 절차 마련	· 65
2. 감사인의 선정	· 69
3. 감사계약 체결	· 70
VI. 감사인의 선임보고	· 71
1. 주주에 대한 보고	· 71
2. 증권선물위원회에 대한 보고	· 72
VII. 사후확인	· 74

제4장

감사인의 지정(上)- 직권지정

I. 감사인의 지정이란?	· 78
1. 개요	· 78
2. 감사인 지정의 유형	· 80
II. 감사인 지정사유(직권지정)	· 80
1.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	· 80
2. 감사인 미선임 회사	· 81
3.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 81
4. 감사인 부당교체	· 82
5. 회계처리기준위반이 확인된 회사	· 83
6. 재무제표 대리작성 등	· 84
7. 법에서 정한 재무기준에 미달하는 주권상장법인	· 84
8.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권상장법인	· 87
9.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상장법인	· 87
10. 주채권은행·기관투자자가 지정을 요청한 회사	· 88
11. 감사인 해지절차 위반	· 91
12. 표준감사시간보다 현저히 낮은 감사시간	· 92
13. 최대주주·대표이사 변경	· 93
14. 주권상장에정법인	· 94
15. 회사의 귀책사유로 감사인이 감사계약을 해지한 회사	· 96
16. 외부감사법을 위반한 회사	· 97
17.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인 지정이 요청된 회사	· 98
18. 소속 임직원의 횡령·배임	· 98
19. 지정기초자료 미제출·부실제출 회사	· 99
III. 감사인 지정시기	· 100
1. 개요	· 100
2. 당기 사업연도에 대한 지정사유	· 100
3. 차기 사업연도에 대한 지정사유	· 101
IV. 지정대상 기간	· 102
1. 개요	· 102
2. 주기적 지정대상 회사	· 103
3. 그 밖의 회사	· 104

V. 감사인 지정절차	· 105
1. 지정절차의 개관	· 105
2. 지정대상 회사의 선정	· 106
3. 사전통지	· 109
4. 의견제출	· 110
5. 본통지(지정처분)	· 118
6. 재지정	· 119

제5장

감사인의 지정(下) - 주기적지정

I. 주기적 지정제도	· 122
1. 개요	· 122
2. 주기적 지정대상 회사	· 123
II. 주기적 지정요건	· 125
1.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	· 125
2. 자유선임 계약체결	· 125
III. 주기적 지정의 면제	· 126
1. 개요	· 126
2. 6년 이내 회계처리기준 위반 미발견	· 126
3. 감리신청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미발견	· 128
IV. 주기적 지정절차	· 129
1. 주기적 지정절차의 개관	· 129
2. 주기적 지정의 연기	· 130

제6장

감사인의 해임·변경

I. 감사계약의 해지	· 136
II. 회사의 감사인 해임	· 137
1. 사업연도 중 회사의 해임사유	· 137
2. 3개 사업연도 중 회사의 해임사유	· 139
III.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 140
1. 사업연도 중 감사인의 해지사유	· 141
2. 3개 사업연도 중 감사인의 해지사유	· 143

Contents

제7장

재무제표의 작성·제출

- I. 회계처리기준 · 148
 - 1. 개요 · 148
 -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회사 · 149
 - 3. 별도재무제표 작성의무 · 149
- II. 재무제표의 작성 및 제출 · 150
 - 1. 재무제표의 작성 · 150
 - 2. 감사 전(前) 재무제표의 제출 · 154
 - 3. 결산 재무제표의 제출 · 156
- III. 감사보고서의 제출 · 157
 - 1. 감사보고서의 제출 · 157
 - 2. 회사에 대한 제출기한 · 157
 - 3. 증권선물위원회에 대한 제출기한 · 159

제8장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 I. 내부회계관리제도란? · 162
- II.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대상 · 164
 - 1. 적용대상 회사 · 164
 - 2. 적용예외 · 164
 - 3.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범위 · 167
- III. 운영실태 보고·평가·공시 · 169
 - 1. 운영실태 보고 · 169
 - 2. 운영실태 평가 · 171
 - 3. 공시 · 172
- IV.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 및 감사 · 173
 - 1. 개요 · 173
 - 2.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내용 · 175

제9장

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제도

- | | |
|-----------------------|-------|
| I. 감사인 등록제도란? | · 178 |
| II.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 · 179 |
| 1. 인력에 관한 사항 | · 180 |
| 2.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 · 181 |
| 3. 심리체계 및 보상체계 | · 182 |
| III. 감사인 등록절차 | · 183 |
| 1. 등록신청 | · 183 |
| 2. 등록심사 | · 184 |
| 3. 등록사실 공고 또는 등록거부 통보 | · 184 |
| IV.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의 효과 | · 185 |

제10장

심사·감리제도

- | | |
|------------------------|-------|
| I. 심사·감리제도의 개요 | · 188 |
| 1. 심사·감리의 의의 | · 188 |
| 2. 심사·감리집행기관 | · 190 |
| 3. 심사·감리의 대상 | · 191 |
| II. 심사·감리의 집행 | · 193 |
| 1. 심사·감리의 착수 | · 193 |
| 2. 심사·감리의 절차 및 방법 | · 198 |
| 3. 심사·감리결과의 처리 | · 205 |
| III. 심사·감리결과조치 | · 209 |
| 1. 행정제재조치 | · 209 |
| 2. 검찰에 대한 고발 등 | · 212 |
| IV. 심사·감리결과조치에 대한 불복절차 | · 213 |
| 1. 이의신청 | · 213 |
| 2. 행정심판 | · 214 |
| 3. 행정소송 | · 215 |
| V. 심사·감리결과조치에 대한 직권재심 | · 216 |



제 1 장

외부감사법의 개요

—
알기 쉬운
「新외부감사법 가이드북」

- I. 외부감사법이란?
- II. 주요용어 및 관련 유관기관
- III. 관계 법규

제 1 장 외부감사법의 개요

I 외부감사법이란?

1 외부감사의 의미

Key Point

- ☑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란 외부감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가. 외부감사의 정의

- 외부감사란 회사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또는 “법”)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는 것을 의미함

나. 외부의 감사

- 외부감사는 회사로부터 독립된 감사인(監査人)에 의한 감사(監査)를 의미하므로 회사의 기관인 감사(監事)나 기타 내부 조직에 의한 감사(監査)는 외부감사가 아님

다.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

-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란 외부감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감사를 받은 것을 의미하므로

- 회사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외부감사법에 따라 선임된 감사인이 아니거나,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회사에 대하여 이루어진 회계감사¹⁾(임의감사)는 외부감사가 아님
- 개별법률에서 외부감사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에도²⁾, 개별법률(특별법)에 따른 외부감사는 외부감사법상의 외부감사와는 구별됨
 - 회사가 외부감사법에 의하지 않고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도 실무상 “외부감사”, “외부감사법상 감사인의 회계감사”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 위의 경우는 외부감사법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가 아니므로, 외부감사법 자체에서 규정하는 외부감사는 아님

2 외부감사법의 목적

- 외부감사법은 회사의 공정한 회계처리를 통하여 회사의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에 주요 목적이 있음(법 제1조)
 - 외부감사법은 이러한 공익달성을 위하여 외부감사 대상 회사에 자기의 비용으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받을 것을 강제하고 있으며,
 - 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회계법인 등)에게도 여러 행정상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1) 실무상 임의감사로 부르고 있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9조 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제1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 등

외부감사법의 개요
 외부감사의 대상
 감사인의 선임
 감사인의 지명
 감사인의 지명
 감사인의 지명
 감사인의 지명
 감사인의 책임
 재무제표의 작성 제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감사인의 권리와
 책임
 감사인의 보수
 감사인의 면직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외부감사법은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일반법으로, 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외부감사법의 목적과 기본 원리에 맞도록 하여야 함(법 제3조 제1항)
 - 다만 공인회계사의 감사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의 규정이 외부감사법과 다른 경우에는 회계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본시장법을 따름

II 주요용어 및 관련 유관기관

1 주요용어의 의미

가. 회사

Key Point

- ☑ 외부감사법상 회사란 상법에서 규정하는 주식회사·유한회사를 말한다.

- 회사란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를 의미함(법 제2조 제1호)
 - “회사”란 상법상 회사를 의미하므로,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이어야 함(상법 제169조)
 - 상법상의 회사이어야 하므로 주식회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상법이 준용되더라도 상법이 아닌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예: 수협은행 등)은 외부감사법상의 회사가 아님

- 유한회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상법상 유한회사의 규정이 준용되더라도 영리목적이 아닌 전문자격사의 업무의 조직화를 위하여 결성된 법인(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은 외부감사법상의 회사가 아님
- 또한 회사란 외부감사의 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므로 외부감사 대상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는 외부감사법에서 규정하는 회사가 아님

나. 주권상장법인

-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하였거나,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그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의미함(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3호).

다. 대형비상장주식회사

- 대형비상장주식회사란 주식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의미함(법 제2조 제5호, 영 제4조)

라. 임원

- “임원”이란 이사, 감사(감사위원회 위원 포함), 상법상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 지시자를 의미함(법 제2조 제6호).

마. 감사보고서

- 감사보고서란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고 그에 따른 감사의견을 표명한 보고서를 의미함(법 제2조 제8호)
 -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또는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여야 함(법 제8조 제7항)

바. 금융회사

- 금융회사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³⁾, 농협은행, 수협은행을 의미함

2 관련 유관기관 등

< 외부감사법상의 유관기관 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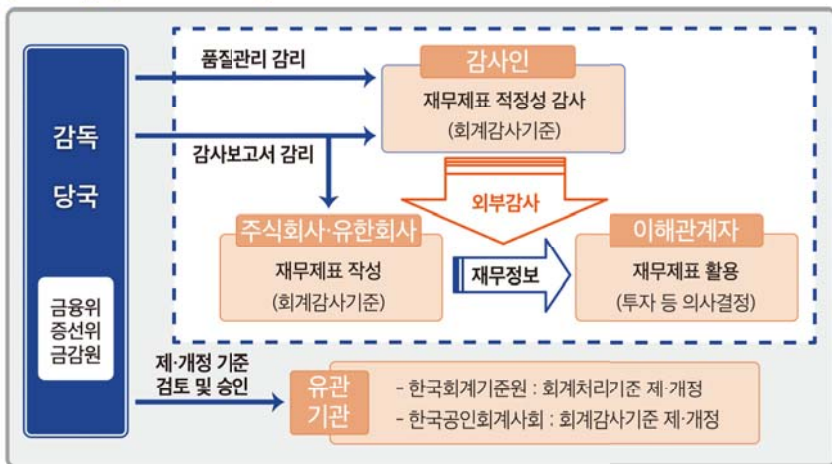
감독당국	
금융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결기구) 제반 규정·기준의 제정·승인 → 행정조치권 : 과징금 부과, 업무정지·등록취소 조치
증권선물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의결기구) 제반 회계감독 관련 업무의 의사결정 및 심의 → 행정조치권 : 회사 및 회계법인·회계사에 대한 조치
금융감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반 회계감독 관련 업무의 실무 집행 (감사인 선임·해임보고, 감사前재무제표·감사보고서 등 외감 서류의 접수, 감사인 지정, 감사보고서 감리·품질관리감리, 기타 증선위 위탁업무 등)
유관기관	
한국회계기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처리기준의 제·개정 (금융위 위탁, 수정요구권) →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질의·회신
한국공인회계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감사기준의 제·개정 (금융위 사전승인)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인 아닌 비상장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 감리 → 공인회계사 윤리규정의 제·개정 및 위반회원에 대한 조치

-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
 - 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행정청은 행정권한을 보유한 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공단체·사인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됨 (행정절차법 제2조 제1호)
 - 외부감사법상의 행정권한을 가지는 행정청으로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장,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회계기준원이 있음
- 금융감독원장,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행정기관은 아니나, 위임·위탁 규정을 통하여 외부감사법상의 행정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 해당 행정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
 - 이들 기관은 행정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행정청으로서 행정절차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등이 적용되며, 법치주의, 적법절차·비례의 원칙 등 헌법·행정법의 일반원칙의 구속을 받게 됨
- 외부감사법상 주요 행정권한은 증권선물위원회가 보유하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규정의 제·개정 승인이나, 중한 제재조치 권한을 행사함
- 금융감독원장은 회계감독업무의 실무집행 및 상장법인 등의 감리업무를 담당함
- 한국회계기준원은 회계처리기준의 제·개정 업무를 담당하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감사기준의 제·개정 및 비상장법인 등의 감리를 담당하고 있음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자.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차.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회계감독제도의 개요 〉



III 관계 법규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또는 “법”)은 외부 감사제도를 규율하는 법률로서 5개장 50개 조문 및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음
 - 외부감사법은 외부감사 관련 법규에 관한 상위 규범으로서 다른 하위 외부감사 법규들에 대한 해석의 한계 및 기준이 됨
 - 제1장(총칙)에서는 법률의 목적, 주요개념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 제2장(회사 및 감사인)에서는 외부감사의 대상, 재무제표의 작성, 내부

회계관리제도, 감사인의 선임·지정·해임 및 감사인에 대한 감독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제3장(감독 및 처분)에서는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의 감리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제4장(보칙)에서는 감사인 미선임 회사에 대한 특례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위탁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제5장(벌칙)에서는 외부감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 부칙에서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시행시기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2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외부감사법 시행령” 또는 “영”)은 외부감사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법률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대통령령으로서 49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음

3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외부감사법 시행규칙” 또는 “시행규칙”)은 외부감사법 및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법령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총리령으로서 12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음

4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감규정” 또는 “규정”)은 외부감사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법규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행정규칙(금융위원회 고시)으로서 45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음

5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은 외부감사법 및 하위 법규에서 위임된 사항 및 법규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제정한 행정규칙(금융감독원 세칙)으로서 43개 조문 및 45개 신고서식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금융위원회의 고시인 외감규정과 금융감독원장의 시행세칙은 행정규칙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나,
 - 상위법인 외부감사법령에서 법규사항을 (재)위임하고 있으므로 위임 받은 사항의 한도 내에서는 대외적인 강제력이 인정되는 법규적 효력이 있음

제 2 장

2

외부감사의 대상

—
읽기 쉬운

「新외부감사법 가이드북」

- I. 외부감사 대상 회사
- II. 외부감사 면제 회사

제 2 장 외부감사의 대상

I 외부감사 대상 회사

1 주권상장법인

- 주권상장법인이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또는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의미함(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3호)

2 상장예정법인

가. 개요

Key Point

- 상장예정법인의 경우 감사인 지정신청을 통해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 대상이 된다.
- 상장예정법인이란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 법인이 되려는 회사를 의미함

- 상장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 외부감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회사의 규모 등이 외부감사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상장예정 법인에 해당하면 외부감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회사가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정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무상 회사는 신청에 의하여 감사인을 지정 받아 상장예정법인으로서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고 있음
- 회사가 상장법인이 되려는 사정이 소멸하면 다른 외감대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됨
 -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향후 외부감사를 받을 의무도 소멸하나,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이전에 발생한 외부감사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된 이후에도 경우에 따라 제재 또는 처벌이 있을 수 있음

나. 우회상장·합병상장

- 비상장회사가 상장회사와 합병하여 상장하거나(우회상장),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는 방법으로 해당 주식회사의 주권이 상장되는 효과가 있게 하려는 경우가 있음
 - 이러한 우회상장이나, 합병상장을 하려는 비상장회사는 상장예정법인으로서 외부감사의 대상이 됨
 - 우회상장이란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증권상장규정에서 정하는 우회상장을 의미함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상장이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 목적으로 하고 모집을 통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법인(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4호의 기업인수목적회사)과 합병하는 경우를 의미함



3 비상장주식회사

가.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 개별(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함

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개별(별도)재무제표상 직전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함
 -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봄
 - 예를들면, 직전 사업연도가 1개월인 회사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1개월간의 매출액을 12배로 계산(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됨

다. 소규모회사를 제외한 회사



Key Point

- ☑ ①자산 120억 이상, ②부채 70억 이상, ③매출액 100억 이상, ④종업원 100명 이상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이 된다.

1) 소규모회사의 의미

- 개별(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 다음 4가지 항목 중 3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소규모 회사가 아닌 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됨 (영 제5조 제1항 제3호)

외감제외 주식회사 판단기준

- ①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
-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미만
- ③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 :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 ④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미만 : 종업원이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만 여기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항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일용근로자⁴⁾에 해당하는 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따라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 근로자 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는 근로자에서 제외된다.

2)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의 의미

■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는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범위가 달라짐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①법 제14조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 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고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
 -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타자·취사·경비등의 업무
 -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재(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이란 소규모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이란 “해당하는 항목이 3개 이상이 아닌 경우”를 의미하고, 결론적으로 네가지 기준항목 중 0~2개에 해당하는 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이 됨

※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의 의미

- 한편,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을 “해당하지 아니하는 항목이 3개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오해하여 해석하는 경우에는 네가지 기준 항목 중 0~1개에 해당하는 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이 됨
 - 그러나 영 제5조 제1항 제3호의 입법취지는 자산 120억원 미만, 부채총액 7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종업원 100명 미만 중 3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소규모 회사)를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회사를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임
 -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이란 “해당하지 아니하는 항목이 3개 이상인 경우”가 아니라, “해당하는 항목이 3개 이상이 아닌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
- 자산 120억·부채 70억·매출액 100억원·종업원 100명 미만(이하 “4개 기준”) 중 “해당하는 항목이 3개 이상이 아닌 경우”는 의미는, “해당하는 항목이 2개 이하인 경우”라는 의미와 같고,
 - 네가지 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항목이 2개 이하인 경우란 네가지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2개 이상인 경우와 같은 결과가 됨
 - 그러므로 현행 시행령에서 외감대상으로 규정하는 “자산 120억, 부채 70억, 매출액 100억원, 종업원 100명 미만 중에서 해당하는 항목이 3개 이상이 아닌 회사”란,
 - “자산 120억, 부채 70억, 매출액 100억원, 종업원 100명 이상 중에서 해당하는 항목이 2개 이상인 회사”와 그 의미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음

〈 주식회사의 사례별 외감여부 판단 〉

사례	외감기준 이상인 항목의 개수	시행령 적용 결과	외감여부
자산 120억, 부채 70억, 매출액 100억, 종업원 100명	4개	자산 120억, 부채 70억, 매출액 100억원, 종업원 100명 미만 중 0개에 해당	외감대상
자산 119억, 부채 70억, 매출액 100억, 종업원 100명	3개	자산 120억, 부채 70억, 매출액 100억원, 종업원 100명 미만 중 1개(자산)에 해당	외감대상
자산 119억, 부채 69억, 매출액 100억, 종업원 100명	2개	자산 120억, 부채 70억, 매출액 100억원, 종업원 100명 미만 중 2개(자산, 부채)에 해당	외감대상
자산 119억, 부채 69억, 매출액 99억, 종업원 100명	1개	자산 120억, 부채 70억, 매출액 100억원, 종업원 100명 미만 중 3개(자산, 부채, 매출액)에 해당	비외감대상 (소규모회사)
자산 119억, 부채 69억, 매출액 99억, 종업원 99명	0개	자산 120억, 부채 70억, 매출액 100억원, 종업원 100명 미만 중 4개(자산, 부채, 매출액, 종업원)에 해당	비외감대상 (소규모회사)

라. 개정 규정의 시행시기

- 개정 외부감사법은 개정법에 따른 외감기준 적용시기를 회사가 개정 시행령 시행 당시에 구법 기준상 외감대상 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음(영 부칙 제2조)

※ 개정 전 외부감사법 시행령은 자산 120억 이상, 부채 및 자산 70억 이상, 종업원 300명 및 자산 70억 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외부감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음(구 영 제2조 제1항)



- 이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는 아래와 같이 두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1) 개정기준이 2019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회사

- 부칙상 2018년 1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회사로 규정되어 있음
 - 2018년 11월 1일 당시 개정 전 외부감사법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인 회사가 해당 사업연도에 개정 외감기준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여부를 판단하였더라도 여전히 외부감사 대상인 회사가 이에 해당함 (영 부칙 제2조 제1호 가목)
 - 해당 회사는 개정 외부감사법이 시행되는 2018년 11월 1일부터 개정 외감기준이 적용되므로, 2019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 여부를 판단시 개정 기준을 적용하여 외부감사 대상여부를 판단하게 됨

2) 개정기준이 2020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회사

- 부칙상 2019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회사로 규정되어 있으며, 위 1)항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가 이에 해당함
 - 구체적으로는 2018년 11월 1일 당시 개정 전 외부감사법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인 회사이면서, 2018 사업연도에 개정 외감기준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2018 사업연도에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영 부칙 제2조 제1호 나목)
 - 또는 2018년 11월 1일 당시 개정 전 외부감사법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영 부칙 제2조 제2호)를 의미함
 - 이러한 회사들은 개정 기준이 2020 사업연도부터 적용되고, 2019 사업연도에는 개정 전 외부감사 대상기준이 적용됨
 - 따라서 해당회사들은 2019 사업연도에는 구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인지 여부가 결정됨.⁵⁾

4 유한회사

-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유한회사가 새롭게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되었음
 - 개정 외부감사법에 따라 유한회사는 2019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외부감사 대상이 됨(법 부칙 제2조)

가. 자산총액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

- 의미는 비상장주식회사의 자산총액 및 매출액 판단기준(앞서 3의 가, 나항에서 기술)과 동일함

나. 소규모회사를 제외한 회사

Key Point

- ☑ ①자산 120억 이상, ②부채 70억 이상, ③매출액 100억 이상, ④종업원 100명 이상
⑤사원 수 50인 이상 중 3개 이상에 해당되는 유한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이 된다.

1) 소규모 회사의 의미

- 유한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대상기준과 차이가 있음
 - 소규모 유한회사란 소규모 주식회사 기준 4개(자산총액 120억원, 부채총액 70억원, 매출액 100억원, 종업원 수 100인)에다가 사원 수 50인 미만 기준을 추가하여 5개 기준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함
 - 유한회사 중 소규모 유한회사가 아닌 회사를 외부감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임

- 5) 외부감사 대상 기준에 한하여 구 시행령이 적용된다는 의미이므로, 외부감사 대상이 된 이후의 절차감사인 선임 등은 개정 외부감사법에 따라야 함

- 결국 유한회사 중에서는 다음 5가지 항목 중 3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소규모 회사)가 아닌 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됨

외감제외 유한회사 판단기준

- ①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
-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미만
- ③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
- ④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미만
- ⑤ 인원 수 50인 미만 : 사원이란 유한회사에 관하여 출자죄수에 따른 지분을 가지는 자로서 유한회사의 정관에 기재되는 자를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의 직원 (종업원)은 사원이 아니다.

- ①~④ 항목의 의미 및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의 해석은 앞서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함

〈 유한회사의 사례별 외감여부 판단 〉

사례	외감기준 이상인 항목의 개수	시행령 적용결과	외감여부
자산 120억, 부채 70억, 매출액 100억, 종업원 100명, 사원 50명	5개	자산 120억, 부채 70억, 매출액 100억원, 종업원 100명, 사원수 50인 미만 중 0개에 해당	외감대상
자산 119억, 부채 70억, 매출액 100억, 종업원 100명, 사원 50인	4개	자산 120억, 부채 70억, 매출액 100억원, 종업원 100명, 사원수 50인 미만 중 1개(자산)에 해당	외감대상
자산 119억, 부채 69억, 매출액 100억, 종업원 100명, 사원 50인	3개	자산 120억, 부채 70억, 매출액 100억원, 종업원 100명, 사원수 50인 미만 중 2개(자산, 부채)에 해당	외감대상

사례	외감기준 이상인 항목의 개수	시행령 적용결과	외감여부
자산 119억, 부채 69억, 매출액 99억, 종업원 100명 사원 50인	2개	자산 120억, 부채 70억, 매출액 100억원, 종업원 100명, 사원수 50인 미만 중 3개(자산, 부채, 매출액)에 해당	비외감대상 (소규모회사)
자산 119억, 부채 69억, 매출액 99억, 종업원 99명 사원 50인	1개	자산 120억, 부채 70억, 매출액 100억원, 종업원 100명, 사원수 50인 미만 중 4개(자산, 부채, 매출액, 종업원에 해당	비외감대상 (소규모회사)
자산 119억, 부채 69억, 매출액 99억, 종업원 99명 사원 49인	0개	자산 120억, 부채 70억, 매출액 100억원, 종업원 100명, 사원수 50인 미만 중 5개(자산, 부채, 매출액, 종업원, 사원)에 해당	비외감대상 (소규모회사)

2) 2019년 11월 1일 이후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한 회사

- 주식회사가 2019년 11월 1일 이후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는 조직변경의 등기일로부터 5년간은 주식회사의 기준을 적용하여 외부감사 대상여부가 판단됨(영 제5조 제2항 후문)
 - 주식회사에서 조직 변경을 한 유한회사는 소규모회사 판단시 사원수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의 소규모회사 기준 4가지 항목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외부감사 대상이 됨
 - 이는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여 완화된 외부감사 기준을 적용받아 외부감사를 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주식회사 기준을 적용한 것임
 - ※ 주식회사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유한회사로 할 수 있음(상법 제604조 제1항)

II 외부감사 면제 회사

Key Point

☑ 회사는 외부감사법상 면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신청을 통하여 외부감사를 면제 받을 수 있다.

- 개정 외부감사법은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하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특정한 사유가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사유를 열거하고 있음(법 제4조 제2항)

※ 개정 전 외부감사법의 내용

- 개정 전 외부감사법 제2조는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회사를 본문에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특정한 사유가 있는 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특정한 사유가 있는 회사는 제외하고 있었음
 - 이에 따라 외부감사 제외사유가 있는 회사는 당연히 외부감사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었음
- 이와 달리 개정 외부감사법 제2조는 특정한 사유가 있는 외부감사 대상회사는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회사에게 적극적 면제신청을 요구하고 있음

- 개정 외부감사법의 해석상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회사라도 회사의 선택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으며,
 - 회사의 선택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경우라도 외부감사는 완전·유효하고 회사는 이에 따르는 권리·의무를 부담하게 됨
- 따라서 외부감사 면제사유가 있는 회사라도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하기 위하여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야 함

-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부터 2주 이내(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이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에 신고하여야 함 (시행세칙 제18조)⁶⁾

참고사항

- 종전 규정상 외부감사 적용제외사유이었던 "법원에 의해 주요자산에 대한 경매 또는 압류가 진행중인 회사"(개정 전 외감규정 제7조 제2항 제4호)는 삭제되었음

1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 비상장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됨
 - 외부감사법은 공공기관 중 기타 공공기관에 비하여 법률상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를 받게 되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중에서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외부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은 회사(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을 전제로 하므로,
 - 비상장 공기업·준정부기관이나 기타 공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아닌 특수법인인 경우에는 외부감사 대상이 아님

2 단순 신설법인

- 개정 외부감사법은 감사대상 사업연도에 최초로 법인설립등기를 한 회사를 외부감사 면제 대상 회사로 정하고 있음

6) 금융감독원 회계포털(<http://acct.fss.or.kr>) 사이트의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시스템"을 통하여 전산 신고가 가능하다.



※ 개정 전 외부감사법의 내용

- 개정 전 외부감사법은 비상장회사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자산총액, 부채총액, 종업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 적극적으로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정하고 있었으므로,
 - 직전 사업연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해석상 외부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음
- 반면 개정 외부감사법은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종업원수가 일정 수준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를 소극적으로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 위 규정만으로는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될 근거가 없는 것처럼 오해될 여지가 있음
 - 개정 외부감사법은 개정 전 외부감사법에서 외부감사를 제외하던 취지에 맞추어 신설 등기된 법인을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음

3 합병·분할 신설법인



Key Point

☑ 합병·분할로 신설되는 회사는 신설시점을 기준으로 외감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 합병·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는 합병·분할 전 회사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나 형식적으로 신설법인이므로 해당회사의 설립 이전인 직전 사업연도는 존재하지 않음
 - 개정 외부감사법에서는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합병·분할 신설법인도 신설시 외감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감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개정 전 외부감사법의 내용

- 개정 전 외부감사법에서는 회사가 분할하거나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대신에 회사 설립시를 기준으로 외부감사 대상여부를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음
 - 개정 외부감사법에서는 회사가 분할하거나 합병하여 회사를 설립한 경우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이면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신설법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구 외부감사법의 취지와 같이 합병·분할로 인한 신설법인을 외부감사 대상으로 규정하였음

- 합병·분할 법인이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경우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설립등기시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나. 설립등기시 자산총액, 부채총액, 종업원이 소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

1) 합병·분할 신설 주식회사

-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합병·분할 신설 주식회사는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자산총액 120억원 미만, 부채총액 70억원 미만, 종업원 100명 미만 등 3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회사를 의미함(규정 제2조 제2항 제2호 본문)

- 결국 합병·분할 신설 주식회사의 경우는 설립등기시를 기준으로 자산총액 120억원 미만, 부채총액 70억원 미만, 종업원 100명 미만, 3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외부감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합병·분할 신설 주식회사의 의미

- 외감규정 제2조 제2항 제2호는 외부감사에서 제외될 수 있는 회사로 보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영 제5조 제1항 제3호 중 다목을 제외한 각 목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의 취지는 합병·분할로 인한 신설법인의 경우에도 외부감사 대상기업의 외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외부감사의무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있음
 - 따라서 각 목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외부감사의 대상으로 본다는 의미는, 한 가지 항목이라도 해당하면 외부감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 분할 신설시를 기준으로 매출액을 제외한 소규모회사 기준자산총액 120억원 미만, 부채총액 70억원 미만, 종업원 100명 미만에 모두 해당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합병·분할 신설법인이 외부감사의 대상이라는 의미임
 - 결국 외부감사규정 제2조 제2항 제2호 본문의 의미는 설립등기시를 기준으로 영 제5조 제1항 제3호의 가, 나, 라목에 모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이 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적절
- ※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외감규정 제2조 제2항 제2호 조문의 내용은 “영 제5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사항(다목은 제외한다)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를 의미함

참고사항

- 합병·분할로 인하여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이 존재하지 않는 법인은 설립시의 자산이 1천억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대흥비상장주식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2) 합병·분할 신설 유한회사

- 합병·분할로 인하여 신설된 유한회사도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외부감사의 대상이 됨
 - 합병·분할 신설 유한회사의 경우는 합병·분할 신설 주식회사의 기준이 되는 3가지 항목(자산총액 120억원 미만, 부채총액 70억원 미만, 종업원 100명 미만)에서,

- 사원 수 50명 미만 기준을 추가하여 4가지 항목 중 3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회사를 외부감사의 대상으로 보고 있음(규정 제2조 제2항 제2호 단서)
- 결국 합병·분할 신설 유한회사의 경우는 설립등기시를 기준으로 120억원 미만, 부채총액 70억원 미만, 종업원 100명 미만, 사원 수 50명 미만 중 3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외부감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4 특수한 형태의 회사 등

가.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은 회사의 규모 등이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기업으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규정하고 있음

나. 투자회사 등

Key Point

- ☑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1) 개요

- 개정 외부감사법은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투자회사 및 투자유한회사, 투자목적회사의 경우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개정 전 외부감사법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를 외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음(구 외부감사법 제2조 제2호, 영 제2조 제2항 제2호)



2) 투자회사 등의 범위

-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투자회사란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위원회에 등록(자본시장법 제182조 제1항)되는 투자회사만을 의미하므로,
 - 특별법에 따라 설립, 등록되는 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등은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투자회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 통상 투자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회사 이외에도 특별법(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등)에 따라 설립되는 투자회사도 존재함

※ 개정 전 외부감사법의 내용

- 개정 전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란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는 투자회사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으므로,
 - 종래 특별법상의 투자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등록되는 투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였음
 - 개정법은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의 정의규정을 인용하여 외감제외대상을 기술하고 있으므로, 조문 해석상 공모 형태*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경우 투자회사로서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가 의문이 있을 수 있음
 - * 사모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으로서 투자자 총수가 49인 이하인 경우에는 집합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가 투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분명함
 - 개정 외부감사법의 투자회사 조항은 구법 조항과 비교하여 법문언이 다소 변경된 점은 있으나,
 - 이는 법조문의 기술방식의 변경에 불과하고 외부감사에서 제외되는 투자회사의 범위를 변경하고자 개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음
 - 결국 개정법상으로도 특별법상의 투자회사는 외부감사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외부감사 제외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란 약정체결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 약정체결기업에 투자하거나 약정체결자산을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운영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의미함(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 제3호)

라. 자산유동화법상의 유동화전문회사

- 외부감사 제외대상이 될 수 있는 유동화전문회사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설립되어 자산유동화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의미함(자산유동화법 제2조 제5호)
 - 외부감사 제외대상이 되는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를 의미하므로,
 - 자산유동화법의 요건에 맞지 않는 회사는 유동화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상법상의 회사에 불과하므로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동화전문회사에 해당하지 않음
 - ※ 다만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다음의 아.의 3)항에서 후술함

마. 거래정지처분정지회사

-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효력이 지속되고 있는 회사를 의미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회사인 경우에는 외부감사가 면제될 수 있는 거래정지처분정지회사에서 제외됨

바. 해산·청산 또는 파산 사실이登記되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회사

사. 합병으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회사

- 합병으로 인한 소멸이 해당 사업연도 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합병등기가 해당 사업연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동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외부감사 대상이 될 수 있음

아. 기타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회사

1) 금융위원회가 상호저축은행의 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2) 국세청에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한 경우

3) 기타 유동화전문회사

-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유동화전문회사인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유동화전문회사 인정 기준

- ① 채권, 부동산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을 기초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을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 ②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
- ③ 한시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근하는 임원 또는 직원을 두지 아니할 것
- ④ 정관 등에서 법인의 업무를 유동화거래에 필요한 업무로 한정하고 유동화거래에서 예정하지 아니한 합병, 청산 또는 해산이 금지될 것
- ⑤ 유동화거래를 위한 회사의 자산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입무위탁계약 및 자산관리 위탁계약이 체결될 것

4) 사실상 폐업회사

- 연락 두절 등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폐업한 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다만, 이를 위하여는 실무상 금융감독원의 조사 및 확인을 거치게 됨

〈 외부감사 면제대상 회사가 제출하는 소명자료(예) 〉

외부감사 면제사유	제출할 소명자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해당회사 목록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투자회사 등록 또는 인·허가 관련 제출(또는 공시) 문서 등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투자회사 등록 또는 인·허가 관련 제출(또는 공시) 문서 등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정관, 사업등록증 등 회사 설립의 근거법령이 확인되는 서류
「민법」에 따라 금융결재원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 중에 있는 주식회사 (단,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된 회사는 외부감사 대상)	당좌거래정지처분 통보서류 등 (금융결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청산 중인 주식회사 (해산, 파산, 청산 등)	법인등기부등본상 확인 가능시
1년 이상 휴업 중인 주식회사	최근 1년의 부가세신고서·매입처벌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출·매입 내역 없음 확인 필요
합병 으로 소멸한 주식회사	등기부등본(합병등기 후)
금융위가 관리인을 선임한 상호저축은행	관련 금융위원회 공문 등
국세청에 휴·폐업 으로 신고된 회사	국세청 휴·폐업 사실 증명원
채권, 부동산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을 기초로 증권을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41항제4호 각 목의 요건(마목 제외)을 모두 갖춘 회사	정관, 등기부등본, 업무위탁계약서 또는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자산 등 기준에 미달하는 회사	직전사업연도말 감사보고서 또는 국세청 표준 재무제표 증명원 종업원 인원 확인서류는 국세청 신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결산월 귀속분)



제 3 장

감사인의 선임

—
읽기 쉬운
「해외무감사법 가이드북」

- I. 감사인의 자격
- II. 감사인 선임기한
- III. 감사인 선임대상 사업연도
- IV. 감사인의 선정
- V. 감사인의 선임절차
- VI. 감사인의 선임보고
- VII. 사후확인

제 3장 감사인의 선임

I 감사인의 자격

1 개요

- 외부감사법상 감사인은 공인회계사법상의 회계법인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으로 나눌 수 있음
 -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이 감사인이 되는 것이므로 해당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개인은 감사인이 아님
 - 개정 전 외부감사법은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이하 "상장법인 등")의 감사인의 자격제한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개정 외부감사법은 상장법인 등의 감사인 자격을 회계법인으로 한정하였음

2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에 대한 감사제한

Key Point

- ☑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의 외부감사인은 회계법인만이 가능하며, 감사반은 될 수 없다.
 - * 또한 주권상장법인은 회계법인 중 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만 외부감사인이 될 수 있음

-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에 대한 감사인은 회계법인만이 될 수 있음

* 주식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

※ 상장법인 등의 감사제한 예외규정

- 주권상장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은 감사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나(법 제9조 제1항 제1호),
 - 현재까지 감사제한의 예외가 되는 주권상장법인을 규정한 시행령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예외사항은 존재하지 않음

※ 외부감사법 시행규칙에 의한 회계감사 제한규정

- 법 제9조 제2항은 금융위원회는 감사인의 형태와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 등을 고려하여 감사인이 회계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과거 외부감사법 시행규칙은 이에 따라 감사인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2006년 개정이후 해당 내용이 삭제되어 현재까지 관련 내용을 두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감사인은 현재 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자격제한을 받지 않음

3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감사제한(감사인 등록제)

- 법 제9조의2에 따른 감사인등록 제도의 시행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의 경우 회계법인 중에서도 금융위원회에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을 한 회계법인만이 감사인이 될 수 있음

○ 관련 내용은 제9장 감사인 등록제도에서 후술함

II 감사인 선임기한

1 개요

< 감사인 선임기한의 개요 >

→ 현행 사업연도 개시일부 4개월 이내로 일률적이었던 감사인 선임기한이 회사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간으로 단축*

* 감사보고서 제출시기 이전에 감사인을 선임토록 함으로써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목적

구 분	감사인 선임기한	기한 예시*		
		10월 결산	11월 결산	12월 결산
① 상법 및 금융사지배구조법상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2019.12.31
② 외부감사대상 첫해인 회사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	2020.2.29	2020.3.31	2020.4.30
③ 이외 회사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	2019.12.15	2020.1.14	2020.2.14

* 10월, 11월 및 12월 결산법인의 2020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선임기한

** 감사위원회를 자율설치한 회사의 감사인 선임기한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임

- 개정 외부감사법은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보고서 제출 시기 이전에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감사인 선임기한을 단축하였음
 - 개정 전 외부감사법은 회사의 규모 및 특성과 관계없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 개정 외부감사법은 일반적인 회사의 감사인 선임기한을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5일 이내로 규정하고,
 -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전, 외부감사 대상 첫 해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였음
- 감사인의 선임은 통상 감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루어지므로, 감사인의 선임기한이란 감사계약의 체결기한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따라서 계약의 체결 이전 단계인 감사인의 선정만으로는 기한 내에 감사인의 선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2 통상의 회사

-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함

3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

-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전(12월 결산법인의 경우 해당 회사의 감사인 선임기한은 매년 12월 31일)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함
 -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란 상법 제542조의11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16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를 의미하며,
 - 감사위원회 설치의무 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매 사업연도 개시일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음
- 상법상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의미함

※ “최근 사업연도 말”의 의미

-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의 판단기준이 되는 “최근 사업연도 말”의 의미는 감사대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이 아니라, 감사대상 사업연도 개시 전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을 의미함
 -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의 감사인 선임의무는 감사대상 사업연도 개시 전(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하므로,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회사인지 여부는 감사대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결정됨



- 따라서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인지 여부의 판단시점(감사대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서의 “최근 사업연도 말”이란 감사대상 사업연도 전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을 의미
- 예를 들어 2020 사업연도에 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회사에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2019 사업연도에 감사위원회 설치의무가 있어야 하고,
- 2019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최근 사업연도 말”이란 2018 사업연도 말이므로, 감사위원회 설치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2018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기준이 됨

■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는 금융회사 중에서 다음의 회사를 제외한 회사를 의미함

금융회사 중 감사위원회 설치의무 제외회사

- ①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 5조원 미만 보험회사·여신전문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금융투자업자(집합투자자산,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의 합계액이 20조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 ② 자산 7천억원 미만 상호저축은행

4 직전 사업연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한 회사

- 직전 사업연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한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함
 - 동 조항의 취지는 외부감사를 받는 첫해에는 준비기간을 더 부여하고자 하는 데에 있음
 - 동 선임기한은 회사 설립이후 최초로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외부감사를 받았던 회사라도 직전 사업연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적용됨

III 감사인 선임대상 사업연도

1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

Key Point

☑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는 3개 사업연도 연속으로 동일한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이하 "상장법인 등")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함
 - 개정 전 외부감사법은 3개 사업연도 연속 감사인 선임의무를 상장법인에게만 부여하고 있었으나,
 - 개정 외부감사법은 상장법인 뿐만 아니라, 대형비상장주식회사와 금융회사도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하였음

※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 선임의 의미

- 법률문언상 3개 사업연도를 동일하게 선임하여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어, 회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이 동일하게 되도록 감사계약을 체결하기만 하면 되는 의미로 오해될 여지가 있음
 -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 회사가 일단 3개 사업연도를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감사인을 1~2개 사업연도 단위로 자유롭게 선임하여도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 선임으로 볼 수 있게 됨
 - 하지만 동 조항의 취지는 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의 독립성을 특히 더 보장하기 위하여 최소한 3개 사업연도 동안의 감사인 임기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 따라서 3개 사업연도 연속 감사인 선임의무란, 동일 감사인에 대한 감사계약이 3개 사업연도씩 체결되어야 한다는 의미이지, 3개 사업연도 이상 같은 감사인을 선임하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는 아님

2 그 밖에 비상장회사 등

Key Point

☑ 중소형 규모의 비상장회사는 일반적으로 1개 사업연도마다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상장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비금융 비상장회사는 1개 사업연도마다 감사계약을 체결하게 됨
 - 3개 사업연도 연속 감사인 선임의무가 없는 비상장회사에 해당함에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복수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연속감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고, 외부감사법상 이러한 계약이 불허되는 것은 아님
 - 외부감사법상의 의무없이 3개 사업연도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유효하지만, 외부감사법에서 강제하는 3개 사업연도의 연속 감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음
 - 따라서 3개 사업연도 기간동안 연속계약을 유지할 의무가 외부감사법 상으로는 강제되지 않으므로,
 - 1개 사업연도 계약이 가능한 회사가 임의로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2년차, 3년차 계약시 다른 감사인과 계약체결이 가능하고, 동일 감사인 선임관련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⁷⁾

참고사항

- 개정 전 외부감사법 시행 당시 체결한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비상장 금융회사의 3년 감사계약은 외부감사법에서 규정하는 3년 연속 계약이 아니므로, 개정 외부감사법이 적용되는 2019 사업연도부터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비상장 금융회사는 과거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7) 다만 계약파기로 인하여 감사인과의 관계에서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임

IV 감사인의 선정

1 개요

Key Point

☑ 회사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감사인 후보와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감사인의 선임과정에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함
 - 감사계약은 회사가 체결하는 것이고 회사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경영진(대표이사)에게 결정권한이 있으나,
 - 개정 외부감사법은 감사인 선임절차에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였음
 - 특히 감사가 선정하는 경우에는 회사 외부의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였음

2 감사인의 선정

- 감사인의 “선정”이란 감사계약을 체결할 회계법인(감사반)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함
 - 감사인의 “선정”은 감사계약의 체결이 아니라 감사계약을 체결할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이므로, 감사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회계법인(감사반)에 감사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감사인의 “선임”과는 구별됨



※ 개정 전 외부감사법의 내용

- 종전의 외부감사법은 감사·감사위원회·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 개정 외부감사법은 감사·감사위원회가 “선정”한다고 규정하여 감사·감사위원회의 역할을 보다 능동적으로 강화하였음

3 감사인의 선정절차

가.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



Key Point

- ☑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 설치회사) 감사위원회가 선정
 - (감사위원회 미설치회사)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
 - (감사를 두지 아니하는 회사)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받아 회사가 선정

1)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정함
 -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정하는 회사는 감사위원회 설치할 의무가 있는 회사 뿐만 아니라,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가 아니더라도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까지 포함됨
 - 감사위원회란 상법 등 개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감사위원회를 의미하므로 감사인 선정을 위한 감사위원회의 일반적인 운영 및 결의방식은 상법 등 감사위원회의 설치근거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름

2)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 감사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선정함
 -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구성된 조직으로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은 별도의 항에서 후술함

3)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회사

Key Point

- ☑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회사는 감사 없이 회사가 감사인을 선정할 수 있으나,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는 생략할 수 없다.

-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회사(상법: 자본금 10억 미만의 경우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법 제37조),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회사가 감사인을 선정할 수 있음

-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법령상 근거 없이 단순히 감사를 미선임하고 있는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여 감사인 선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동 규정은 상법 등에서 이해관계자가 적은 회사에 대하여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를 존중하여 감사인 선임과정 등에서도 감사에 관한 절차를 배제한 것임

※ 적용배제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의 의미

- 법 문언상으로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적용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감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적용되는 것인지가 의문이 있을 수 있음
- 동 규정의 취지 및 상법상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강제하는 취지가 아님을 고려하면,
 -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에 관한 사항도 적용배제



된다는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이 경우에도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 규정까지 적용배제 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회사라도, 감사인 선정에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회사(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함

나. 그 이외의 회사



Key Point

- ☑ 중소형 규모의 비상장회사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감사인을 선정하되, 전기감사인을 다시 선임하는 경우 감사인 선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 설치회사) 감사위원회가 선정
 - (감사위원회 미설치회사) 감사가 선정
 - (감사를 두지 아니하는 회사) 회사가 선정*
- *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유한회사는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대형비상장주식회사나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상장회사, 유한회사 등을 중소형 규모의 비상장회사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 회사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정함
 -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회사의 경우에 회사가 감사인을 선정할 수 있는 점은 위 가의 3)항과 같음
 - 유한회사의 경우 감사가 없는 유한회사는 회사가 감사인을 선정함
 - 다만 자본금 10억 이상 유한회사는 회사가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을 선정함(법 제10조 제4항 제2호 나, 다목)
- 전기감사인 선임 이후 당기 감사인을 교체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감사인을 그대로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고, 별도의 감사인 선정절차는 거치지 아니할 수 있음(법 제10조 제4항 제2호 가목)

4 감사인선임위원회

가. 개요

- 감사인선임위원회란 감사위원회가 없는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가 감사인선임과 관련한 업무를 승인받기 위하여 외부감사법 제10조 제4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구성된 조직을 의미함

나. 감사인선임위원의 자격

Key Point

- ☑ 감사인선임위원회는 법령상 요구사항에 따라 감사, 사외이사, 주주, 채권자, 기관투자자 등 총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사외이사)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를 의미하며,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 (기관투자자·주주·채권자) 주식, 채권의 소유여부는 형식적 명의로 파악하나, 실질적인 권리자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함
 - 감사인선임위원은 회사의 소속직원은 아니나,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법 제40조 제1항)
-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 및 정원은 다음과 같음

1) 감사 1명

- 당해 회사의 감사를 의미하고(영 제12조 제2항 제1호), 반드시 상근감사일 것을 요구하지는 않음



- 한편 상법 등에서 감사를 두지 아니하는 회사의 경우 감사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음
 - 이 경우에는 위원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어 해당 위원을 외부의 독립성 있는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음

2) 사외이사 중 2명

- 사외이사(상법 제382조 제3항)란 그 회사의 상사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써 법령에 따라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를 의미함(영 제12조 제2항 제2호)
 - 법령에 따라 사외이사로 선임되어야 하므로, 법령에 따른 사외이사가 아닌,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이를 사외이사로 볼 수 없음

3) 기관투자자의 임직원 1명

- 기관투자자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관투자자를 의미함(영 제12조 제2항 제3호).
 - 구체적인 범위는 해당 시행령 조항의 위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에서 규정되어 있음
 -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기관투자자는 제외되는데,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름
-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관투자자가 이에 해당됨
 - 증권금융회사가 거래소시장에서 자본시장법 제326조 제1항 제2호의 대여업무 수행(증권유통금융)을 위하여 담보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은 제외되며,
 - 사업연도 개시후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통보일 전날까지 소유한 의결권 있는 주식수가 현저하게 감소한 기관투자자는 제외됨

- 위와 같이 주식수가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에는 기존 기관투자자보다
주식수가 많게 된 차순위였던 기관투자자가 위원에 해당됨
- 주식의 소유여부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되나,
회사가 실질적인 권리행사자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음
 - 예를 들어 투자회사(펀드, 집합투자기구) 등이 주주인 경우 주식의 소유
명의자인 투자회사 자체는 기관투자자가 아니나, 실질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운용사는 기관투자자일 수 있음
 - 이 경우 회사가 투자회사(펀드, 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는 주식의 권리
자를 기관투자자로 파악하여 기관투자자의 소유주식으로 산정하는
것도 가능함
- 위원 자격을 가지는 자는 기관투자자의 임직원이나, 위원 자격은 기관투자
자의 지위에서 유래되는 것이므로, 소속 임직원이라는 사실 이외에 기관
투자자 본인의 권한 위임이 필요함

4) 주주 2명

-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해당 회사의 임원인 주주, 위원
으로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인 주주를 제외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주주 2명이 이에 해당함(영 제12조 제2항 제4호).
 - 여기서 제외되는 기관투자자란 위 3)항에서 선임위원 참여 자격을 가지는
기관투자자를 의미하므로,
 - 차순위 주식소유로 감사인선임위원회 기관투자자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한 기관투자자도 최다 주주 2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위원
자격으로서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음
 - 주주란 자연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인 주주도 해당 될 수 있음

- 법인 주주의 경우 법인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음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의 의미, 증권금융회사의 주식 및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통보일 전날까지 주식수가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가 제외되는 것은 위 3)항 기관투자자 항목에서 설명한 바와 같음

5) 채권액이 가장 많은 금융회사 임원 2명

-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한 채권자 중 채권액이 가장 많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이에 해당함(영 제12조 제2항 제5호)
 - 채권자 중 금융회사만이 이에 해당할 수 있음
 - 금융회사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농협은행, 수협은행을 의미(법 제9조 제1항 제3호)하며,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을 포함함
 - 채권액은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통보일의 전날에 보유한 채권액이 기준이 됨
 - 채권액의 산정은 채권의 형식적인 명의를 기준이 될 것이나, 실질적인 채권자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도 있음
 - “임원”이란 이사, 감사(감사위원회 위원 포함), 상법상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 지시자를 의미함(법 제2조 제6호)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의 의미는 기관투자자 항목에서 설명한 바와 같음

다.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1)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정원

- 감사인 선임자격요건을 갖춘 자의 정원 수를 모두 합하면 8명이 되므로, 감사인 선임위원회는 최소 7명, 최대 8명까지 구성할 수 있음

2) 위원 자격이 중복되는 경우

- 기관투자자·주주·채권금융기관의 자격은 중복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주주와 채권금융기관 자격도 가지는 경우 기관투자자로, 주주가 채권금융기관 자격도 가지는 경우 주주로 간주하여 선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음(규정 제9조 제1항)
 - 이에 따라 배제되는 주주 또는 채권금융기관의 자격은 차순위 주식·채권 소유자에게 돌아가게 됨

3) 위원 자격자가 복수인 경우

- 감사인 선임위원의 자격을 갖춘 외부위원이 복수인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회사의 주주, 금융회사, 기관투자자들 각자가 동일한 수량의 주식이나 채권액을 보유하고 경우에는 법령상의 선임 요건에 해당하는 외부위원이 법령상의 정원을 초과할 수 있음
 - 외감규정은 외부위원의 자격을 갖춘 자가 법령에서 정한 자보다 많은 경우에는,
 - 감사가 주식의 보유규모·보유기간 및 채권의 잔존만기 등을 고려하여 내규 또는 정관에 따라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구성원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규정 제9조 제2항)
 - 주식 보유규모·보유기간 및 채권의 잔존만기를 어떠한 방식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 감사인 선임절차에 이해관계가 높은 자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하는 법 취지를 고려하면 주식보유규모가 클수록, 보유기간 및 채권의 잔존만기가 길수록, 참여를 더욱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만약 정원을 초과하는 외부위원 자격을 갖춘 자가 주식의 보유규모·보유기간 및 채권의 잔존만기까지 동일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가 문제가 될 수 있음



- 이에 대하여 법령상의 규정은 없으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정하여 외부위원을 선정하는 한 법령상의 감사인 선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4) 위원 자격자가 7인에 미달하는 경우



Key Point

- ☑ 회사는 부득이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 외부전문가는 회사로부터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 회사에 따라서 감사인선임위원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외부전문가를 감사인선임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음
 - 외부전문가란 감사인을 선임하는 회사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심의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경영·회계·법률 또는 외부감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하 '외부전문가 위원')을 의미함
 - 다만 이 경우 감사는 외부전문가로 위원을 구성한 사유를 문서로 작성·관리하여야 함(규정 제9조 제3항 제1호)
- 외부전문가 위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감사인선임위원 자격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선임될 수 있음
 - '부득이한 경우'란, 법령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가진 위원이 없거나,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연락 두절, 출석(대리출석 포함) 거부 및 그 밖에 그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선임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함
 - 이 경우 회사는 위원이 참석하지 못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이 요구될 수 있음
 - 외부전문가의 자격이 되는 "전문성"이란 반드시 변호사·회계사 등의 전문 자격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나, 회사는 위원의 전문성이 인정 되는 객관적 근거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여야 함

- “독립성”에 대하여 법규상 정의는 없으므로, 독립성의 유무는 법규의 취지(회사의 대표자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외부감사인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될 문제임
- 회사와의 계약 또는 거래관계 등으로 회사에 종속되거나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통상 독립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임

5) 수개 회사의 감사인 선임절차

Key Point

☑ 지배·종속관계가 있는 회사가 동일한 감사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회사별로 각각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지배·종속의 관계의 회사 간에 동일한 감사인을 선정하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감사인의 선임절차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따라서 다른 회사의 감사인 선임절차로 당해 회사의 감사인 선임절차를 대체할 수는 없음
- 각 회사의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자격을 갖춘자가 동일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감사인선임위원은 법상 자격이 인정되는 한 다른 회사의 감사인선임위원과 중복되는 경우도 가능함
 - 결국 회사 간에 감사인선임위원회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개최되는 것은 가능하나, 감사인선임위원들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에도 감사인 선임절차는 각각 이루어져야 함

라.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

-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호선하되,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를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함

- 호선이란 위원들 개인들의 투표를 의미하는데,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의결과는 구분되므로, 호선만을 위하여 감사인선임위원회가 개최될 것이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음

2) 정족수

-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3) 의결권의 대리행사

Key Point

- ☑ 기관투자자, 주주, 채권금융기관 위원은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외부전문가는 의결권 대리행사가 불가능하다.

- 기관투자자·주주·채권금융기관 위원(이하 "외부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이 경우 그 대리인은 위원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유 및 그 위원의 대리인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대리인의 자격은 법령상 제한은 없으나, 감사대상 회사의 임직원이 외부위원의 대리인이 되는 것은 감사인선정과정에 외부위원을 참여시키도록 한 외부감사법령의 취지에 반하므로,
 - 감사대상 회사의 임직원은 외부위원의 대리인이 될 수 없음
 - 또한 법령상 의결권의 대리행사가 가능한 위원은 기관투자자, 주주, 채권금융회사 위원에 한정되므로, 해당위원을 대체하는 외부전문가 위원은 의결권의 대리행사가 허용되지 않음

마.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

Key Point

☑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된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의 전원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고, 전원 출석하고 전원찬성으로 의결한다.

- 감사인선임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 감사, 사외이사 (또는 기관투자자·주주·채권금융기관) 위원 3인의 출석으로 감사인선임위원회 (이하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고, 출석위원의 전원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음
 -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는 감사인선임위원의 전원 동의가 필요하므로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이를 동의할 7인 이상의 감사인선임위원이 선임될 것이 요구됨
 - 다만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동의는 선임위원 개개인별로 이루어질 수 있고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의결로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개최 동의만을 위하여 감사인선임위원회가 개최·의결될 것이 요구되지는 않음
- 감사는 약식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위원들의 명단 및 서명을 문서로 작성·관리하여야 함(규정 제9조 제3항 제2호)
- 약식 감사인선임위원의 자격이 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음
 - 다만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기관투자자·주주·채권금융기관위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 사외이사를 대체할 수 있음
 - 감사인선임위원 중 외부의 독립된 전문가는 위원장인 경우에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참여가 가능하나,
 - 정식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경우와 달리 외부의 독립된 전문가가 주주·기관투자자·채권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약식 감사인선임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함



바. 문서화 의무

- 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의 인적사항 및 감사인선임위원회 회의의 주요발언 내용 등을 문서로 작성·관리하여야 함(영 제12조 제7항)

V 감사인의 선임절차

< 감사인 선임기한 및 선임절차의 개요 >

구 분	종전규정	현행규정	
① 감사인 선임단계	선임기한	2019.4.30.(4개월)	2019.2.14.(45일) (다만,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 : 2018.12.31.까지)
	선임권자	회사 <* 감사(위원회) 승인 필요>	감사(위원회) 선정
	감사역할	<신설>	- 감사인 후보평가기준 및 준수사항 문서화(감사시간·보수·인력·감사계획의 적정성·독립성 등) - 감사인 후보 대면평가(감사위원회, 감사인선임위원회, 사원총회 限)
	주총보고	주총 보고 또는 홈페이지 공고 등	<좌동>
② 감사인 선임보고	선임보고	감사계약체결일부터 2주 이내 (금감원)	<좌동>
③ 사후 평가절차	평가시점 평가대상	<신설>	- 감사보고서 제출후 감사인 선임시 합의한 감사시간·보수·인력·감사 계획 등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평가
	문서화 사항	<신설>	- 감사인 충실성 평가결과 - 감사인이 회계기준해석 등에 대한 자문요구시 협의내용 등 - 감사와 감사인간 대면회의 내용 등

1 감사인 선정기준 및 절차 마련

Key Point

- ☑ 감사인을 선정하기 이전에 회사는 감사인 선정기준 및 절차를 미리 마련하여야 하며,
 - 기준 및 절차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나, 법령에서 정한 항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감사인을 선정(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선정기준이 필요하므로, 외부감사법에서는 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사전에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음(영 제13조 제3항 전문).

가. 기준 등의 마련 의무자

- 기준 및 절차 마련의 의무가 있는 자는 감사인을 선정하는 자이므로 회사에 따라 감사·감사위원회·회사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될 수 있음
 - 다만 감사인 선임에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도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이 요구됨
- 감사가 없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기준 및 절차 마련에 사원총회의 승인이 요구됨(영 제13조 제3항 후문)

나. 마련시기

- 감사인 선정기준 등은 감사인을 선정하기 전에 “미리” 마련하여야 하므로, 기준의 마련일자가 감사인 선정일보다 이후가 된다면, 선정기준 등을 적법하게 “미리” 마련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기준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감사인 선정기준 등의 내용에 대하여 법규상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므로, 각 회사의 사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가능함
 - 다만 법규상 다음과 같은 사항은 선정기준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

- 감사인 후보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회사에 적합한 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 및 감사계획 등을 의미함(영 제13조 제4항 제1호)
 - 평가에 활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라는 취지이므로 시간, 인력, 보수 등이 반드시 확일적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 충실한 외부감사를 위하여 최소 요구되는 감사시간·인력·보수 등을 보장하려는 취지임을 고려할 때 감사시간·보수 등의 상한을 정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정할 것이 요구되지는 않음
- 감사인 선정을 위하여 마련하여야 하는 감사시간 기준과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표준감사시간제도는 법규의 취지가 다르고 표준감사시간은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가지므로,
 - 감사인 선정을 위한 감사시간 기준을 표준감사시간에 맞추어야 하는 것은 아님

2) 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 감사인의 독립성이란 감사 의견에 편견을 발생시키는 등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를 회피하는 것을 의미함(영 제13조 제4항 제2호)
 - 감사인의 전문성이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훈련 및 경험, 감사대상 회사의 업무 등에 대한 전문지식 등을 충분히 갖춘 것을 의미함

3) 전기감사인에 관한 사항

①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영 제13조 제4항 제3호)

- 회사는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를 한 감사인(이하 "전기감사인") 외 다른 감사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전기감사인을 해임하려면 해당 전기감사인에게 감사·감사위원회·감사인선임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법 제14조 제1항)
 - 전기감사인이 진술한 의견이 있는 경우, 감사인 선정기준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고, 이는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이 차기 감사인 후보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요구됨
 - 전기감사인의 의견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전기감사인의 의견을 선정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므로, 전기감사인이 관련 의견을 진술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정기준에 포함시킬 수 없을 것임

② 전기감사인에 대한 평가결과(영 제13조 제4항 제3호 가목)

- 전기감사인이 감사인 선임 시 합의한 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감사계획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결과를 의미함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감사보수·감사시간·감사인력에 관하여 미리 문서로 정한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법 제10조 제6항), 동 확인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③ 감사업무와 관련한 협의내용 등(영 제13조 제4항 제3호 나목)

- 전기감사인이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에 회계처리기준 해석, 자산 가치 평가 등에 대한 자문을 외부기관에 할 것을 요구한 경우,
 - 요구 내용에 대한 감사·감사위원회와 전기감사인 간의 협의 내용, 자문 결과 및 그 활용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④ 감사·감사위원회와의 대면회의(영 제13조 제4항 제3호 다목)

-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감사위원회와 전기감사인 간의 대면 회의 개최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 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함

⑤ 기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영 제13조 제4항 제3호 라목)

- 시행령은 그 밖에 감사인 선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도록 규정(영 제13조 제4항 제3호 라목)하고 있으나, 현재 관련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

라. 문서화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감사인의 감사보수·감사시간·감사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함(법 제10조 제5항)
 - 감사인 선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법상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회사의 경우(법 제10조 제4항 제2호 각목의 경우)에는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에게 문서화 의무가 있음
 - 문서화란 성문의 형태로 존재하여야 함을 의미하며 법규상 정형화된 형식을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반드시 회사 내규의 형태를 가질 것이 요구되지는 않음
 - 이와 더불어 감사인 선정기준과 절차가 객관적 증빙으로 보존될 필요가 있으므로, 감사보수·감사시간·감사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인 선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문서로 정하여 준수하여야 함

2 감사인의 선정

Key Point

- ☑ 감사인 후보평가는 복수후보 뿐만 아니라, 단일후보에 대한 평가도 가능하며
 - 감사인 후보평가를 위해 대면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 충실한 회의진행에 문제가 없는 화상회의는 대면회의에 포함되나, 영상이 송수신되지 않는 음성회의는 포함되지 않음

가. 감사인 후보평가

- 감사인 선정을 위하여는 감사인 선정기준에 따른 감사인 후보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감사인 후보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복수의 후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 요구되지는 않으며, 단일후보에 대한 평가도 가능함
- 별도의 승인절차가 필요없는 경우(감사위원회, 감사 단독으로 선정할 수 있는 회사)에는 선정자가 평가하여 적정 후보를 감사인으로 선정하게 됨
 - 감사인선임위원회, 사원총회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인 선정자(감사 또는 회사)가 승인권자에게 후보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보를 감사인으로 선정하게 됨

나. 대면회의

1) 개요

- 감사인 선정과정에서 회의체(감사위원회, 감사인선임위원회, 사원총회)가 선정(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감사인 선정을 위한 대면회의를 개최할 것이 요구됨



- 대면회의란 종전 외부감사법의 서면회의는 달리 위원들이 직접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의미하므로, 위원이 아닌 감사인 후보는 대면회의 개최시 직접 출석할 것이 반드시 요구되지는 아니함
- 개정 전 외부감사법은 일정한 조건에서 서면회의를 허용하고 있었으나, 개정 외부감사법은 감사인 선정과정의 충실화를 위하여 대면회의를 강제하고 있으며, 대면회의의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 대면회의에 화상회의·음성회의가 포함되는지 여부

- 화상회의의 경우 질의응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등 충실한 회의 진행에 문제가 없는 경우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실시하면 대면회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음
- 음성회의의 경우 영상이 송수신되지 않는 음성회의(전화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회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2) 회의내용의 문서화

- 감사위원회, 감사인선임위원회, 사원총회는 대면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감사인 선정기준에 따라 후보를 검토한 결과, 대면회의의 개최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 내용 등을 문서로 관리하여야 함

3 감사계약 체결



Key Point

- ☑ 회사는 감사인 선정절차에서 검토된 취지에 따라 선정된 감사인 후보와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회사는 적법하게 선정된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감사계약 체결시의 계약 조건은 회사와 감사인이 협의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 감사인 선정절차에서 평가된 내용과 최종적인 감사계약 내용이 완전히 일치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감사인후보평가시의 내용과 다른 감사계약 내용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 그러나 감사인 선정절차에서 검토된 내용과 실제 계약체결 조건이 크게 차이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감사인 후보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 이 경우 변경된 내용으로 평가를 재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재실시하지 않는 경우 적법한 감사인 선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볼 소지가 있음

VI 감사인의 선임보고

1 주주에 대한 보고

-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 또는 변경선임하는 경우 그 사실을 ①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상법」에 따른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②주주(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의 주주를 말한다) 또는 사원에게 문서로 통지하거나, ③인터넷 홈페이지에 선임 또는 변경선임한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공고하여야 함
- 보고방식은 위에서 열거한 방식 중 어느 한가지 방법에 의하되,
 - 주주에게 문서로 통지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에 의할 경우 공고는 감사대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는 유지되어야 함

2 증권선물위원회에 대한 보고

Key Point

- ☑ 회사와 감사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 다만, 3년 연속계약 의무에 따른 2년 또는 3년차 계약의 경우 회사는 보고의무가 없으나 감사인은 보고하여야 하며
 - 중소형 규모의 비상장회사*의 경우 전기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을 할 경우 보고의무가 없으나, 감사인은 보고하여야 한다.
 - * 비상장회사로서 대형비상장주식회사나 금융회사에 해당되지 않는 회사

가. 개요

- 회사는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 체결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계약 체결보고 접수 업무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으므로, 회사는 금융감독원에 감사계약 체결 사실을 보고하게 됨⁸⁾
 - 보고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① 해당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서 사본, ② 감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또는 사원총회의 감사인 선임 승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감사인을 변경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 내용, ④ 해당 회사의 법인등기부 등본임(영 제18조 제2항)

8) 금융감독원 회계포탈(<http://acct.fss.or.kr>) 사이트의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시스템"을 통하여 전산신고하여야 한다.

※ 선임보고 제출서류를 “달리할 수 있는 경우”의 의미

- 감사인 선임보고시 원칙적으로 감사계약서, 감사위원회·감사인선임위원회 등 개최서류, 감사인 교체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하나, 영 제18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회사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의 종류를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① 선정과정에서 위원회 등의 개최가 필요한 회사의 경우
감사계약서, 감사위원회·감사인선임위원회 등 개최서류의 제출을 달리 할 수 있음 (영 제18조 제3항 제1호)
 - ② 감사인이 지정 또는 중도해임된 경우
감사위원회·감사인선임위원회 등 개최서류의 제출을 달리 할 수 있음 (영 제18조 제3항 제2호)
- 감사인 선임보고 관련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이 이해하는 것이 타당
 - ① 선정과정에서 위원회 등의 개최가 필요한 회사의 경우
감사계약서, 감사위원회·감사인선임위원회 등 개최서류의 제출이 요구됨
 - ② 감사인이 지정 또는 중도해임된 경우
 - 감사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감사인 선임보고 의무가 없으므로 제출서류는 없음
 - 감사인이 중도해임된 경우에도 감사인 선정절차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감사위원회·감사인선임위원회 등 개최서류의 제출이 요구됨

유의사항

- 종전과 달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비상장금융회사는 전기감사인을 재선임하는 경우에도 감사인 선임보고를 생략할 수 없음(3개 사업연도마다 한번씩 보고)

나. 보고 예외

-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 선임의무가 있는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는 감사계약 보고 첫해에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을 보고하였으므로, 2·3년차 감사계약에 대한 체결보고는 별도로 요구되지 않음⁹⁾

9) 다만 감사인은 3년 동일감사인 선임회사의 2·3년차 감사계약에 대하여도 매사업연도마다 보고하여야 한다.

-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 선임의무가 없는 중소형 비상장회사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선임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선임보고를 생략할 수 있음
- 회사가 지정감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고의무가 없음

VII 사후확인

Key Point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이후 감사인 선정기준 등에서 정한 사항이 준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감사인 선정기준 등에서 정한 사항(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인력에 관한 사항을 의미함)을 감사인이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함(법 제10조 제6항)
 - 이 경우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감사는 감사인 선정기준 등에서 정한 사항을 감사인이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한 문서를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한편 지정감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선정절차 없이 지정 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감사인 선정기준에 따른 감사인의 후보평가는 요구되지 않음(법 제10조 제7항 제1호)
 - 다만 지정감사인이라고 하더라도 감사보고서의 사후확인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으므로,
 - 지정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감사인 선정기준 등에서 정한 사항을 감사인이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 결국 지정감사계약 체결을 위하여 감사인 선정기준을 마련할 것은 요구되지는 않으나, 향후 감사보고서에 대한 사후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인력에 관한 사항(기준)은 마련되어 있어야 함



제

4

장

감사인의 지정(上) - 직권지정

—
읽기 쉬운

「불외부감사법 가이드북」

- I. 감사인의 지정이란?
- II. 감사인 지정사유(직권지정)
- III. 감사인 지정시기
- IV. 지정대상 기간
- V. 감사인 지정절차

제4장 감사인의 지정(上) - 직권지정

I 감사인의 지정이란?

1 개요

Key Point

☑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사인 지정 받은 경우 회사와 지정감사인 모두 감사계약을 체결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 감사인의 지정이란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 지정사유가 발생한 회사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함
 - 감사인의 지정업무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으므로, 감사인 지정의 처분행정청은 금융감독원장이고, 금융감독원에서 지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음
 - 감사인의 지정권한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있으나, 감사인의 구체적인 지정방법은 법령 등에 따라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금융감독원장이 임의로 특정 지정감사인을 정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음
 - 감사인의 지정통보에 따라 감사인으로 선임된 감사인은 지정감사인으로서 당해 회사를 감사하게 됨

- 감사인이 지정감사인인지 여부는 계약 체결 과정이 지정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 동일한 회계법인이 감사인 선임과정에 따라 A회사에 대하여는 지정 감사인, B회사에 대하여는 자유선임감사인이 될 수 있음
- 지정감사인의 감사와 자유선임된 감사인의 감사는 감사방법이나 감사 기준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나,
 - 회계처리기준위반 전력이 있는 등 공정한 감사 필요성이 인정되어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의 지정감사인은 자유선임 감사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
- 감사인의 지정처분은 그 자체로 감사인 선임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가 통보된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감사인 선임효과가 발생함
 - 지정처분을 받은 회사는 지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정 통보된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지정처분은 감사 계약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음
 - 회사가 감사인 지정통지를 받았음에도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행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회사 및 해당 회사의 업무집행지시자 등(상법 제401조의 제1항에 규정된 자)·이사·감사·감사위원회 위원 등(상법 제635조 제1항에 규정된 자)·회계업무 담당자(이하 "관련 임직원")는 형사처벌 대상(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될 수 있음(법 제44조 제1호, 제11조 제4항, 제46조)
 - 회계법인이 감사인 지정통지를 받았음에도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회계법인을 1년간 지정감사인 후보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감사인 지정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



2 감사인 지정의 유형

-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인하여 연속 6개 사업연도 자유감사계약을 체결한 회사에 대하여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주기적 지정제)가 도입되었음
 - 주기적 지정제와 구별하여 회사에 특정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지정하는 사유를 실무상 “직권지정”이라고 부르고 있음
- 결국 감사인 지정은 “직권지정”제도와 “주기적 지정제”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본장에서는 우선 직권지정 제도를 설명하고, 주기적 지정제에 대하여는 다음장에서 후술함

II 감사인 지정사유(직권지정)

- 감사인 지정은 금융감독원장의 재량행위이나, 회사에 감사인 지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인 지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감사인 직권지정사유는 다음과 같음

1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법 제11조 제1항 제1호)



Key Point

- ☑ 회사 스스로 감사인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감사인 선임기간 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 회사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에 위탁)에 감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
 - 다만 감사위원회가 없는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감사인 지정요청은 감사인 선임기간 내에 하여야 하므로 법 제10조에 따른 감사인 선임기간(사업연도 개시 이후 45일 이내·사업연도 개시전·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 이내) 내에 이루어져야 함

2 감사인 미선임 회사(법 제11조 제1항 제2호)

Key Point

- ☑ 감사인 미선임 회사는 감사인 지정을 받게 되며, 지정받은 감사인과 반드시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회사 및 관련 임직원은 법 제10조에 따른 감사인 선임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특히 감사인 미선임 회사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에서 감사인을 미선임한 당기에 대한 감사인 지정을 하고 있음
- 감사인 미선임과 감사인 지정감사계약 불이행은 별개의 범죄를 구성함
 - 감사인 선임기간 내에 감사인을 미선임하고 재차 감사인 지정처분에도 지정감사계약 체결을 불이행한 경우 법 제42조 위반(감사인 미선임)과 법 제44조 위반(지정감사계약 불이행)이 각각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 (형법상 경합범 관계)

3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법 제11조 제1항 제3호)

Key Point

- ☑ 감사인 선임절차 관련 법령을 위반한 회사는 감사인 지정대상이 될 수 있다.

-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함(법 제10조 제3항)



- 또한 회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사·감사위원회가 선정한 감사인 후보를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고,
 - 감사위원회가 없는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는 감사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함 (법 제10조 제4항)
-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 선임의무가 있음에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거나(법 제10조 제3항 위반),
 - 회사의 감사인 선임과정에서 법령에서 정한 선정 및 선정승인 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한 경우(법 제10조 제4항 위반)에는 감사인 지정사유가 될 수 있음
- 감사인의 선정 및 선정승인 절차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외감규정 등에서 세부내용을 정하고 있음(영 제12~13조 참조)
 - 형식적으로 선정 및 선정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선정 및 선정승인 과정이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인의 선정 및 선정승인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4 ■ 감사인 부당교체(법 제11조 제1항 제3호)

- 증권선물위원회가 회사의 감사인 교체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회사인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음
 - 회사의 감사인 교체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증권선물위원회가 개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 회사가 외감규정 제11조에서 정하는 다음 3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외감규정 제11조).

감사인 부당교체 사유

- ① 회사가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중요한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감사 계약을 감사인에 요구하는 경우
- ② 이사·감사·감사위원회 위원 등(상법 제635조 제1항에 규정된 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주주 또는 채권자가 감사의견과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 ③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감사보수를 현저히 낮출 것을 요구하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참고) 개정 전 외부감사법의 내용

- 개정 전 외감규정은 감사인 부당교체사유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등에 대하여 한정 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정적 의견을 표명한 감사인을 교체한 경우를 감사인 부당교체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으나(구 규정 제11조 제1항 제4호 본문), 개정 외감규정에서는 동 내용을 삭제하였음
- ※ 개정 전 규정은 비적정 감사의견을 표명한 감사인을 교체하더라도 감사인 교체 사유가 감사인에게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감사인 부당교체로 보지 않았음(구 규정 제11조 제1항 제4호 단서)
- 개정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감사인 선임기한이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로 단축되는 회사가 있으므로,
 - 감사인 교체 이후 감사의견에서 한정 의견 등이 나오는 경우에 구 규정에 따르면 사후적으로 부당교체가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규정의 삭제는 불가피함

5 회계처리기준위반이 확인된 회사(법 제11조 제1항 제4호)

-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회사는 감사인 지정대상이 됨
- 다만 감리결과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가 조치를 생략하거나 경고 이하의 조치를 한 경우는 경미한 위반이 확인된 회사로서 지정대상에서 제외됨



- 경고 이하의 조치란 경고·주의·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외감규정 제26조 제1항 5~7호)를 의미함

6 재무제표 대리작성 등(법 제11조 제1항 제5호)

- 해당 회사의 감사인 및 그 소속 공인회계사는 해당회사의 재무제표를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회사는 이러한 행위를 요구해서는 아니됨(법 제6조 제6항)
 - 감사인 등이 이를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회사가 이러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음

7 법에서 정한 재무기준에 미달하는 주권상장법인 (법 제11조 제1항 제6호)

가. 3개 사업연도 재무기준 해당회사



Key Point

- ☑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는 법 개정 이전 사업연도 및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사업연도도 포함하여 판단한다.

- 주권상장법인이 3개 사업연도 연속으로 ① 영업이익이 0보다 작거나, ② 영업현금흐름이 0보다 작거나, ③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경우에는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음
 - 즉 주권상장법인은 위 3가지 경우 중 한가지에만 해당하여도 지정 사유에 해당함
 - 재무기준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는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회사는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함

- 3개 사업연도란 직전 사업연도를 포함한 이전 3개 사업연도를 의미하며 (외감규정 제12조 제2항),
 -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주권상장법인이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아니하므로 신규 상장기업의 경우 상장이전 연도도 포함되어 판단될 수 있음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기준을 통틀어 판단하므로 일단 위 기준에 해당한 회사가 다음 1개 사업연도에 추가적으로 재무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그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기준 미달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되나,
 - 3개 사업연도 재무기준 미달로 지정을 받았던 기업이 지정 후 다시 동일 지정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지정 이후의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됨
- 영업현금흐름이 0보다 작은 경우란 회사의 영업활동 관련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감소하는 등의 요인으로, 당기 중에 영업활동으로 인해 회사의 현금이 감소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음
 - 다만 회사가 ① 외부감사법상 금융회사에 해당하거나, ② 최근 1년내 신용평가기관(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에 따른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으로 부터 BBB등급(기업신용평가 또는 무보증회사체에 대한 한국기업평가의 신용등급 기준, 이와 동등한 타 신용평가기관 등급포함)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현금흐름이 0보다 작은 경우에도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이자보상배율이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하는데, 금융회사의 경우 영업이익 계산시 이자비용을 차감하지 않고 산정함
- 회사가 한국거래소에 특례상장한 기술성장기업(기술과 성장성이 인정되는 중소기업으로 거래소 기술성장기업부에 소속된 기업)이거나, 기업인수목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영업이익이 0보다 작거나, 영업현금흐름이 0보다 작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에 해당하더라도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나. 직전 사업연도 재무기준 해당회사

- 주권상장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상 ① 부채비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1.5배 초과, ② 부채비율이 200퍼센트를 초과, ③ 이자보상배율 1미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대상임
-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의미하며, 부채비율이란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을 의미함
 - “같은 업종 평균” 이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제조업의 경우 중분류기준에 따른 업종) 평균을 의미함
- 다만 금융회사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에 따른 기업 인수목적회사(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모집을 통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법인)는 위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지정대상에서 제외됨 (영 제14조 제1항 후문)

8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권상장법인

(영 제14조 제3항 제1호)



Key Point

- ☑ 관리종목은 다음 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하나, 관리종목 사유가 감사의견 비적정인 경우*에는 당기 사업연도가 지정될 수 있다.

* 감사의견 비적정인 사유로 한국거래소가 통보하는 경우를 말함

- 자본시장법 제370조에 따른 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회사는 다음 사업연도에 지정대상이 됨(법 제11조 제1항 제7호, 영 제14조 제3항 제1호)
 - 다만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사유가 ① 주주 수 또는 상장주식 수 등 주식분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 주식거래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③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지정대상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지정대상선정일,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매년 9월 1일)에 관리종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대상이 됨
- 관리종목 지정사유는 원칙적으로 지정대상선정일의 다음 사업연도가 지정되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사유가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인하여 한국거래소가 지정대상으로 통보한 것일 경우에는 당기 사업연도의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음

9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상장법인
(영 제14조 제3항 제2호)

- 코스닥시장에 대한 상장규정에 따라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지정대상선정일의 다음 사업연도 지정대상이 됨
 - 다만 감사인이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검토·감사한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는 등으로 사유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경우는 지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10

주채권은행·기관투자자가 지정을 요청한 회사

(법 제11조 제1항 제8호)



Key Point

☑ 주채권은행 또는 수탁자책임을 이행할 기관투자자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는 감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회사의 주채권은행 또는 기관투자자가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 회사는 지정대상이 될 수 있음

가. 지정요청자

1) 주채권은행

- 주채권은행이란 해당 기업의 주된 채권은행(주된 채권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이 가장 많은 은행)을 의미함(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 제5호),
 -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결정됨

2) 수탁자 책임을 이행할 기관투자자

- 기관투자자 중 수탁자책임을 이행할 기관투자자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를 의미함
 - 기관투자자란 자산운용사 등 수탁받은 자산을 운용하는 자와 이를 점검 또는 관여하는 자산소유자(연기금, 보험회사 등)를 의미함
 - 수탁자책임(스튜어드십 코드)이란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의결권 행사 지침으로서, 2016. 12. 기업지배구조원, 자산운용업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여 제정한 민간자율규범임

- 구체적인 사안에서 수탁자 책임을 이행할 기관투자자로서 지정요청을 하기 위하여는 외감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규정 제13조 제1항)

나. 수탁자책임 이행의 인정요건

- 기관투자자가 감사인 지정요청을 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라 주주활동을 수행하였을 것

- 기관투자자가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라 주주활동을 수행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함

-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란 해당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할 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데 중요한 핵심 원칙과 이를 구체화한 내용으로서,

- 국내 자본시장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의미함

(규정 제13조 제1항 제1호)

- “주주활동”이란 주로 의결권을 의미하나 반드시 의결권에만 한정되지 아니하고, 수탁자책임 이행 활동의 범위는 기업 경영 전략과 성과, 위험 관리, 지배구조 등 핵심 경영사항에 대한 점검과 이사회 등과의 협의를 포함하며,

- 주주제안과 소송 참여 등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활동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2) 주식 100분의5 이상을 1년이상 보유

- 감사인 지정요청 대상이 되는 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5 이상을 1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함



3) 회계처리·외부감사 적정여부 확인 행위 존재

- 감사인 지정요청 대상이 되는 회사의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위 중 하나를 하여야 함

회계처리·외부감사 적정여부 확인 행위

- ①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상법 제466조 제1항)을 행사하여 회사에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 다만, 회사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 해당 청구를 거부한 경우는 제외
- ② 주주제안권(상법 제363조의2 제1항)을 행사하여 이사에게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 경우

4) 주식 계속보유 확약

- 기관투자자는 감사인 지정요청 대상이 되는 회사에 금융감독원장이 피신청인의 감사인을 지정한 날부터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피신청인이 발행한 주식의 100분의 5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겠다고 문시로 확약하여야 함

다. 지정신청 절차

- 주채권은행 및 기관투자자는 법인개황, 지정요건 증빙자료, 지정요청 사유를 기재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8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정을 신청함
 - 금융감독원장은 신청서에 흠결이 없는지, 지정이 회사에 경영에 미치는 피해가 크지 않은지, 지정 요청 이유가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감사인 지정여부를 결정함 (규정 제13조 제4항)
 - 금융감독원장은 감사인 지정요청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지정신청인과 회사에 통지하여야 함 (규정 제13조 제5항)

11 **감사인 해임절차 위반**(법 제11조 제1항 제9호)

 Key Point

☑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감사인을 해임하지 않는 경우 지정대상이 될 있다.

-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위반에 해당하거나 감사인 해임 사유가 발생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해임을 요청하였음에도, 감사인을 해임하지 않거나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회사를 의미함
 - 회사는 감사인이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등 감사인의 독립성이 위반될 수 있는 사유(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33조)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며,
 - 감사계약을 해지한 후 2개월 이내에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함 (법 제13조 제1항)
 - 또한, 주권상장법인과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된 감사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해임요청에 따라 감사인을 해임하여야 함 (법 제13조 제2항)

감사인 해임사유(영 제19조)

- ① 감사인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 ② 감사인이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③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회사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 ④ 외국인투자 회사가 출자조건에서 감사인을 한정할 경우
- ⑤ 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의 감사인 일치를 위한 경우

- 위와 같은 감사인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회사의 경우에는 회사는 기존 감사인을 해임할 권한을 보유하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기존 감사인을 해임할 의무도 부담하게 됨
 - 따라서 감사인 해임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감사계약의 해지 또는 감사인을 해임을 하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지정사유가 됨

12

표준감사시간보다 현저히 낮은 감사시간

(법 제11조 제1항 제10호)

-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한 회사는 감사인 지정대상이 될 수 있음
 - 표준감사시간이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감사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인이 투입하여야 할 표준적인 감사시간을 정한 것으로서, 감사인이 적절한 감사품질 유지 등을 위해 투입해야 하는 감사시간을 의미함
 - 표준감사시간은 이를 준수하여야 할 법상 강제력은 없으나,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지정대상이 될 수 있음
 - 표준감사시간에 “현저히” 미달된 경우를 감사인 지정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미달한다고 하였다든 이유만으로 지정사유가 된다고는 볼 수 없음

13 **최대주주·대표이사 변경**(법 제11조 제1항 제11호)

- 직전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과거 3년간 최대주주의 변경이 2회 이상 발생하거나, 대표이사의 교체가 3회 이상 발생한 주권상장법인은 지정대상이 될 수 있음(법 제11조 제1항 제11호)
 - 법 문언상으로는 대표이사의 교체란 1인 대표가 수인 대표로 되는 경우, 수인 대표가 1인 대표로 되는 경우, 수인 대표 중 1인의 교체·사임·추가 등 일체의 변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다만 동 규정의 입법취지는, 지배구조가 불안정하여 회계처리 등에 대한 내부통제가 취약해지거나,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회사의 감사인을 지정한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취지가 고려되어 감사인 지정이 이루어질 필요는 있음
 - 결국 동 지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최대주주의 변경횟수, 대표 이사의 교체횟수 등 문언에 따라 일의적으로만 적용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입법취지에 맞게 판단될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변경으로 인한 지정사유에서 제외될 수 있음
 - ① 최대주주나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상속, 사망, 실종 등)로 변경된 경우
 - ② 최대주주나 대표이사의 변경이 있으나 다음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외부감사법 개역
 외부감사의 내용
 감사인의 선임
 감사인의 지정(上)
 - 직권지정
 감사인의 지정(上)
 - 직권지정
 감사인의 해임·보정
 재무제표의 진실·정확
 내부통제관리제도의
 이행
 상장회사의 감사의
 이행
 감사인명부
 감사인명부

예외사유

〈 최대주주의 경우 〉

- 경영참여목적이 없는 기관투자자가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 지배·종속관계, 친족 등 특수관계자들 간 지분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 대표이사의 경우 〉

-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대표이사 전원 교체(순차적으로 교체되는 경우를 포함)만 대표이사 변경으로 간주
- 기존 대표이사 1인은 교체되지 않고, 대표이사의 수가 변경되는 경우

- 직전 3년간의 변경횟수를 합산하므로 특정 연도에 변경횟수가 과다한 경우 다음 연도에 추가적인 변경이 없이도 지정사유가 되는지가 문세되나,
 - 지정을 받았던 기업이 지정 후 다시 동일 지정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지정 후 변경횟수를 기준으로 판단됨
- 직전 사업연도란 감사인지정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지정대상선정일)을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를 의미함
 - 동 사유는 지정대상선정일의 다음 사업연도를 조기 지정하므로, 통상 지정대상 사업연도의 2기 전 사업연도가 지정사유 유무를 판단하는 직전 사업연도가 됨

14 주권상장에정법인(영 제14조 제6항 제1호)

Key Point

- ☑ 상장에정법인은 감사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는 지정대상이 될 수 있음

- 주권상장에는 우회상장 또는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상장이 인정 되는 경우도 포함되나, 다음의 회사는 제외됨

지정에서 제외되는 상장예정법인

- ①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되려는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
- ②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이 되려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
- ③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
- ④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기업인수목적회사

※ (참고) 개정 전 외부감사법의 내용

- 개정 전 외감규정에서는 상장예정법인이 지정을 받은 이후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에 상장되지 못하여, (상장을 위하여) 그 다음 사업연도에 기지정받은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경우,
 - 다음 2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그 감사인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보았고, 이를 실무상 “간주지정”이라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었음 (구 외감규정 제10조 제3항)
 - 개정 외부감사법에서는 동 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 이후에는 지정감사를 계속 받고자 하는 상장법인은 매년 금융감독원에 지정감사를 신청하여야 함

- 상장예정이라는 사실은 해당 기업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상장예정 법인이 상장을 이유로 금융감독원에 감사인 지정을 신청함으로써 감사인 지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15 회사의 귀책사유로 감사인이 감사계약을 해지한 회사 (영 제14조 제6항 제2호)

Key Point

☑ 감사보수 미지급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 감사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된다.

- 감사인은 감사보수 미지급(영 제21조 제1항 제3호), 회사 환경 변화에 따른 감사보수 재계약 미실시(영 제21조 제1항 제4호), 감사자료 미제출(영 제21조 제1항 제5호), 감사의견 관련 부당압력(영 제21조 제3항 제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위와 같은 사유로 감사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사유발생 당기에 감사인 지정대상이 됨

감사인 지정대상 감사계약 해지사유

- ①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 중 감사보수 지급에 관한 감사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 제21조 제1항 제3호)
- ② 감사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주요 사업부문의 성격이나 회사의 규모가 현저히 달라졌으나 감사보수에 대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 ③ 감사인(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감사인으로 한정한다)이 감사업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 따라 반기 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에 첨부하는 회계감사인의 확인 및 의견 표시를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회사에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회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감사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 제21조 제1항 제5호)
- ④ 「상법」 제6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규정한 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주주 또는 채권자로부터 감사 의견과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받은 경우 (영 제21조 제3항 제1호)

- 다만, 감사인이 위 ①~③에 해당하는 사유로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한은 회사의 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초일(12월 결산법인의 경우 통상 9월 1일)이므로, 기한 내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이어야 함

16 **외부감사법을 위반한 회사**(영 제14조 제6항 제3호)

Key Point

☑ 감사전 재무제표 미제출 등 회사가 외부감사법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

- 회사가 특정 외부감사법 조항을 위반한 경우는 감사인 지정대상이 됨
 - 다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조치를 하지 않거나 경고 이하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외됨(규정 제12조 제1항)
 - 경고 이하의 조치란 경고·주의·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외감규정 제26조 제1항 5~7호)를 의미함
- 회사가 감사인 지정대상이 될 수 있는 범위반 사유는 다음과 같음

감사인 지정대상이 되는 기타 범위반 사유

- ① 회사가 법 제6조 제2항부터 제5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공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법 제8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영 제9조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 ③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자격제한
- ④ 법 제10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감사인 선임 시 준수 사항
- ⑤ 법 제12조에 따른 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통지·공고
- ⑥ 법 제13조에 따른 감사인 해임 및 재선임
- ⑦ 법 제14조에 따른 의견진술권
- ⑧ 법 제21조에 따른 감사인의 권한
- ⑨ 법 제22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정행위 등의 조사 및 시정요구 등
- ⑩ 법 제2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외부감사법 개역
외부감사인의 내장
감사인의 직권
감사인의 지정(上)
- 직권지정
감사인의 지정(上)
- 시정요구
감사인의 지정(上)
- 경고 이하의 조치
감사인의 해임·포징
재무제표의 작성·제출
외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감사인의 선임에
관련 사항

17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인 지정이 요청된 회사

(영 제14조 제6항 제4호)

-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장)에 감사인 지정이 의뢰된 회사는 지정대상이 됨
 - 현재 관련 법률로는 상호저축은행법상의 요청이 있음

18

소속 임직원의 횡령·배임(영 제14조 제6항 제5호)

-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횡령 또는 배임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권상장법인이 소속 임직원을 고소하거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회사는 지정대상이 됨
 - 이 경우 소속 임직원에는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도 포함되며, 고소나 공소제기 사실이 지정사유가 되므로 이후 재판과정에서의 유·무죄 결과와는 관계없이 지정사유가 될 수 있음
- 지정대상이 될 수 있는 횡령·배임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기자본과 자산 총액을 판단함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① 임원: 자기자본의 1000분의 5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 자기자본의 10000분의 25)
- ② 직원: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 자기자본의 1000분의 25)

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 ① 임원: 자기자본의 1000분의 5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인 경우 자기자본의 10000분의 25)
- ② 직원: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인 경우 자기자본의 100분의 3)

다.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 ① 임원: 자기자본의 1000분의 5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인 경우 자기자본의 10000분의 25)
- ② 직원: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19 지정기초자료 미제출·부실제출 회사(영 제14조 제6항 제6호)

Key Point

☑ 금융감독원에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

- 법 제11조 제2항에 해당하는 회사(코넥스 상장법인을 제외한 주권상장법인, 자산 1천억원 이상 소유·경영 미분리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로부터 2주 이내 감사인 지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자료(이하 "지정기초자료")를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장)에 제출하여야 함(영 제17조 제1항)
 - 회사가 영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원에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정기초자료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된 내용이 있는 경우 또는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린 경우에는 감사인 지정대상이 됨

※ (참고) 개정 전 외부감사법의 내용

- 개정 전 외부감사법의 직권지정 사유 중 소유·경영 미분리,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는 삭제되었음
 - 종래 소유·경영 미분리 사유는 회사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 적용이 제외될 수 있어, 실무적으로 적용사례가 많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음
 -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을 이유로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표명한 감사인이 차기에 지정감사인으로 교체되는 결과가 되므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표명한 감사인이 불이익을 받는 측면이 있었음
 - 개정 외부감사법은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하면서 소유·경영 미분리 사유는 주기적 지정사유로 규정하고, 소유·경영 미분리 사유를 직권지정 사유에서 삭제하였음

Ⅲ 감사인 지정시기

Key Point

- ☑ 지정대상 사업연도는 지정사유에 따라 당기 지정과 차기 지정으로 나누어진다.

1 개요

- 감사인의 지정시기는 지정사유가 발생한 당기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식과, 지정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차기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식이 있음
 - 개정 전 외부감사법은 감사인 지정사유가 발생한 당기 사업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식만을 규정하였음
 - 개정 외부감사법상의 지정시기는 차기 지정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지정사유에 한정하여 당기 지정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2 당기 사업연도에 대한 지정사유

- 당기 사업연도에 대한 지정이 이루어지는 사유는 다음과 같음

당기 사업연도에 대한 지정사유

- ①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② 주채권은행·기관투자자가 지정을 요청한 회사법 제11조 제1항 제8호)
- ③ 주권상장예정법인(영 제14조 제6항 제1호)
- ④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인 지정이 요청된 회사(영 제14조 제6항 제4호)
- ⑤ 감사인 미선임 회사(법 제11조 제1항 제2호)
- ⑥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감사인 부당교체(법 제11조 제1항 제3호)
- ⑦ 감사인 해지절차 위반(법 제11조 제1항 제9호)
- ⑧ 회사의 귀책사유로 감사인이 감사계약을 해지한 회사(영 제14조 제6항 제2호)

-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 또는 주권상장예정법인으로 인한 지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기 사업연도가 지정되지만, 지정대상선정일이 해당 사업연도 종료 전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의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음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권상장법인(영 제14조 제3항 제1호)에 대한 지정은 원칙적으로 차기 지정사유이나,
 -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니고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이 폐지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게 되어 한국거래소에서 통보된 회사는 당기 사업연도를 지정함

3 차기 사업연도에 대한 지정사유

- 당기 사업연도에 대한 지정사유를 제외한 지정사유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요청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기 지정사유에 해당됨

차기 사업연도에 대한 지정사유

- ① 회계처리기준위반이 확인된 회사(법 제11조 제1항 제4호)
- ② 재무제표 대리작성 등(법 제11조 제1항 제5호)
- ③ 일정 재무기준에 미달하는 주권상장법인(법 제11조 제1항 제6호)
- ④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권상장법인(영 제14조 제3항 제1호)
 - *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회사는 제외(상장폐지 요건에 해당)
- ⑤ 투자자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영 제14조 제3항 제2호)
- ⑥ 표준감사시간보다 현저히 낮은 감사시간(법 제11조 제1항 제10호)
- ⑦ 최대주주·대표이사 변경(법 제11조 제1항 제11호)
- ⑧ 외부감사법을 위반한 회사(영 제14조 제6항 제3호)
- ⑨ 소속 임직원의 횡령·배임(영 제14조 제6항 제5호)
- ⑩ 지정기초자료 미제출·부실제출 회사(영 제14조 제6항 제6호)

IV 지정대상 기간

Key Point

☑ 지정기간은 원칙적으로 주기적지정 대상 회사*는 3개 사업연도, 그 이외의 회사는 1개 사업연도이다.

*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과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를 말함

1 개요

- 개정 전 외부감사법은 감사인 지정사유가 있는 회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1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지정하였음
 - 개정 외부감사법에서 주기적 지정제도가 도입되면서 주기적지정대상 회사(코넥스시장을 제외한 주권상장법인, 소유·경영미분리 주식회사)는 6년간 연속 자유선임 계약이 이루어진 후 3년간 지정감사를 받게 되었음
 - 주기적 지정대상 회사에 직권지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종전과 같이 1개 사업연도를 지정하게 되면, 1개 사업연도 후 다시 6개 사업연도를 자유선임 계약할 수 있게 되고,
 - 이는 6개 사업연도간 직권지정사유가 없이 자유선임계약을 하고 3개 사업연도 (주기적) 지정을 받은 회사보다, 1개 사업연도 감사인 직권 지정을 받은 회사가 결과적으로 지정감사 의무기간이 짧아지는 측면이 발생하게 됨
- 결국 개정 외부감사법은 감사인 지정기간을 이원화하여 주기적 지정제 대상회사(주권상장법인, 소유·경영미분리 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에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기타 회사는 원칙적으로 1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음

2 주기적 지정대상 회사

- 주기적 지정대상이 되는 회사에 지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지정이 이루어지게 됨(규정 제10조 제1호)
 - 주기적 지정대상회사란 법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기적 지정제 대상회사를 의미함

※ 주기적 지정대상 회사

-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주식회사(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이면서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 50%이상을 소유하면서 대표이사인 회사)가 주기적 지정대상회사에 해당함(이하 제5장 1.의 2항에서 상술)
 - 주기적 지정대상 회사에 해당하기 위하여 주기적 지정요건(6개 사업연도 연속 자유 선업)에 모두 해당할 것이 것이 요구되지는 아니함
- 3개 사업연도에 대한 지정이 이루어진 후 지정기간 중에 다시 감사인 새로운 지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로 지정이 이루어지게 됨
 - 이 경우 추가 지정대상 기간은 기존의 지정기간의 종료 이후부터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정기간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로 발생한 지정사유를 기준으로 지정대상 기간을 다시 산정하게 되므로,
 - 기존 감사인 지정기간과 새로운 지정기간이 중복될 수 있으며, 중복된 기간이 추가로 연장되지는 않음

참고사항

- 주권상장법인 또는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이 감사인을 지정받은 사업연도에 대하여 다시 지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기간을 연장하지는 않음
 - * (예시) '20년~'22년의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가 다시 '21년부터 지정대상에 해당할 경우 '21년~'23년의 감사인을 지정(결과적으로 '20년~'23년까지 총 4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지정받음)

3 그 밖의 회사

가. 1개 사업연도 지정

- 주기적 지정대상 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는 1년간 지정을 받게 됨
(규정 제10조 제1호, 규정 시행세칙 제10조 제2항 제2호)

나. 2개 사업연도 지정 등

- 2개 사업연도 연속 직전 사업연도와 동일한 법규위반 사유로 지정을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2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지정이 이루어지게 됨
 - 이에 해당할 수 있는 법규위반사유는 ① 감사인 미선임(법 제11조 제1항 제2호), ②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법 제11조 제1항 제3호), ③ 재무제표 대리 작성 금지 위반(법 제11조 제1항 제5호), ④ 감사인 해임의무 위반(법 제11조 제1항 제9호), ⑤ 감사진 재무제표 제출 위반 등(영 제14조 제6항 제3호), ⑥ 지정기초자료 제출 위반(영 제14조 제6항 제6호) 등이 될 수 있음
- 감리결과조치로 인하여 감사인 지정을 받는 경우에는 감리결과조치 내용에 따르게 되므로,
 - 주기적 지정대상 회사가 아닌 경우에도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결과 조치로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 지정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지정될 수 있음

V 감사인 지정절차

1 지정절차의 개관

- 감사인 지정절차는 금융감독원장이 지정대상 회사를 선정하고 해당회사와 감사인으로 지정하려는 회계법인에 지정을 사전통지함
 - 이후 회사와 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 지정을 본통지하게 됨
- 회사와 회계법인은 본통지 이후에도 재지정사유가 있으면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재지정 요청이 타당한 경우 재지정이 이루어짐
- 시행령 제17조 제2항 이하에서는 주기적 지정(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지정)의 경우에 사전통지 및 재지정절차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규정 제15조 제1항에서는 금융감독원장은 직권지정(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지정)시에도 시행령 제17조 제2항 이하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권지정시에도 사전통지 및 재지정절차가 적용됨

[참고] 12월 결산법인의 2019년도 감사인 지정 일정

- (종전) 2019년 4월(비상장사는 7월)에 2019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통지
 - (개정) 2019년 10월에 2020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사전통지(11월에 본 통지)
- * 다만, 회사 등의 지정요청, 감사인 미선임 등 당해 사업연도 감사인 지정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



2 지정대상 회사의 선정

Key Point

- ☑ 지정사유별로 지정대상 선정일이 상이하며, 지정대상 선정일을 기준으로 지정대상회사 여부가 결정된다.

가. 개요

- 감사인 지정을 위하여는 먼저 금융감독원장이 회사에 지정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게 됨
 - 회사가 지정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회사가 지정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일에 지정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
 - 이러한 지정사유의 판단기준일을 “지정대상선정일”이라고 함 (외감규정 제12조 제1항)
- 지정대상선정일을 기준으로 지정사유 유무를 판단하므로 지정대상선정일 이전에 지정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지정대상선정일 도래 전 지정사유가 소멸하였다면 지정대상에서 제외됨
 - 반대로 지정대상선정일에 지정사유가 존재하였다면, 지정대상선정일 이후에 지정사유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지정대상임
- 법령상 규정된 지정대상 선정일은 감사인 지정사유에 따라 ① 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날, ② 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6개월째 되는 날의 초일, ③ 금융감독원장이 지정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한 날, ④ 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째 되는 날의 초일 등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외감규정 별표2)

나. 지정사유별 지정대상 선정일

지정사유별 지정대상 선정일

- ① 회사 등이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경우 : 회사 및 관계기관이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날
- ② 감사인 미선임 회사 : 사업연도 개시 후 6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
- ③ 감사인 부당고체 회사, 감사인 해임의무 위반 회사, 감사인이 감사계약을 해지한 회사, 지정기초자료 미체출·부실체출 회사 : 금감원이 지정사유 발생사실을 확인한 날
- ④ 상기 외 회사 : 사업연도 개시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

1) 회사 등이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날

- 회사 등이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한 날이 지정대상 선정일이 됨

지정요청일을 기준으로 하는 지정사유

- ①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② 주채권은행·기관투자자가 지정을 요청한 회사 (법 제11조 제1항 제8호)
- ③ 주권상장예정법인 (영 제14조 제6항 제1호)
- ④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인 지정이 요청된 회사 (영 제14조 제6항 제4호)

2) 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6개월째 되는 날의 초일

- 감사인 미선임 회사(법 제11조 제1항 제2호)로 인한 지정은 회사의 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6개월째 되는 날의 초일(12월 결산법인의 경우 6월 1일)이 지정대상 선정일이 됨

3) 금융감독원장이 지정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한 날

- 금융감독원장이 지정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한 날에 지정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사유확인일을 기준으로 하는 지정사유

- ①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감사인 부당고체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 ② 감사인 해지절차 위반 (법 제11조 제1항 제9호)
- ③ 회사의 귀책사유로 감사인이 감사계약을 해지한 회사 (영 제14조 제6항 제2호)
- ④ 지정기초자료 미제출·부실제출 회사 (영 제14조 제6항 제6호)

4) 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째 되는 날의 초일

- 지정대상 회사의 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째 되는 날의 초일에 회사에 지정사유가 존재하는지를 기준으로 지정대상 여부를 판단함(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지정대상선정일은 9월 1일)
 - 다음과 같이 지정대상 선정일의 다음 사업연도 지정(차기 지정)이 이루어지는 사유의 대부분(지정기초자료 미제출·부실제출 회사 제외)이 이 유형에 해당함

9개월째 되는 날의 초일을 기준으로 하는 지정사유

- ① 감사인 부당고체(법 제11조 제1항 제4호)
- ② 회계처리기준위반이 확인된 회사(법 제11조 제1항 제4호)
- ③ 재무제표 대리작성 등(법 제11조 제1항 제5호)
- ④ 일정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법 제11조 제1항 제6호)
- 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권상장법인(영 제14조 제3항 제1호)
- ⑥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영 제14조 제3항 제2호)
- ⑦ 표준감사시간보다 현저히 낮은 감사시간(법 제11조 제1항 제10호)
- ⑧ 최대주주·대표이사 변경(법 제11조 제1항 제11호)
- ⑨ 외부감사법을 위반한 회사(영 제14조 제6항 제3호)
- ⑩ 소속 임직원의 횡령·배임(영 제14조 제6항 제5호)

3 사전통지

Key Point

☑ 회사는 사전통지에 이익이 없는 경우 본통지 이전이라도 지정감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금융감독원장은 지정통지일(지정기준일)로부터 4주 전까지 지정예정 내용을 해당회사와 그 회사의 감사인으로 지정하려는 회계법인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영 제17조 제2항)
 - 개정 전 규정은 주권상장법인 등 지정시에 감사인을 복수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외감규정은 이러한 복수지정 사유를 삭제하고, 단수로 지정하고 있음
- 회사와 감사인이 사전통지에 대하여 제출할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 본 통지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사전통지의 내용에 따라 계약을 체결(조기 계약체결)할 수 있음(규정 시행세칙 제11조 제1항)
 - 이러한 경우 조기계약이라도 지정처분에 따른 유효한 계약으로 간주되며, 금융감독원장은 본통지를 생략할 수 있음
 - 통상의 사전통지 제도는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본 처분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나,
 - 지정처분 절차에서의 사전통지 제도는 단순히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것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 의사(조기계약 체결)에 따라서는 지정본처분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게 됨



4 의견제출

가. 개요

- 사전통지를 받은 회사와 회계법인은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재지정요청 등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금융감독원장은 제출받은 의견이 재지정 요청사유 등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타당한 내용인 경우에는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음
 -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에 따라 감사인을 다시 지정할 수 있는 사유는 외감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 사전통지 제도의 취지가 적법절차원칙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은 지정처분의 적법·타당성 전반에 대하여 가능하고, 외감규정상외 감사인 재지정 사유로 제한되는 것은 아님
 - 외감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통지에 대한 재지정 사유는 다음과 같음

나. 사전통지에 대한 재지정 사유

1) 외국인 투자회사가 출자조건에서 감사인을 한정된 경우

- 해당회사가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회사로서 그 출자조건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함
 - 외국인투자자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을 한 외국인을 의미하고, 외국인투자가에서 개인은 제외됨 (영 제17조 제7항 제1호)

2) 수시·사업보고서 부실기재 회계법인

- 회계법인이 외부감사법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수시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표시한 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린 경우를 의미함(영 제17조 제7항 제2호, 제16조 제2항 제2호)

3) 지정기피 회계법인

- 지정을 받은 회계법인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지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해당회사와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함(영 제17조 제7항 제2호, 제16조 제2항 제3호)

4)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등으로 징계를 받은 회계법인

- 감사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에 부당한 비용부담을 요구하거나, 감사 대상 회사에 감사에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회사가 감사에 필요한 회계처리기준의 해석, 가치평가 등에 관한 자료를 감사증거로서 충분한 수준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료를 외부기관이 작성하도록 회사에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함(영 제17조 제7항 제2호, 제16조 제2항 제4호)
 - 다만 동 사유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위의 사유로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 이어야 함

5)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회계법인

-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회계법인은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의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공인회계사법 제33조 제1항)
 - 지정감사인으로 예정된 회계법인에 다음과 같은 직무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지정 사유에 해당함



Key Point

- ① 회계법인이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회사
- ② 회계법인의 사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회사
 - 1. 자기 또는 배우자가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직위에 있었던 회사
 - 2. 자기 또는 배우자가 그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회사
 - 3. 자기 또는 배우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
 - 4. 자기 또는 배우자와 3천만원 이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회사
 - 5. 무상으로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사무소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
 - 6. 공인회계사 업무 이외의 업무로 인하여 계속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기타 경제상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자
 - 7. 공인회계사 직무의 대가로 자기 회사의 주식·신주인수권부사채·전환사채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한 회사
- ③ 과거 1년 이내에 자기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회계법인의 담당사원 또는 그 배우자가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에 있는 회사
- ④ 회계법인과 1억원 이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회사
 (*예금거래 등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정하는 채권·채무 제외)
- ⑤ 회계법인이 뚜렷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준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
 - 1. 무상으로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사무소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
 - 2. 공인회계사 업무 이외의 업무로 인하여 계속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기타 경제상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자
 - 3. 공인회계사 직무의 대가로 자기 회사의 주식·신주인수권부사채·전환사채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한 회사
- ⑥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 감사인이 수행할 수 없는 비감사용역*을 제공 받은 회사 등

※ 감사인이 수행할 수 없는 비감사용역(중속회사 포함)

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2.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3.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4. 자산 등에 대한 실사, 재무보고, 가치평가 및 자산 등의 매도·매수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제시(단, 부실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는 제외)
5. 인사 및 조직 등에 관한 지원업무
6. 재무제표에 계상되는 보험충당부채 금액 산출과 관련되는 보험계리업무
7. 민·형사 소송에 대한 자문업무
8. 자금조달·투자 관련 일선 및 중개업무
9.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등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으로서 임원이나 이에 준하는 직위의 역할에 해당하는 업무 등

6) 윤리규정상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

-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가 따라야 할 직업 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데, 직업윤리규정에는 감사인이 감사대상 회사와의 독립성을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공인회계사법 제43조 제1항).
 - 지정감사인으로 예정된 회계법인에 회사와의 이해관계가 있는 등 직업 윤리규정에서 정한 독립성이 훼손된 사정이 있는 경우 재지정 사유에 해당함(영 제17조 제7항 제4호, 규정 제15조 제6항, 제5호 제2호)

7) 회계법인 지정군 변경요청

- 회사 및 감사인 후보 회계법인은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각각 5개 군으로 분류되는데, 회사 및 감사대상회사의 규모를 고려하여 회사가 속한 군 이상의 군의 회계법인이 감사인으로 지정됨

〈 회사의 지정군 구분 기준 〉

구분	구분 기준
가군	직전 사업연도 말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설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경우
나군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이고 5조원 미만인 경우
다군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4천억원 이상이고 1조원 미만인 경우
라군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고 4천억원 미만인 경우
마군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경우

〈 회계법인의 지정군 구분 기준 〉

구분	구분 기준					해당 회계법인
	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수	직전 사업연도 감사업무 매출액	품질관리 업무 담당이사 및 담당자의 비중	손해배상 능력	직전 사업연도 감사대상 상장사 수	
가군	600인 이상	500억원 이상	별표 1 제1호마목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 담당자(품질관리 업무 담당이사 포함) 수의 120% 이상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200억원 이상	100사 이상	4개 충족
나군	120인 이상	120억원 이상		60억원 이상	30사 이상	4개 충족
다군	60인 이상	4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10사 이상	4개 충족
라군	30인 이상	15억원 이상		2명 이상	10억원 이상	5사 이상
마군	감사인 지정이 가능한 그 밖의 회계법인					

- 감사대상 회사는 지정감사인으로 기통보된 회계법인보다 상위 지정군이나 (영 제17조 제7항 제4호, 규정 제15조 제6항, 제5항 제3호), 하위 지정군(규정 제15조 제6항 제5항 제4호)의 회계법인으로 재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이 있는 경우 재지정사유에 해당
 - 다만 상위 또는 하위 지정군 재지정 요청은 사전통지와 본통지를 포함하여 1회만 가능함
- 상위 지정군의 회계법인을 재지정 요청하는 경우 회사가 속한 군과 기지정한 회계법인이 속한 군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재지정할 회계법인이 속한 군을 선택하여 지정을 요청할 수 있음(규정 별표4)
 - 상향 재지정 요청시 재지정을 희망하는 회계법인이 속한 군은 회사가 속한 군보다 높은 군 중에서 가·나·다·라 군 이상으로 범위를 정하여 선택하여야 하고, 특정 군만을 요청할 수는 없음
(예: 마군회사가 마군 회계법인을 기지정 받은 경우, 라군 이상으로 재지정 요청은 가능하나, 라군만으로 재지정 요청은 불가능)

〈 지정군 상향 재지정 요청이 가능한 경우 〉

회사가 속한 군(群)	기지정한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	재지정할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			
		가군을 재지정요청한 경우	나군 이상을 재지정요청한 경우	다군 이상을 재지정요청한 경우	라군 이상을 재지정요청한 경우
나군	나군	가군	-	-	-
다군	나군	가군	-	-	-
	다군	가군	가나군	-	-
라군	나군	가군	-	-	-
	다군	가군	가나군	-	-
	라군	가군	가나군	가다군	-
마군	나군	가군	-	-	-
	다군	가군	가나군	-	-
	라군	가군	가나군	가다군	-
	마군	가군	가나군	가다군	가라군

- 하위 지정군의 회계법인을 재지정 요청하는 경우 회사가 속한 군과 기지정한 회계법인이 속한 군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재지정할 회계법인이 속한 군을 선택하여 지정을 요청할 수 있음(규정 별표4)
 - 하향 재지정 요청시 재지정을 희망하는 회계법인이 속한 군은 회사가 속한 군보다 높은 군 중에서 나·다·라·마 군 이상으로 범위를 정하여 선택하여야 하고, 특정 군 하나만을 요청할 수는 없음
 - (예: 마군회사가 다군 회계법인을 기지정 받은 경우, 마군 이상으로 재지정 요청은 가능하나, 마군만으로 재지정 요청은 불가능)

〈 지정군 하향 재지정 요청이 가능한 경우 〉

회사가 속한 군(群)	기지정한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	재지정할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			
		나군을 재지정요청한 경우	다군 이상을 재지정요청한 경우	라군 이상을 재지정요청한 경우	마군 이상을 재지정요청한 경우
나군	가군	나군	-	-	-
다군	가군	나군	나~다군	-	-
	나군	-	다군	-	-
라군	가군	나군	나~다군	나~라군	-
	나군	-	다군	다~라군	-
	다군	-	-	라군	-
마군	가군	나군	나~다군	나~라군	나~마군
	나군	-	다군	다~라군	다~마군
	다군	-	-	라군	라~마군
	라군	-	-	-	마군

* 이 경우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 중에서 재지정

8) 모자회사간 감사인 일치

- 연결 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가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회사와 같은 감사인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재지정 사유에 해당함(영 제17조 제7항 제4호, 규정 제15조 제6항, 제5항 제4호)
 - 다만 지정감사인과 일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자유선임 감사인과 일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지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규정 시행세칙 제16조)

9) 회생절차에 따른 감사인을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 회사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법원의 허가 등으로 선임한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재지정 사유에 해당함(영 제17조 제7항 제4호, 규정 제15조 제6항, 제5항 제5호)

10) 기타 법령상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 감사인으로 지정받은 회계법인이 개별 법령 등에 따라 해당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재지정 사유에 해당함(영 제17조 제7항 제4호, 규정 제15조 제6항, 제5항 제6호).

※ 개정 전 외부감사법의 내용

- 종전 외부감사법은 회사의 지정요청, 소유경영미분리, 재무기준 미달, 관리종목, 상장 예정 등의 사유로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는 1회에 한하여 다른 사유 없이도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었음
 - 이를 실무상 단순재지정으로 부르고 있었으나, 개정 외부감사법에서는 단순재지정 제도를 삭제하였으므로, 개정 외부감사법상 재지정요청은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허용됨

5 본통지(지정처분)

Key Point

☑ 지정통지(본통지)를 받는 경우 회사 및 감사인은 지정감사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 금융감독원장이 회사 및 감사인에게 지정을 통지하는 날인 지정기준일은 본통지일이자, 지정처분일을 의미함(영 제15조 제5항 제1호)
 - 회사는 지정처분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을 받은 날(지정기준일)로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법 제11조 제4항)
- 감사인 지정을 받아 감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자유감사 계약시와 달리 감사계약을 위하여 감사인 선정절차가 요구되지 아니하므로(법 제10조 제7항 제1호, 제4항),
 -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감사인 선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선정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은 요구되지 않음
 - 회사가 지정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정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행정조치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회사 및 관련 임직원이 외부감사법 제44조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지정감사인 통지를 받은 회계법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2주 이내에 해당 회사와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은 해당 회계법인을 1년간 지정감사인 후보에서 제외할 수 있음(영 제16조 제2항 제3호, 규정 제14조 제8항 제3호)

6 재지정

가. 개요

- 회사 또는 감사인으로 지정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앞의 4의 나항에서 상술한 사전통지에 대한 재지정 사유와 동일함)가 있는 경우 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앞서 설명한 사전통지 제도와 재지정요청 제도는 재지정 요청사유에 관한 규정 내용이 동일하나,
 - 사전통지 제도는 적법절차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권리보장 제도인 반면 재지정요청제도는 적절한 감사인을 지정하기 위하여 외부감사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제도로 이해할 수 있음

나. 재지정절차

- 재지정 요청이 있고 그 요청사유가 타당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이를 반영하여 재지정을 하며, 기타 재지정 절차는 지정절차와 동일함
 - 재지정을 받은 이후 재지정된 감사인 등에도 직무제한 사유 등이 인정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지정 요청을 다시하고(재재지정 요청), 이에 따라 다시 감사인 후보를 변경하여 재지정(재재지정)이 이루어 질 수 있음



제 5 장

5

감사인의 지정(下) - 주기적지정

—
알기 쉬운
「新외부감사법 가이드북」

- I. 주기적 지정제도
- II. 주기적 지정요건
- III. 주기적 지정의 면제
- IV. 주기적 지정절차

제5장 감사인의 지정(下) - 주기적지정

I 주기적 지정제도

1 개요

- 개정 전 외부감사법은 회사에게 특정 지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감사인 지정처분이 이루어졌음
 - 그 결과 감사인 지정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회사의 경우에는 특정 회계법인과 자유선임 감사 계약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였음
- 개정 외부감사법은 주기적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주기적 지정대상 회사는 원칙적으로 6개 사업연도까지 자유선임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고, 이후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지정감사를 받도록 하였음

〈 주기적 지정제도의 개요 〉



2 주기적 지정대상 회사

Key Point

- ☑ 주권상장법인과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 주식회사에 주기적 지정제가 적용된다.

가. 주권상장법인

- 주권상장법인은 주기적 지정대상이 되나, 코넥스 상장법인은 주기적 지정 대상에서 제외됨(영 제15조 제2항)

나.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 주식회사

Key Point

- ☑ 대표이사기 주주가 아닌 경우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 주식회사로 볼 수 없다.

- 비상장회사가 다음 세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주기적 지정사유가 되며, 실무상 이를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라고 지칭하고 있음 (법 제11조 제2항 제2호)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으로 보는 3가지 요건 (3가지에 모두 해당)

- ①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개별F/S)이 **1천억원** 이상
- ②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의결권 있는 주식)이 **50%** 이상
- ③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 개별(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판단함

2) 대주주 및 그 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

- 대주주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를 의미하고, “특수관계”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함(영 제15조 제4항)
 - 지분의 계산은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특수관계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합산하며,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함
 - 다만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동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지정 대상 선정일 현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지정 대상 선정일로부터 2주 이내(지정 기초자료 제출기간 내,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9월 1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규정 시행세칙 제12조 제2항)

3) 대주주 또는 그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회사의 대표 이사인 회사

-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의미하므로(규정 제15조 제2항),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주주일 것이 요구됨
 - 결국 법인세법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회사는 주기적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 소유·경영 미분리 회사로 볼 수 없음
 - 동 요건의 해당여부도 직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회사가 지정 대상 선정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앞의 2)의 경우와 같음

II 주기적 지정요건

Key Point

☑ 6개 사업연도 동안 자유선임 계약을 연속하여 체결한 회사는 주기적 지정요건에 해당된다.

- 회사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자유선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기적 지정대상이 됨

1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

-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란 자유감사 계약이 지정감사계약으로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진 경우(역법적으로 연속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 연속하는 사업연도 중간에 지정감사 계약이 들어가 있으면, 그 지정감사 계약 종료 후에 다시 6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자유감사 계약을 체결해야 동 요건을 만족하게 됨
- 주기적 지정제는 2019. 11. 1.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시행되나, 6개 사업연도의 산정은 법 시행일 이전 사업연도도 포함하여 산정하므로
 - 법 시행일 이전의 자유선임계약 기간도 주기적지정제 요건 산정기간에 포함됨(법 부칙 제8조)

2 자유선임 계약 체결

-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감사인 자유선임을 의미하며, 법 시행 이전의 자유선임 계약 기간도 포함하는 부칙 제8조의 취지상 구 외부감사법상의 감사인 자유선임도 이에 포함됨

- 6개 사업연도 기간 동안 자유선임 계약이 체결되면 족하고 6개 사업연도 기간 중 감사인까지 동일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음
- 6개 사업연도 기간의 자유선임 감사는 반드시 주기적 지정대상 회사인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것을 요구하지 아니함
 - 따라서 6개 사업연도 연속하여 자유선임 감사가 이루어졌으면 족하고 회사가 해당 6개 사업연도 기간 동안 상장법인 또는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음

Ⅲ 주기적 지정의 면제

1 개요

- 주기적 지정 요건을 만족하는 회사라도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기적 지정을 면제하고 있음
 - 면제유형은 ① 6년 이내에 감리를 받은 회사가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경우, ② 감리를 신청하여 감리결과 회계처리 기준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경우로 나눌 수 있음

2 6년 이내 회계처리기준 위반 미발견

Key Point

- ☑ 과거 6년 이내에 무혐의 등의 감리결과가 있는 경우 주기적 지정이 면제될 수 있다.

가. 6년 이내에 감리를 받은 회사

- 회사가 과거 6년 이내 감리를 받은 때란 6년 이내에 감리가 종결된 경우를 의미함
 - 회사가 차기 주기적 지정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는 지정대상선정일(12월 결산법인의 경우 9월 1일)을 기준으로 과거 6년 이내에 감리결과가 확정된 경우임
- 감리란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가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행하는 감리를 의미하며 여기서 재무제표의 심사는 제외됨

나.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미발견

- “회계처리기준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회사”란 증권선물위원회가 조치를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며,
 - 증권선물위원회가 조치를 아니한 경우란 감리집행기관에서 조치없이 자체종결하거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으나 조치없이 종결하는 경우가 모두 해당됨
 - 다만 경미한 조치(경고, 주의)가 내려진 경우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회사에 해당하지 않음
- 결국 지정대상선정일로부터 과거 6년 이내에 감리결과가 확정되어 감리 결과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주기적지정 면제대상 기업으로 볼 수 있음

3 감리신청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미발견

Key Point

- ☑ 6년간 감리가 없었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이 없는 회사는 지정기준일 1년 전까지 주기적 지정면제를 위한 감리를 신청할 수 있다.

가. 개요

- 통상 감리주기는 6년을 넘기 때문에 회사가 주기적 지정을 면제받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감리를 신청하는 제도도 신설되었음
 - 다만 모든 회사에게 감리신청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내부회계 취약점 미발견 등의 감리신청 요건을 갖춘 회사에게 신청권한이 부여되며,
 - 감리신청은 감리집행기관(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할 수 있음

나. 감리 신청요건

- 감리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다음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함

1) 6년 이내 감리를 받지 않았을 것

-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장)가 주기적 지정을 통지하는 날(지정기준일)로부터 6년 이내에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법 제26조 제1항 제2호)를 받지 않은 경우 이어야 함
 - 감리를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주기적 지정 면제를 위하여 신청한 감리는 제외됨

2)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을 것

-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장)에 감리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사의견(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의견 포함)에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표명되지 아니하였어야 함

3) 감사인 미선임확약서 제출

- 위 2)항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을 작성한 감사인을 지정기준일 이후 도래하는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장)에 제출하여야 함

4) 지정기준일 1년 전까지 신청

- 지정기준일 1년 전까지 감리집행기관(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재무제표 감리를 신청하여야 함(규정 제15조 제7항)

IV 주기적 지정절차

1 주기적 지정절차의 개관



Key Point

☑ 주기적 지정절차는 직권지정의 지정절차와 차이가 없다.

- 주기적 지정의 절차도 제4장에서 설명한 직권 지정의 절차와 동일하게 이루어짐
- 주기적 지정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지정대상 회사를 선정하고 해당 회사와 감사인으로 지정하려는 회계법인에 지정을 사전통지함
 - 이후 회사와 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 지정을 본통지함
- 회사와 회계법인은 본통지 이후에도 재지정사유가 있으면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재지정 요청이 타당한 경우 재지정이 이루어짐

외부감사인의 개요
외부감사인의 대상
감사인의 선정
감사인의 지정(上)
감사인의 지정(下)-채무제표
감사인의 해임·복직
재무제표의 작성·제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상장법인기업의 감사
선정·선정결과

- 주기적 지정의 지정대상 선정일은 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매년 9월 1일)임
 - 주기적 지정대상 회사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지정받게 되므로,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다음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지정이 이루어지게 됨
 - 다만 3개 사업연도 지정의 경우에도 지정통지는 매년 1회씩 총 3회 이루어짐

2 주기적 지정의 연기

Key Point

- ☑ 법 시행(2019.11.1)전 3개 사업연도 감사계약이 있거나 감리중인 경우 등 주기적 지정 연기사유에 해당되면 주기적 지정이 연기된다.
 - *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등은 외부감사법상 3년 연속 감사계약 체결의무가 있음

가. 개요

- 주기적 지정의 연기란 회사가 주기적 지정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도 연기간 동안에는 지정을 하지 아니하고,
 - 연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주기적 지정사유가 발생하였는지를 다시 판단하여 주기적 지정여부를 결정한다는 의미임
 - 따라서 주기적 지정의 연기는 실질적으로는 연기간 동안 주기적 지정을 면제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게 됨

나. 주기적 지정 연기사유

- 1) 법 시행 전 3개 사업연도 연속감사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 주기적 지정제가 최초로 적용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포함한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체결한 감사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감사계약의 잔여기간 동안 주기적 지정이 연기됨

- 주기적 지정제는 2019. 11. 1.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됨에 따라,
 -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20사업연도부터 주기적 지정제가 최초로 적용되므로, 주기적 지정제가 최초로 적용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는 2019사업연도임
- 따라서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19사업연도를 포함한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체결한 감사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가 연기사유가 되고,
 - 통상 2018~2020사업연도 또는 2019~2021사업연도에 대한 감사계약이 이에 해당될 수 있음

※ 주기적 지정이 연기되는 계약은 2019. 11. 1. 이전 시작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감사계약이므로, 감사계약 체결 시기가 2019.11.1. 이전일 것이 요구되지는 않음

- 3개 사업연도 연속감사계약이란 해당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 경우인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가 체결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 1개 사업연도 계약이 가능한 비상장회사가 임의로 3개 사업연도를 감사계약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2) 감리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 해당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감리(법 제26조 제1항 제2호)가 진행중인 기간에는 주기적 지정이 연기됨
 - 주기적 지정 면제를 위하여 감리가 신청된 경우에도 해당 감리기간 동안 주기적 지정이 연기됨



3) 지배·종속회사간 지정대상 사업연도 일치

- 금융감독원장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회사들(회사집단)이 주기적 지정대상인 경우 먼저 지정받는 회사의 지정시기를 2개 사업연도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음
 - 동 사유로 인하여 지정연기가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회사가 다음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함이 인정되어야 함

지정대상 사업연도 일치를 위한 연기사유

- ① 회사집단 내 회사들 간에 감사인 지정을 받는 사업연도가 달라서 회사집단의 경영 효율성이 현저히 저해되는 등 과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 ② 회사집단 내에서 감사인 지정을 받아야 하는 사업연도가 비교적 낮은 회사가 감사인 지정을 받는 사업연도를 앞당기는 것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분산지정의 필요가 있는 경우

- 주기적 지정제의 요건이 되는 6년 연속 자유감사계약은 주기적 지정제 시행 이전의 계약도 포함되기 때문에, 다수의 기업들은 주기적 지정시행 첫해에 6년 연속 자유감사계약을 체결한 회사에 해당될 수 있음
 - 또한 주기적 지정제는 6년 자유감사계약 후 3년 지정감사계약이라는 주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특정 연도에 지정감사계약이 집중되면 주기적으로 계약 집중현상이 반복될 수 있음
- 주기적 지정제 시행 첫해부터 지정대상이 집중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대상 기업이 과다한 경우에는 일부 기업들의 지정시기를 연기하여 매년 고르게 주기적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
 - 주기적 지정제가 시행되는 날부터 8년간의 연평균 지정회사수를 고려하여 평균 지정대상회사수(약 220여개사)를 초과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지정을 연기하여 지정시기를 분산하게 됨

- 지정하는 회사수가 일정하게 되도록 분산하여 다음연도로 지정을 연기하고, 그 다음연도에는 지정이 연기된 회사부터 우선 지정하며, 나머지는 해당연도 지정대상회사 중 자산규모가 큰 순서대로 지정

주기적 지정 분산기준

① 직전 사업연도 연기 회사

직전 사업연도에 감사인 지정이 연기된 회사인 경우는 우선 지정대상이 됨. 연기 이후에도 주기적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연기 이후 주기적 지정대상 회사가 아니게 된 경우(상장폐지, 자산 1천억원 미만으로 감소, 소유·경영 분리 등)나 진행 중인 감리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 없이 종결된 경우 감사인 지정을 하지 않음

② 자산총액이 큰 회사

①에 해당하는 회사를 지정한 다음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큰 회사가 우선 지정대상이 됨



제

6

장

감사인의 해임·변경

—
읽기 쉬운
「新외무감사법 가이드북」

- I. 감사계약의 해지
- II. 회사의 감사인 해임
- III.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제 6 장 감사인의 해임·변경

I 감사계약의 해지

- 감사계약은 회사와 감사인간의 민사계약인데, 통상의 민사계약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체결되고 유지 여부도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으나 외부감사법상 감사계약은 체결이 강제되어 있음
 - 자유선임계약이란 계약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허용되는 것을 의미하고, 계약체결 여부는 강제되는 것임
- 외부감사법의 목적은 회사가 독립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의무란 단순히 감사인을 선임할 의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임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의무를 의미함
 - 그러므로 외부감사법은 문언상 감사계약의 체결(감사인 선임)만을 강제하고 있으나, 회사는 감사계약의 체결의무 뿐만 아니라 계약을 유지할 의무도 부담한다고 볼 수 있음
- 감사계약의 유지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감사계약을 유지할 수 없거나, 유지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외부감사법은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회사가 해지할 수 있는 사유와 감사인이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나누고,
 - 이를 당기 내에 중도해지할 수 있는 사유와 3년 연속 계약 중 잔여 사업연도에 대하여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각각 규정하고 있음

-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는 감사계약을 해지하거나 감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여야 함

II 회사의 감사인 해임

Key Point

- ☑ 회사는 법정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감사인을 해임할 수 있으며, 임의로 해임할 수 없다.

1 사업연도 중 회사의 해임사유

가. 감사인이 직무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은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의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33조)
 - 회사는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또는 제33조의 직무제한 규정에 따라 당해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에는,
 - 지체없이 감사계약을 해지하고 감사계약 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새로운 감사인을 다시 선임하여야 함(법 제13조 제1항)
 -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는 회사의 해지권한을 인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회사의 의무이기도 함
 - 따라서 직무제한 사유가 있는 감사인을 해임하지 않는 경우 감사인 지정사유가 될 수 있음
- ※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의 주요내용은 앞서 기술한 제4장. v. 4. 나. 5)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회계법인 부분 참조

나. 감사인의 감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감사인에게 해산 등 감사수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감사인 선임기한 내 감사인 선임의무 및 3년 동일 감사인 선임의무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므로(법 제10조 제7항 제2호),
 - 감사인 선임 기한 이후에도 기존 감사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음
 - 다만 회사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2개월 이내에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 하여야 함(법 제10조 제8항)
- 해임사유가 되는 해산 등 감사수행이 불가능한 사유란 다음과 같음 (영 제13조 제2항)

해산 등 감사수행이 불가능한 사유

- ① 감사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경우는 제외)
- ②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상 등록취소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 ③ 감사인인 감사반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효력상실된 경우
- ④ 감사인인 감사반의 구성원이 공인회계사법상 징계로 등록취소되거나 직무정지되는 경우
- ⑤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 ⑥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로 인해 감사인이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⑦ 그 밖에 감사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해산 등 감사수행이 불가능한 사유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규정되어 있으나, 미등록한 감사인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감사인 해임사유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를 규정할 취지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회계법인은 상장법인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는 데 있으므로 미등록한 경우에도 해임사유로 볼 수 있음

유의사항

-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가 감사인의 감사수행이 불가능하여 감사인을 다시 선임하는 경우에는 해당 1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선임한 후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2 3개 사업연도 중 회사의 해임사유

-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의 경우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나,
 - 회사는 감사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감사인을 해임하여야 함
- 동 규정에 따른 해임은 3개 사업연도 중 잔여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계약만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 해임대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의 시점에서 이미 종료된 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는 해임이 요청된 기존 감사인이 수행함
- 감사인의 해임시기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가 없는 경우 감사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의 해임을 요청한 경우 이어야 함
 - 위 사유로 감사계약을 해지하거나 감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여야 함
- 해임사유가 되는 감사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과 같음(영 제19조)

감사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

- ① 감사인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 ② 감사인이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③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회사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 ④ 외국인투자 회사가 출자조건에서 감사인을 한정한 경우
 - 외국인투자자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을 한 외국인을 의미함
 - 해당회사가 외국인투자자가 출자한 회사로서 그 출자조건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외국인투자자에서 개인은 제외됨
- ⑤ 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의 감사인 일치를 위한 경우
 -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중 어느 하나의 회사에 지정감사인인 있는 경우 다른 회사(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는 그 지정감사인과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감사인을 해임할 수 있다는 의미임

유의사항

- 3개 사업연도 중 잔여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계약만을 해지하는 것임
 - 해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는 해임이 요청된 감사인이 수행함

Ⅲ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Key Point

- ☑ 감사인도 법정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외부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의로 해지할 수 없다.

- 감사계약은 민사계약에 해당하나 감사인은 감사계약으로 인하여 회사에 대한 민사상의 의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 외부감사법에 따라 회사를 감사하고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권한과 의무를 부여받게 됨
- 위와 같이 감사인은 감사인으로서 해당 회사의 외부감사를 적정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감사인도 감사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임의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없음
- 외부감사법은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당기 내에 중도해지할 수 있는 사유와 3년 연속 계약 중 잔여 사업연도에 대하여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각각 규정하고 있음
 - 감사인은 위 사유로 감사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 후 2주 이내에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여야 함

해지보고서 첨부자료

- ① 감사계약을 해지한 사유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② 감사계약 해지에 대한 해당 회사의 의견

1 사업연도 중 감사인의 해지사유

- 외부감사법은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 등 사업연도 중이라도 감사인이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법정하고 이를 해지기한이 있는 사유와 해지기한이 없는 사유로 나누고 있음

가. 해지기한이 없는 사유

- 감사계약이 해지된 회사는 해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새로 선임하여야 함(법 제10조 제8항)
 - 또한 감사인은 감사계약 해지 후 2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함(규정 제17조)

1) 감사인의 자격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감사인이 다음 자격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해지사유가 됨
 -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의 감사인은 회계법인만이 될 수 있음(법 제9조 제1항)
 - 또한 감사인은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사유(공인회계사법 제33조 제1항, 제21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음

2) 독립성 훼손 등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하는 독립성이 훼손되거나 공인회계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의미함

나. 해지기한이 있는 해지사유

- 해지기한이 있는 해지사유는 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이 속하는 달의 초일(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매년 9월 1일)까지가 해지기한이며, 해지기한이 지난 이후에는 동 사유로 인한 해지는 불가능함
-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감사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해 회사의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인은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장)가 지정함
 - 감사인은 해지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해지사유는 다음과 같음

1) 감사보수 미지급 등

-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 중 감사보수 지급에 관한 감사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임

2) 감사보수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감사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주요 사업부문의 성격이나 회사의 규모가 현저히 달라졌으나 감사보수에 대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임
- 해당 사유가 인정되기 위한 감사보수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란 일체의 감사보수 재계약에 관한 것이 아니라,
 - 회사에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인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에 따라 체결되는 감사보수 재계약에 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3)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요청 미협조

- 감사인이 회사에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회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감사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함
 -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의 감사인인 경우에만 동 사유로 인한 해지가 가능함
 -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감사업무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에 첨부하는 회계감사인의 확인 및 의견 표시를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도 포함됨

2 3개 사업연도 중 감사인의 해지사유

-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가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함에 따라 해당 회사의 감사인도 3개 사업연도의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다만 감사인은 감사의견과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받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3개 사업연도 중이라고 하더라도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이 경우 감사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며,
 - 3개 사업연도 중의 해지란 3개 사업연도 중 잔여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계약만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함
- 감사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감사인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여야 함

유의사항

- 3개 사업연도 중 잔여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계약만을 해지하는 것임
 -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는 감사계약을 해지한 감사인이 수행함

- 해지사유가 되는 감사의견과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받는 등의 사유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감사의견과 관련한 부당한 압력

- 감사인이 이사·감사·감사위원회 위원 등에 해당하는 자(상법 제635조 제1항 각호 외의 본문에 규정된 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주주 또는 채권자로부터 감사의견과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받은 경우를 의미함
 - 동 사유로 인한 감사계약 해지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인은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장)가 지정함

나.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 발견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에 2개 사업연도 연속하여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를 의미함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을 통하여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어야
하므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표명하는 대형비상장회사·
금융회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음
- 동 사유로 인하여 감사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새로 선임하여야 함



제 7 장

재무제표의 작성·제출

—
읽기 쉬운
「법인회계법」 가이드북

- I. 회계처리기준
- II. 재무제표의 작성 및 제출
- III. 감사보고서의 제출

제 7 장 재무제표의 작성·제출

I 회계처리기준

Key Point

- ☑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에서 선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다.
- ☑ 다만, 주권상장법인과 상장예정법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1 개요

-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은 ①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② 그 밖에 외부감사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나눌 수 있음
 -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에 선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음
 - 다만 외부감사법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적용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회사

가. 주권상장법인

- 코넥스 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 주권상장법인을 의미

나. 상장예정법인

-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를 의미하며,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은 제외됨

[참고] 코넥스시장 관련 외감법상 특례 규정

- ①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및 동 시장 상장예정법인에 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의무 면제**
- ② 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에 대한 **감사인 지정의무 면제**
- 단, 코넥스시장에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시 감사인 지정 대상에 해당**
- ③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의무 면제**

다. 금융지주회사 등

- 금융지주회사, 은행, 금융투자업자(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신용카드업자가 이에 해당함

3 별도재무제표 작성의무

- 외부감사법 시행령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 지배회사가 연결재무제표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재무제표에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영 제6조 제2항)



- 시행령은 위 규정을 통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 뿐만 아니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도 작성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음

II 재무제표의 작성 및 제출

1 재무제표의 작성



Key Point

- ☑ 재무제표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을 의미한다.

가. 재무제표의 종류

- “재무제표”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註釋)을 의미함(법 제2조 제2호)
 - 외부감사법에 의하여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재무제표는 각 회계연도에 있어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재무제표인 결산재무제표임
 - 이러한 결산재무제표만이 외부감사법의 규율대상인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분기재무제표는 외부감사법에 의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대상이 아니므로 외부감사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08. 7.10. 선고 2008도4068 판결)

1) 재무상태표

- 재무상태표는 상법상 결산기마다 이사가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상법 제447조, 제579조) 대차대조표와 동일한 개념임

2)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한 회계기간 동안의 기업의 경영성적을 표시하는 서류로서 그 기간 동안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대비하여 산정한 경영손익을 표시함

3) 자본변동표

- 자본변동표란 자기자본계정의 변동상황을 당기순손익, 기타포괄손익,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라는 자기자본의 구성요소 별로 구분하여 표시한 것을 의미함(기업회계기준서 1001호 문단106)

4) 현금흐름표

- 현금흐름표란 일정한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현금흐름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분류하여 보고하는 서류임(기업회계기준서 1007호 문단10)

5) 주식

- 주식은 재무제표상의 계정과목과 금액의 내역을 보다 상세하게 제시하기 위하여 보충적으로 제공되는 서류임

나. 연결재무제표

- “연결재무제표”란 회사와 다른 회사가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 지배 회사가 작성하는 연결재무상태표,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주석을 의미함

다. 지배·종속의 관계



Key Point

- ☑ 지배·종속의 관계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1) 개요

- 지배·종속의 관계란 회사가 경제 활동에서 효용과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경우로서 회사간에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하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
 - 따라서 지배·종속의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서 판단함

2) 개정 전 외부감사법상의 내용

- 개정전 외부감사법 시행령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중 지배·종속의 관계로 보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음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지배회사는 외부감사 대상규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상장회사 등에 해당하는 회사를 종속회사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였음(구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조의3 제4항)
 - 또한 지배·종속의 관계가 연속적 또는 순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중 지배회사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었으며(구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조의3 제6항),
 - 이에 대하여 최상위지배회사, 자산총액이 최대인 회사를 지배회사로 하였음(구 규정 제6조 제2항)
 - 외부감사법이 개정되면서 위 예외 규정은 삭제되었으므로, 개정 외부감사법은 지배·종속의 관계를 개정 전 외부감사법보다 넓게 인정한다고 볼 수 있음
- 한편, 외부감사법 시행령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배·종속의 관계에 대하여는 종전 시행령에 따른다고 규정하였으므로(영 부칙 제6조), 2018 사업연도까지는 종전의 예외가 적용되나,

-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2019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개시 이전까지는 구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조의3 제4항과 같은 회사를 종속기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일반기업회계기준 시행일 및 경과규정 2018.9.21., 11.9. 11.14. 경과규정 3의2),
 - 결국 구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조의3 제4항에 해당하는 예외는 일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시행령 부칙에 따른 적용기간에 더하여 2019 사업연도까지도 적용됨

라. 재무제표 등 대리작성 금지

-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회계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음
 - 만약 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 감사인은 자기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결과가 되므로 외부감사의 의미가 퇴색됨
 - 이에 따라 외부감사법은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대리작성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
- 개정 전 외부감사법은 감사인이 해당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음
 - 개정 외부감사법은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요구에 응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회사가 이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음
 - 따라서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 이후에는 회사가 재무제표 대리작성 등을 요구하는 행위만으로도 제재대상 및 감사인 지정대상이 될 수 있음
- 재무제표를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의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취지는 회계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감사인은 감사를 담당하는 회사와의 관계에서 감사인일 뿐, 감사를 담당하지 않는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단순히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 해당 회사의 감사를 수행하지 않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 작성에 관여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음

- 금지되는 재무제표 대리작성 등 행위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영 제8조 제6항)

금지되는 재무제표 대리작성 등 행위

- ①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나 회계담당 이사(회계담당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를 대신하여 작성하는 행위
- ②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
- ③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 분개(분개 : 부기(簿記)에서 거래 내용을 차변(借邊)과 대변(貸邊)으로 나누어 적는 일)을 대신하여 해주는 행위
- ④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방법의 결정에 관여하는 행위

2 감사 전(前) 재무제표의 제출

가. 개요

- 회사가 다음과 같이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행정조치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도 될 수 있음(법 제44조 제1호)

1) 감사인에 제출

-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감사 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함
 - 제출기한을 강제하는 취지는 충실한 외부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감사기간이 확보되도록 보장하기 위함에 있음

-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인 회사가 감사 전 재무제표를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공시 후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공시하여야 함

2)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

-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의 경우에는 회사가 감사 전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즉시 동일한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함(법 제6조 제4항, 영 제8조 제3,4,5항)
 -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 비상장법인은 금융감독원 외부감사보고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주권상장법인인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에 대한 제출기한을 넘길 경우 그 사유를 제출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까지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사유를 공시하여야 함

나. 제출시기



Key Point

- ☑ 감사전 재무제표는 정기총회 개최 6주전, 연결재무제표(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는 정기총회 개최 4주전까지 회사가 감사인·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한다.
 - *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 비상장법인은 금융감독원 외부감사보고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1) 원칙

- ① 재무제표 : 정기총회 개최 6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 ② 연결재무제표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 정기총회 개최 4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2조원 이상은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

2)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 개정 외부감사법은 회사가 정기총회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에 개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기업들의 정기총회 분산개최가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이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의 제출기한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기준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음

- 구체적인 제출시기는 다음과 같음

① 재무제표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6주 전(회생절차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② 연결재무제표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4주 전 (회생절차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2조원 이상은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

3 결산 재무제표의 제출

- 회사는 상법에 따라 정기총회 또는 이사회에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승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법 제23조 제2항)


- 다만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해당 회사의 관리인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 (영 제27조 제5항)
- 정기총회 또는 이사회에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가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또는 회사가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재무제표와 동일하면 당해 회사는 재무제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법 제23조 제3항)

III 감사보고서의 제출

1 감사보고서의 제출

-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회사·증권선물위원회·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함
 -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행정조치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도 될 수 있음(법 제44조 제3호)

2 회사에 대한 제출기한

 **Key Point**

☑ 감사인은 정기총회 개최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음

외부감사법 개요
 외부감사의 대상
 감사인의 선임
 감사인의 직권(1)
 감사인의 직권(2)
 감사인의 직권(3)
 감사인의 책임
 재무제표의 작성·제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이행
 상장회사의 의무



- 다만 개정 외부감사법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이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이후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기준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음

가. 원칙

- 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 정기총회 개최 1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 위 ①의 기한과 동일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2조원 이상은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 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이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감사보고서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1주전(회생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까지 제출하여야 함
-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 위 ①의 기한과 동일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지 아니하는 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가의②항과 동일함(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 자산 2조원 이상은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3 증권선물위원회에 대한 제출기한

Key Point

☑ 감사인은 정기총회 종료 후 2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장)·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음
 - 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 정기총회 종료 후 2주 이내(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해당 회사의 관리인에게 보고한 후 2주 이내)
 - ②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 위 ①의 기한 내에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동시에 제출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2조원 이상은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 다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됨



제

8

장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
참고 문헌
『공공회계법』 제41조 제1항

- I. 내부회계관리제도란?
- II.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대상
- III. 운영실태 보고·평가·공시
- IV.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 및 감사



제 8 장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I 내부회계관리제도란?

- 외부감사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란 회사의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의미함
- 회계정보의 신뢰성 및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국내에서도 대형 회계분식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 회계제도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2003년 12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서 도입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외부감사법으로 이전하고 항구적으로 법제화 하였음
-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① 회계정보(회계정보의 기초가 되는 거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방법에 관한 사항
- ② 회계정보의 오류를 통제하고 이를 수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 ③ 회계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정 등 내부검증에 관한 사항
- ④ 회계정보를 기록·보관하는 장부(지기테이프·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의 관리 방법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 절차에 관한 사항

- ⑤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와 관련된 임직원의 업무 분장과 책임에 관한 사항
- ⑥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을 위한 절차
- ⑦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 및 임면절차
- ⑧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회사의 대표자 등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회계정보를 작성하였는지 등 포함) 보고의 기준 및 절차
- ⑨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평가·보고의 기준 및 절차
- ⑩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평가 결과를 회사의 대표자 등의 인사·보수 및 차기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 ⑪ 지배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⑫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의 예방 및 사후조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회사의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의 계획·성과평가·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
 - 나. 회사의 대표자 등이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관리·운영하는 임직원 또는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는 임직원에게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지시하는 경우에 해당 임직원이 지시를 거부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호하는 제도에 관한 사항
 - 다.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행위 신고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라. 부정행위 등의 보고에 따른 조사·시정 등의 요구 및 조사결과 제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감사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마. 부정행위 등의 보고에 따른 조사와 관련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과 관련한 회사 대표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
- ⑬ 그 밖에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현재 해당사항을 규율하는 규정은 없음

II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대상

Key Point

- ☑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은 주권상장법인과 직전사업연도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회사이며,
 - 유한회사, 법상 요건에 해당되는 특수목적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1 적용대상 회사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대상은 ① 주권상장법인과 ②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개별·별도재무제표 기준)이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임

2 적용예외

가. 개요

- 개정 외부감사법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유한회사 및 회사의 특성상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 필요성이 적은 특수목적법인 등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 개정 전 외부감사법의 내용

- 종전 외부감사법은 비상장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외한 회사만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제외 회사로 규정하고 있었음



- 법인세법에서 정의되고 있는 회사는 유동화전문회사 등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는 투자회사(1-8회)와, 이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동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을 의미함¹¹⁾

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사

- 그 밖에 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기가 어려운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회사는 적용이 제외되나, 현재 이에 해당하는 회사가 고시된 내용은 없음

11) 법인세법에서 정의하는 회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 「해외자원개발 사법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기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예외 회사 〉

	개정전	개정('18.11.1. 이후)
적용 대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권상장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개별 회사 기준)이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	좌 등
적용 예외	예외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유한회사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항에 따른 회사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 밖에 상근임직원을 둘 수 없는 회사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사

3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범위

Key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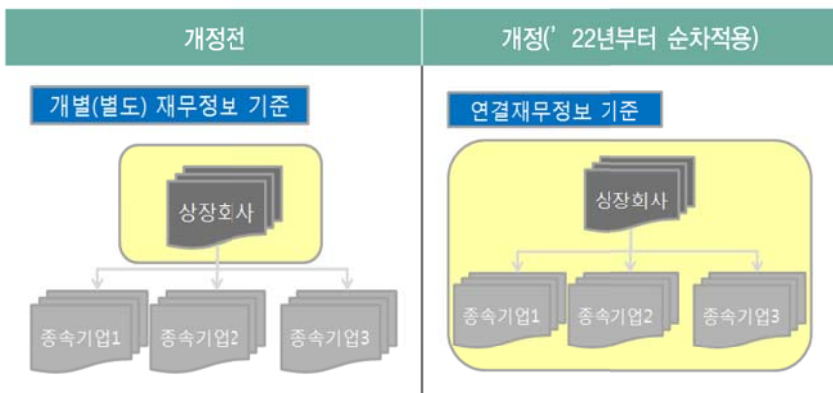
회사는 자산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2022 사업연도부터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가. 개요

- 2011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상장·공시·회계감리 등 관련 제도 전반이 연결재무제표중심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개별기업 단위로 운영되고 있었음
- 개정 외부감사법은 지배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였음(영 제9조 제2항 제6호)
 - 이에 따라 연결중심 공시체계 등과 일관성이 있도록 상장회사가 연결 실체 중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였음

외부감사법변경개요
외부감사법의 대량
간단인의 설명
「법인세법」 제51조의2
간단인의 설명
간단인의 설명
간단인의 설명
간단인의 설명
재무제표의 작성·제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상장회사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간단인의 설명

〈 연결실체 중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로의 변화 〉



나. 적용시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무가 현행 개별회사의 재무정보에서 연결회사의 재무정보로 '22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회사는 종속기업들에 대해서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함
 -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의 시기는 상장회사 자산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순차적용됨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시기

- ① 직전사업연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 : 2022 사업연도
- ② 직전 사업연도 자산 5천억 이상 상장회사 : 2023 사업연도
- ③ 전체 상장회사 : 2024 사업연도

※ 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가 2019년도부터 순차적용되므로 상장회사는 2022 사업연도부터 순차적으로 연결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여 감사를 받게 됨

Ⅲ 운영실태 보고·평가·공시

1 운영실태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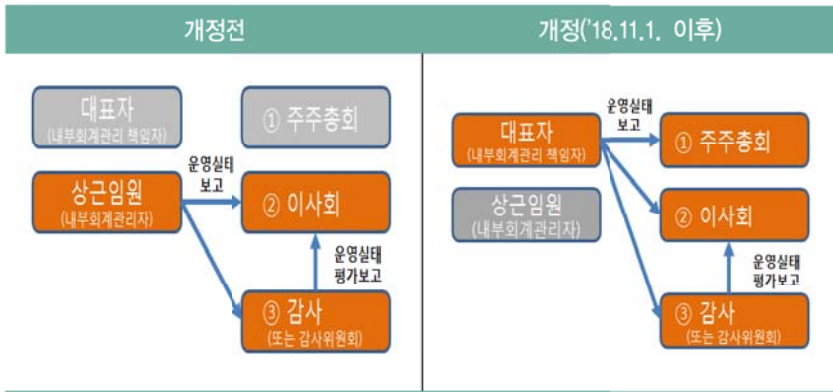
Key Point

- ☑ 대표자가 직접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등을 이사회·감사·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개요

- 개정 전 외부감사법은 회사의 대표자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운영의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였으나,
 - 별도의 상근이사가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되어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사회 및 감사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 하였음
 - 개정 외부감사법은 대표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표자가 직접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등을 이사회·감사뿐 아니라, 주주총회에도 보고하도록 하였음(법 제8조 제4항)
 - 다만, 회사의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 사유를 이사회 및 감사에 문서로 제출한 경우(영 제9조 제4항) 이사회 및 감사에 대한 보고는 내부회계관리자가 하도록 할 수 있음

〈 운영실태 보고절차의 변화 〉



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회사의 대표자는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게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함
 -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및 감사에게 대면보고하여야 함
- 운영실태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영 제9조 제4항)

운영실태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및 취약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
- ② 직전 사업연도에 보고한 ①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의 이행 결과
- ③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고 서명하여 보고 내용에 첨부하였다는 사실
 - ㉠ 보고 내용이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고,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 ㉡ 보고 내용에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 ㉢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보고 내용의 기재 사항을 직접 확인·검토하였다는 사실

2 운영실태 평가

Key Point

- ☑ 감사(또는 감사위원회)는 각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개요

- 회사의 감사(또는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야 함
 - 종래 내부감사가 경영자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기 위한 절차가 불명확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가 형식적으로 운용된다는 지적이 있었음
 - 개정 외부감사법에서는 실효성 있는 평가를 위하여 실태평가를 위한 대면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주요 논의내용을 문서화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절차를 강화하였음

나. 운영실태 평가

- 감사(또는 감사위원회)는 각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해야 함(영 제9조 제7항)
 - 감사위원회는 운영실태를 평가하기 위해 대면 회의를 개최하고, 감사(또는 감사위원회)는 검토사항을 문서(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로 작성·관리하여야 함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에 작성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평가보고서에 작성할 사항

- ①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 여부를 평가한 결과 및 시정 의견
-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및 조치 내용
-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해당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개선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및 대안

3 공시



Key Point

-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공시대상이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으로 확대되었고, 일부 공시 사항도 추가되었다.

- 개정 외부감사법은 주권상장법인 뿐 아니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사항을 사업보고서에 첨부하여 공시하도록 하였음 (영 제9조 제9항)
 - ※ 개정 전 외부감사법은 주권상장법인에 한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었음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사항

- ①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 ②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의견 또는 감사의견
-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 ④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 또한 회계담당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의 공시사항 외에 회계 담당자의 교육이수 현황, 근무경력 등을 추가로 공시하여 정보이용자

또는 투자자가 회사의 회계역량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였음(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3호서식)

< 개정 전후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사항 비교 >

개정전		개정('18.11.1. 이후 종로 사업연도부터)							
대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권상장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보고서 제출법인							
회계 담당자 공시	- 회계담당자 교육, 경력 공시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회계담당자 교육, 경력, 상장현 등 등록여부 공시							
		직책 (직위)	성명	전화 번호	회계 담당자 등록 여부	경력		교육실적	
						근무 연수	회계관 련경력	당기	누적
		내부회계관리자							

IV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 및 감사

Key Point

-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수준이 자산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2019 사업연도부터 '감사'로 상향되었다.

1 개요

- 개정 전 외부감사법은 회사가 감사인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준수 여부 등을 “검토”받아야 할 의무를 부여하였음

외부감사인의 개요
외부감사의 내용
감사의의의
회계(회계장) - 회계(회계장)
회계(회계장) - 회계(회계장)
회계(회계장) - 회계(회계장)
회계(회계장) - 회계(회계장)
회계(회계장) - 회계(회계장)
회계(회계장) - 회계(회계장)
회계(회계장) - 회계(회계장)
회계(회계장) - 회계(회계장)

○ 이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확인정도가 소극적 확신을 표명하는 '검토' 수준으로 형식적인 검증을 수행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음

■ 개정 외부감사법은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 수준을 과거의 소극적인 "검토"에서 적극적 확신을 표명하는 '감사'로 상향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인증의 실효성을 강화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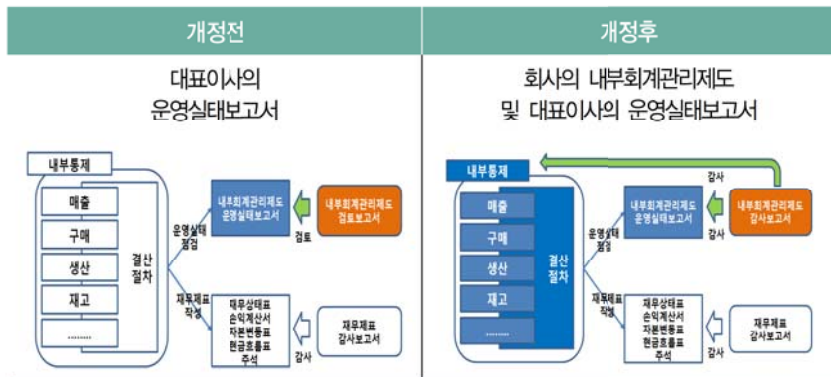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는 상장회사의 자산규모에 따라 2019년 감사부터 다음과 같이 순차적용됨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적용시기

- ① 직전 사업연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 : 2019 사업연도부터
- ② 직전 사업연도 자산 5천억 이상 상장회사 : 2020 사업연도부터
- ③ 직전 사업연도 자산 1천억 이상 상장회사 : 2022 사업연도부터
- ④ 기타 나머지 상장회사 : 2023 사업연도부터

※ 상장회사에 대한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가 2022 사업연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므로, 이후 상장회사는 개별회사 및 연결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각각 감사를 받게 됨

< 개정전·후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대상 비교 >



2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내용

- 외부감사인인 기존에 수행했던 질문 위주의 절차가 아닌 문서검사, 재수행 등 강화된 절차를 수행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을 표명함 (법 제8조 제6항 및 제7항)
 - ‘검토’는 회사가 점검한 운영실태보고서를 대상으로 의견을 표명하지만,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체의 효과성과 운영실태보고서를 모두 감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범위가 연결실체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확대 되는 상장회사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범위도 연결실체 중심으로 확대됨
 - 이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의견은 연결기업에 대하여 의견 표명이 이루어지게 됨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내용 〉

	개정전	개정('19년부터 순차적용)
감사인 수행절차	○ 질문 및 제한된 문서 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 질문, 관찰, 문서검사, 재수행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
감사인 인증수준	○ 검토 (소극적 확인) - 의견 예시 :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함”	○ 감사 (합리적 확인) - 의견 예시 : “감사결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설계운영체계에 따라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장)는 재무제표 심사 또는 감리 과정에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 감리할 수 있음

참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주요 법규 시행시기

직전사업연도말 자산규모		상장사 감사인 인증수준 상향 (검토→감사)	상장사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대표자의 주총 등 보고
상 장 회 사	2조원 이상	2019 사업연도	2022 사업연도	2018.11.1. 이후 보고부터
	5천억원 ~ 2조원	2020 사업연도	2023 사업연도	
	1천억원 ~ 5천억원	2022 사업연도	2024 사업연도	
	1천억원 미만	2023 사업연도		
비상장 회사		해당사항 없음		

제

9

장

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제도

—
읽기 쉬운

「법인회계법 가이드북」

- I. 감사인 등록제도란?
- II.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 III. 감사인 등록절차
- IV.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의 효과



제9장 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제도

I 감사인 등록제도란?



Key Point

- ☑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외부감사는 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만이 할 수 있다.
- * 상장예정법인에 대한 감사인 지정시에도 등록된 회계법인으로 지정

- 개정 외부감사법은 주권상장법인을 감사하고자 하는 회계법인은 금융위원회가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였음(법 제9조의2 제1항)
 - 등록감사인만이 감사할 수 있는 주권상장법인이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의미함
 - 상장법인을 감사하고자 하는 회계법인은 금융위원회가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못한 회계법인은 상장법인에 대한 감사업무가 불가능함
 - 등록요건은 인력, 물적설비, 심리체계, 보상체계, 업무방법 등 외감 규정 별표 1에서 그 내용을 정하고 있음(후술하는 II.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참조)
 - 감사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회계법인은 상장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장법인의 지정감사인도 될 수 없음
 - 상장법인 뿐만 아니라 상장예정법인에 대한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을 지정함
 - 회계법인은 등록이 된 이후에도 등록요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II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개요 >

구분	등록요건(요약)										
1. 인력	가. 감사가능 등록회계사 수 : 상시 근무 40명 이상 (단, 지방회계법인은 20명 이상)										
	나. 대표이사 경력기간 : 10년 이상										
	다.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경력기간 : 7년 이상										
	라.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외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는 품질관리업무만을 수행										
마.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수(경력 5년 이상 회계사로 품질관리업무만 전담)	<table border="1"> <thead> <tr> <th>공인회계사 수</th> <th>40~70</th> <th>71~100</th> <th>101~300</th> <th>301~</th> </tr> </thead> <tbody> <tr> <td>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수</td> <td>1명 이상</td> <td>2명 이상</td> <td>2명 + 100명 초과인 원× 2% 이상(소수점 이하 절사)</td> <td>6명 + 300명 초과인 원× 1% 이상(소수점 이하 절사)</td> </tr> </tbody> </table>	공인회계사 수	40~70	71~100	101~300	301~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수	1명 이상	2명 이상	2명 + 100명 초과인 원× 2% 이상(소수점 이하 절사)	6명 + 300명 초과인 원× 1% 이상(소수점 이하 절사)
공인회계사 수	40~70	71~100	101~300	301~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수	1명 이상	2명 이상	2명 + 100명 초과인 원× 2% 이상(소수점 이하 절사)	6명 + 300명 초과인 원× 1% 이상(소수점 이하 절사)							
2. 물적 설비 및 업무 방법	가. 통합관리체계 (인사, 자금, 회계, 내부통제, 감사업무수입, 품질관리 등 경영전반) 구축운영										
	나. 지배구조의 건전성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 (대표이사 등을 효율적으로 견제)										
	다. 독립성 점검·관리 체계 구축운영										
	라. 감사업무 수행이사 선정 절차 및 방법의 공정성, 투명성, 합리성										
	마. 감사업무시간 관리 체계 구축운영										
바. 감사업무 관련 정보(감사조서 등)의 관리체계 구축운영											
3. 심리 체계	가. 심리담당자 자격요건 :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경력 5년 이상 공인회계사										
	나. 심리 대상·범위·방법·절차, 심리담당자 자격요건, 권한 및 책임 등 규정화										
	다. 필수 사전심리대상 :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 금융회사, 감사인 지정회사 등										
	라. 사후심리 : 감사업무 수행이사 중 30% 이상										
마. 심리결과 문서화 :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대한 검토내용											
4. 보상 체계	가. 이사 성과평가 : 감사업무 품질평가지표* 비중을 70% 이상 * ①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등 조치 유무, ②심리결과 및 내부규정 준수여부, ③투입시간, 독립성점검결과, ④교육시간, ⑤ 함께 감사업무 수행한 자의 설문조사 결과 등을 포함하여 회계법인이 자율결정										
	나.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평균연봉 : 소속 회계사 평균 연봉 이상										



1 인력에 관한 사항

가. 등록 공인회계사 수

- 상시근무하는 등록 공인회계사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이수한 자를 40명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 다만 지방회계법인(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인천·경기 외 지역인 경우)의 경우에는 등록 공인회계사를 20명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도 허용됨
 - 지방회계법인 대부분은 소속 공인회계사가 20명 이하이며 회계법인이 대부분 서울에 소재하고 있어 지방회계법인의 합병이 어렵고,
 - 지방 상장사의 외부감사인 선택권이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예외를 허용

나. 대표이사 등 경력

- 대표이사는 10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는 7년 이상 및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는 5년 이상의 경력기간을 갖추어야 함
 - 경력기간이란 외부감사법에 따른 실무수습 이후 회계처리 또는 외부 감사를 수행한 기간을 의미함

다. 품질관리업무 담당인력

- 품질관리업무 담당 인력은 품질관리제도 설계, 감사보고서 심리, 관련 교육훈련 등 외감규정에서 정한 업무만을 수행하여야 함
 - 감사보고서의 심리란 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중요한 판단사항 및 감사보고서 작성 내용을 감사조서, 증빙자료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감사의견에 흠결이 없도록 하는 품질관리 활동을 의미함
-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수를 일정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 수에 따라 두어야 하는 품질관리 업무담당자의 수는 다음과 같음

〈 규모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담당자의 수 〉

공인회계사 수	40명~70명	71명~100명	101명~300명	301명 이상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수 (담당임원 제외)	1명 이상	2명 이상	2명에 100명을 초과한 인원의 2%를 합한 수 이상 (소수점 이하는 버림)	6명에 300명을 초과한 인원의 1%를 합한 수 이상 (소수점 이하는 버림)

2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가. 통합관리체계 구축

- 감사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회계법인은 감사품질관리의 효과성·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사, 자금, 품질관리 등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조직, 내규, 전산 등 체계(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국내 회계법인의 상당수는 '독립채산제'(법인 내 감사조직들이 각각 수입한 감사 건 관련 수입·지출을 자체 관리하고, 법인에는 할당받은 분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의 경영)로 운영되기 때문에 품질관리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나. 지배구조의 건전성, 감사업무의 신뢰성 확보 등

- 지배구조의 건전성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표이사 및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등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감사 기구 운영규정 등)를 마련하여야 함
 - 또한 감사업무 담당자의 독립성·전문성 확보, 감사투입시간 측정, 감사조서 관리 등에 대하여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외부감사인의 개요
외부감사의 대상
감사의의의선정
감사의의의지정(1)
감사의의의지정(2)
감사의의의지정(3)
감사의의의의 책임변경
재무제표의 진실성을 위한
내부통제관리제도의
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



3 심리체계 및 보상체계

가. 심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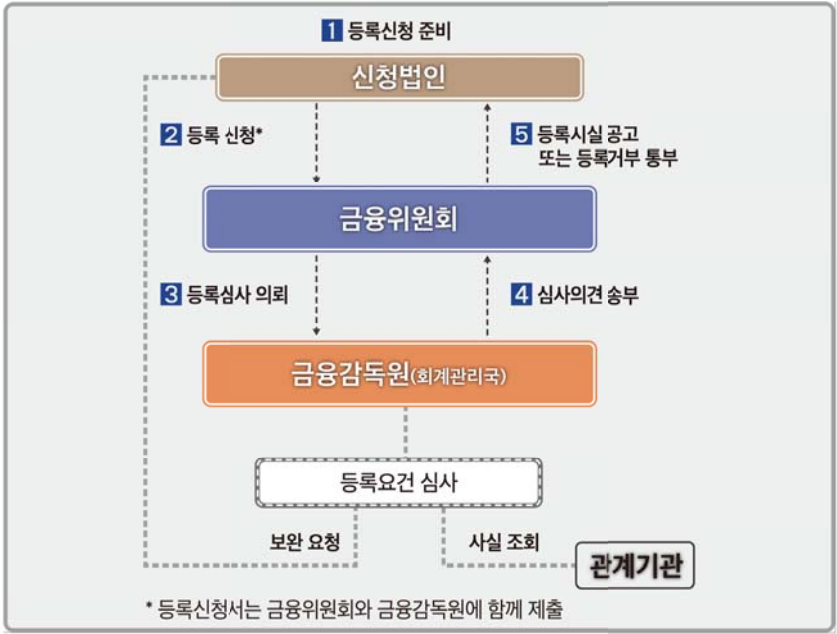
-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또는 경력기간이 5년 이상인 공인회계사로서 일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된 사람이 심리를 수행하고,
 - 심리의 대상·범위·방법·절차, 심리를 담당하는 사람의 자격요건, 권한 및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함
- 상장회사, 대형비상장회사, 금융회사,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 등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발행 전에 심리를 하여야 하며,
 - 직전 사업연도에 감사업무를 수행한 이사 중 100분의 30 이상에 대하여 그 이사가 담당하여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심리하여야 함
 - 또한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 내용은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함

나. 보상체계

- 감사역량이 높은 인력이 회계법인 내에서 대우받을 수 있도록 감사업무 수행 이사의 성과측정 지표의 70% 이상을 감사품질 관련 항목(감사보고서 심리결과, 외부감사 업무투입 시간, 교육시간, 행정조치 유무 등)으로 구성하여야 함
 -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평균 연봉은 그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충분히 반영하여 소속 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평균연봉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급하여야 함

Ⅲ 감사인 등록절차

〈 등록절차 흐름도 〉



1 등록신청

-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이 되려는 자(신청인)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영 제11조 제1항)
 - 감사인 등록심사업무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으므로 등록 신청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에게 함께 제출함
 - 등록신청을 하려는 회계법인은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을 정관 또는 내규로 규정화하여야 함
 - 등록요건에 관한 서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시행세칙에 따름

외부감사인의 개요
 외부감사인의 내용
 감사인의 선임
 감사인의 직명
 감사인의 직명
 감사인의 직명
 감사인의 책임 변경
 재무제표의 진실 제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이행요건
 감사인명명부



2 등록심사

-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금융위원회는 등록심사를 금감원장에게 의뢰하고,
 - 금감원장은 등록신청서 검토 및 관계기관 사실조회 등을 통해 등록 거부사유 및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면서, 필요시 신청인에 등록 신청 내용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금융위원회는 등록신청서 접수일부터 4개월(심사기간) 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영 제11조 제2항)하나, 다음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외감규정 제8조 제9항)

심사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

- ① 등록신청서 흡결 보완 기간(보완요구일~보완자료 제출일)
- ② 금감원 자료요구에 따른 자료 제출기간(자료요구일~자료제출일)
- ③ 금감원이 신청인에 현장조사를 요구한 날부터 현장조사에 대한 동의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
- ④ 신청인의 대표이사 또는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가 형사소송의 당사자인 경우 그 소송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 ⑤ 금감원이 등록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예: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데 걸리는 기간
- ⑥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의 심사결과를 접수받은 날부터 등록을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

3 등록사실 공고 또는 등록거부 통보

-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장의 등록심사결과를 검토하여 등록여부를 최종 결정한 후 등록심사결과를 회계법인에 통보하고 관보 및 홈페이지에 공개
 - 등록감사인은 등록 이후에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거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 등록취소 또는 업무의 전부·일부취소(법 제29조 제3항 제1,2호)의 조치를 받는 경우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IV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의 효과

Key Point

☑ 미등록 감사인은 2019.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주권상장법인의 감사를 할 수 없다.

- 감사인 등록제 시행 이후 미등록 회계법인의 주권상장법인 감사는 금지됨
 - 감사인 등록제 시행 이후에는 미등록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은 3개 사업연도 연속 계약의무와 관계없이 해지 대상이 되고, 상장법인은 등록 회계법인과 다시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 미등록 회계법인이 감사인 등록제 시행 이전에 상장회사 등과 3개 사업연도 연속 계약을 체결하였다더라도 감사인 등록제 시행 이후에는 잔여계약 기간에 대하여 상장법인의 감사인이 될 수 없음
- 2019. 1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만 주권상장법인의 감사가 가능함
 - 2020 사업연도부터 신규로 감사계약을 체결하려는 주권상장법인은 감사계약 체결 전에 등록된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감사계약 체결 가능 여부는 감사계약 체결시점 등록여부로 판단
 - 외부감사법상 감사인 선임기한이 사업연도 개시 이전인 회사(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이전에 등록된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감사인 선임기한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라도 감사계약 체결 전에 등록된 회계법인과는 감사계약 체결이 가능함

감사인 선임시기에 따른 감사가능 여부



- 상장법인 감사인 미등록 회계법인은 감사인 등록제 시행 이후의 사업연도의 지정감사인도 될 수 없으므로,
 - 상장법인의 지정감사인이 되기 위해서는 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되어야 함

제

10

장

심사·감리제도

—
별기 3편
「공공기관심사법」 제41조제1호

- I. 심사·감리제도의 개요
- II. 심사·감리의 집행
- III. 심사·감리결과조치
- IV. 심사·감리결과조치에 대한 불복절차
- V. 심사·감리결과조치에 대한 직권재심



제 10 장 심사·감리제도

I

심사·감리제도의 개요

1

심사·감리의 의의



Key Point

- ☑ 감리는 회사의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품질관리 기준의 법령·기준 위반 여부 조사업무, 심사는 회사 재무제표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 조사 및 수정공시권고업무이다.

가. 심사·감리의 의의

- 외부감사법상 감리는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집행기관(금융감독원장·한국공인회계사회)이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기준 준수 여부,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 및 품질관리수준 평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정운영 여부, 그 밖의 외부감사법령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는 업무임
- 외감규정상 심사는 회사 재무제표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소명을 들은 후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재무제표 수정공시를 권고하는 업무임

- 개정 외감규정은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을 통한 투자자 보호 강화 및 회계감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존 감리제도와 별도로 간이한 감독절차인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도입하였음(2019년 4월 1일부터 실시)
- 재무제표 심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회사에 대한 동 위반사항의 수정공시권고를 통해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고, 과실(중과실 제외)로 인한 비반복적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공시 권고 이행시 금융감독원장의 경조치(경고·주의)로 심사를 종결할 수 있음

나. 심사·감리의 법적 성질

- 감리는 감독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 관계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 요구, 회사 및 관계회사에 대한 회계 관련 장부·서류의 열람 및 업무·재산상태의 조사업무로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제1호)
 - ※ 심사의 경우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 요구 등의 근거 규정은 없으나, 필요시 심사대상자의 임의협조를 받아 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다. 심사·감리 결과조치와의 구별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집행기관의 감리결과를 토대로 행정조치를, 금융감독원장은 심사결과를 토대로 행정조치(경고, 주의, 위법상태 시정·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권고)를 할 수 있음
 - 감리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의 법령·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기준 위반 여부를 조사·확인하는 업무(심사는 재무제표를 조사·확인하는 업무)로서, 동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와는 구별됨
 - 심사·감리 자체는 조사업무으로서 감리대상자에게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2 심사·감리집행기관

Key Point

☑ 상장사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이, 나머지 심사·감리 대상회사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심사·감리업무를 담당한다.

- 외부감사법상 감리업무의 주체는 증권선물위원회이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의 대상을 기준으로 감리업무를 나누어 감리집행기관(금융감독원장·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고 있음
 - 외감규정상 심사업무의 주체는 감리집행기관(금융감독원장·한국공인회계사회)임

〈 재무제표 심사·감리 및 조치업무의 주체 〉

업 무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사업보고서 비제출대상
심사·감리실시		금융원장	한공회	
제재 조치	심사결과 경고·주의	금융원장	한공회 또는 증선위 ^{주2}	
	그 밖의 조치	증선위 또는 금융위 ^{주1}		

주1) 감사인의 등록취소·업무정지,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직무정지, 과징금(자본시장법상 과징금 중 5억원 초과 과징금, 외감법상 과징금)은 금융위원회가 조치권자임

주2) 감사인·공인회계사(한국공인회계사회 조치), 회사(증권선물위원회 조치)

가. 금융감독원장의 심사·감리업무

1) 재무제표 심사·감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 금융감독원장은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②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 제38조), ③ 금융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의 심사·감리가 필요하다고 금융감독원장에게 통지한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업무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업무를 수행함(법 제38조 제1항, 영 제44조 제2항 제16호)

2) 감사보고서 및 품질관리기준 감리

- 금융감독원장은 ①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② 금융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통지한 감사인에 대한 감사보고서 및 품질관리기준 감리업무(품질관리수준 평가업무 포함)를 수행함(법 제38조 제1항, 영 제44조 제2항 제15호)

나.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심사·감리업무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심사·감리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에 대한 심사·감리업무를 수행하므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 금융기관, 금융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의 심사·감리가 필요하다고 금융감독원장에게 통지한 회사는 제외)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업무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업무,
 - 금융감독원의 감리대상 감사인을 제외한 나머지 감사인에 대한 감사보고서 및 품질관리기준 감리업무(품질관리수준 평가업무 포함)를 수행함(법 제38조 제2항, 영 제44조 제4항 제1호)

3 | 심사·감리의 대상



Key Point

- ☑ 감리의 대상은 회사의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품질관리기준이고, 심사의 대상은 회사의 재무제표이다.

가. 재무제표

- 회사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법 제5조 제3항),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감리의 대상이 됨



- 다만 여기서의 회사는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를 의미하므로 외부감사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회사의 재무제표는 감리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나. 감사보고서

-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므로(법 제16조 제1항), 감사보고서는 회계감사기준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감리의 대상이 됨
 - 다만 감사보고서가 외부감사법에 따라 선임된 감사인이 작성한 것이 아닌 경우(임의감사) 감리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다.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

- 감사인은 감사업무의 품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관한 기준(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므로(법 제17조 제1항),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는 감리의 대상이 되며,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도 실시될 수 있음

라. 내부회계관리제도

- 개정 전 외부감사법에서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적정운영, 감사인의 부실검토에 대해 감리 및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음
- 개정 외부감사법에서는 재무제표 감리 과정에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정운영 여부를 감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법 제26조 제1항 제4호, 영 제29조)
 - 주권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자산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감사 대상이 되므로,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 표명도 회계감사기준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감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법 제8조 제6항, 제26조 제1항 제1호, 영 제9조 제8항)

Ⅱ **심사·감리의 집행**

1 **심사·감리의 착수**

가. 재무제표 심사의 착수사유

- 감리집행기관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수 있음

① **표본 추출**

- 전산시스템에 의한 분석 등을 통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가능성 또는 예방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받은 후 경과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한 결과 선정된 경우임
(외감규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
 - 이러한 표본 추출 대상 회사의 경우 재무제표 감리 실시 이전에 먼저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여야 함
 - 상장예정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지정감사를 받고 있는 회사는 표본 추출 대상에서 제외됨

② **재무제표 자진수정**

- 공시된 재무제표를 회사가 자진수정하고 수정금액이 중요성 금액의 4배 이상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수정한 경우임
(외감규정 제23조 제1항 제3호, 제2항)
 - 이러한 재무제표 자진수정 회사의 경우 재무제표 감리 실시 이전에 먼저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여야 함

③ 혐의 입수

-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관한 제보가 접수되거나 중앙행정기관이 재무제표 감리를 의뢰한 경우, 금융회사 검사 등 금융감독원장의 업무 수행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발견된 경우임(외감규정 제23조 제1항 제7호, 제8호, 제3항)
 - 위와 같은 사유는 감리 착수사유에도 해당하며, 감리집행기관은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감리 실시 이전에 먼저 재무제표 심사를 거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나. 재무제표 감리의 착수사유 및 미실시사유

1) 재무제표 감리의 착수사유

- 감리집행기관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 (법 제26조 제1항 제2호)를 실시할 수 있음

① 재무제표 심사결과에 따른 감리의 착수사유

- 재무제표 심사결과 회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리 실시 사유가 됨(외감규정 제23조 제1항 제2호)

감리실시 사유가 되는 위법사항 등

- ①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가 고의·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심사 착수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상태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발견된 경우
- ③ 회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수정공시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감리집행기관은 재무제표 심사결과 위 감리 착수사유에 해당하여 재무제표 감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외감규정 제23조 제5항)

② 감리 등 업무결과 위법사항 발견

- 감리집행기관이 재무제표·감사보고서·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를 수행한 결과 재무제표 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외감규정 제23조 제1항 제4호)

③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대상 회사 통지

-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재무제표 감리 대상 회사를 정하여 감리집행기관에 알리는 경우(외감규정 제23조 제1항 제5호)

④ 회사의 감리신청

- 회사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을 면제 받기 위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감리집행기관)에 감리를 신청할 수 있음(법 제11조 제3항 제2호, 영 제15조 제5항)
 - 이에 따라 회사가 감리집행기관에 재무제표 감리를 신청한 경우 감리 실시 사유가 됨(외감규정 제23조 제1항 제6호)

⑤ 혐의 입수

-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관한 제보가 접수되거나 중앙행정기관이 재무제표 감리를 의뢰한 경우, 금융회사 검사 등 금융감독원장의 업무수행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발견된 경우(외감규정 제23조 제1항 제7호, 제8호)
 - 위와 같은 사유는 재무제표 심사 착수사유에도 해당하며, 감리집행기관은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감리 실시 이전에 먼저 재무제표 심사를 거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외감규정 제23조 제3항)

2) 재무제표 감리의 미실시사유

- 감리집행기관은 회사가 감리대상에 해당하더라도 회사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감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① 수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 해당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 형사소송 또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외감규정 제23조 제6항 제1호). 다만 수사기관이 재무제표 감리를 의뢰한 경우는 제외됨
 -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을 존중함과 동시에 외부의 영향력 없이 공정하고 독립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목적임

② 강제조사가 필요한 경우

- 감리절차는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임의조사이므로, 조사에 한계가 존재할 수 있음
 - 해당 혐의에 대한 상당한 증거가 있으나 사안의 성격상 수사기관의 강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강제조사에 의할 수 있도록 감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외감규정 제23조 제6항 제2호)

③ 사안이 경미한 경우

- 해당 혐의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외감규정 제23조 제6항 제3호)
 - 사안이 경미하여 외감규정 시행세칙의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에 규정된 위반행위 유형별 중요성 기준금액(Ⅳ. 2.)에 미달하여 조치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의미

④ 감사조서 보존기간 경과

- 감사인은 감사조서를 감사종료 시점부터 8년간 보존하여야 하는데(법 제19조 제2항), 이에 따른 감사조서 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외감규정 제23조 제6항 제4호)
 - ※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회사의 회계기록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적용하였던 감사절차의 내용과 그 과정에서 입수한 정보 및 정보의 분석결과 등을 문서화한 서류(자기테이프·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 포함)를 작성하여야 함(법 제19조 제1항)

⑤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해석이 적절한 경우

- 감리집행기관은 재무제표 심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의 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그 쟁점 관련 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함(규정 제23조 제4항)
 - 이에 따라 감리집행기관이 보고한 내용 중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해당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회사의 해석이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외감규정 제23조 제6항 제5호)

다. 감사보고서·품질관리기준 감리의 착수사유

- 감리집행기관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감사인에 대하여 감사보고서 감리(법 제26조 제1항 제1호), 품질관리기준 감리 또는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법 제26조 제1항 제3호)를 실시할 수 있음

감사인 감리 착수사유(외감규정 제23조 제7항)

- ① 표본 추출 등(외감규정 제23조 제7항 제1호)
 - ㉠ 회계감사 대상 회사 중에서 주권상장법인 또는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지, 감리집행기관의 품질관리 감리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감리집행기관이 감사인 감리 대상으로 선정할 경우
 - ㉡ 사업보고서 또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이 제출하는 수시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등 경영투명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 ㉢ 감사인 감리를 받은 후 경과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한 결과 감사인 감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 ② 외국 회계감독기관과의 공동 감리(외감규정 제23조 제7항 제2호)
 - 외국 회계감독기관의 요청을 고려하여 외국 회계감독기관과 함께 감사인 감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③ 혐의 입수(외감규정 제23조 제7항 제3호)
 - 상장법인 등록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의무, 회계감사기준 또는 품질관리기준 등을 위반했다는 제보(실명으로 제보하는 건에 한정)가 접수되거나 중앙행정기관이 감사인



감리를 의뢰한 경우에 그 내용 및 관련 증빙자료를 각각 검토한 결과 법령 등의 위반 혐의가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감리 등 업무결과 위법사항 발견(외감규정 제23조 제7항 제4호)
 - 감리집행기관이 감리 등을 수행한 결과 감사인 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⑤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대상 감사인 통지(외감규정 제23조 제7항 제5호)
 -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 감리 대상 감사인을 선정하여 감리집행 기관에 알리는 경우

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의 착수사유

- 감리집행기관은 재무제표 감리를 받는 회사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를 실시할 수 있음
(법 제26조 제1항 제4호, 영 제29조, 외감규정 제23조 제8항)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실시사유

- ①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에 기인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에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취약사항이 있다는 감사 의견 또는 검토의견을 제시한 경우

2 심사·감리의 절차 및 방법

가. 심사의 절차 및 방법

1) 심사대상 선정 및 착수

- 표본 추출, 재무제표 자진수정, 혐의 입수를 사유로 심사대상을 선정하고, 심사 착수시 심사대상 회사에 심사 착수사실 및 심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을 통보함

2) 재무제표 점검

- 공시된 재무제표 등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는지 점검하고 심사 결과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소명을 받아 검토함

3) 무혐의 종결

- 심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무혐의로 절차를 종결하고, 심사대상 회사에 이를 알려야 함(외감규정 제28조 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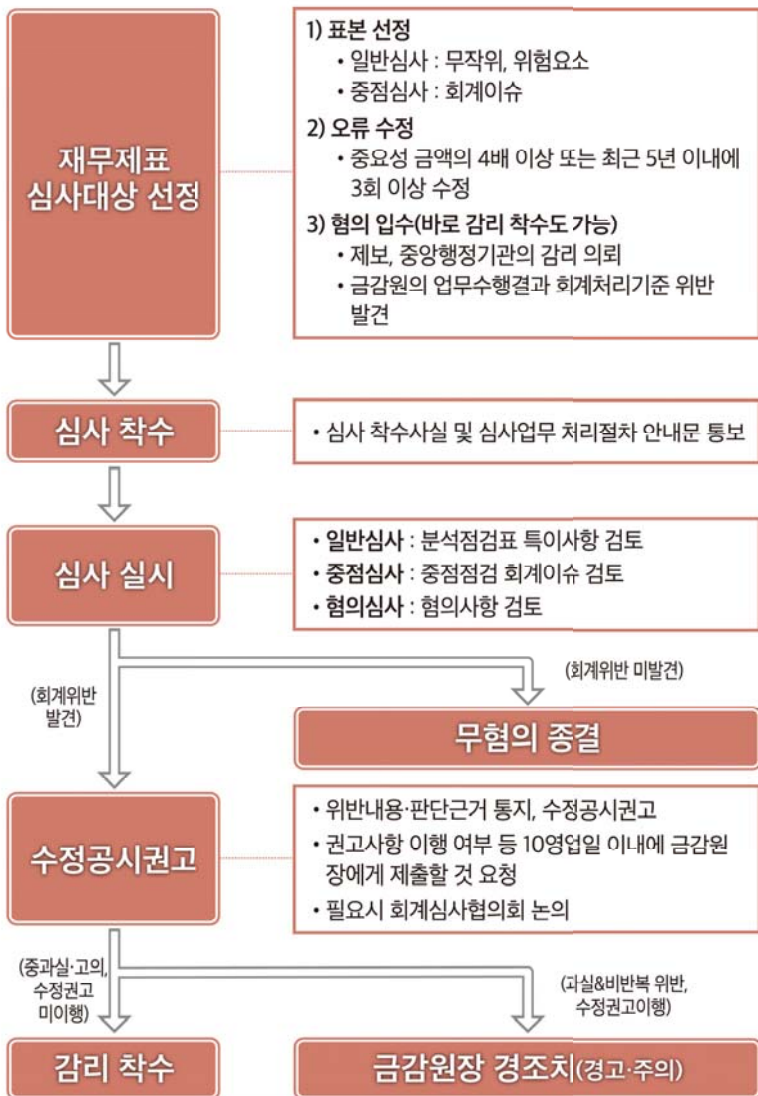
4) 수정공시권고 후 경조치 종결

- 심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 발견시 회사에 동 위반사항의 수정공시를 권고하고, 과실(중과실 제외)로 인한 비반복적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공시권고 이행시 금융감독원장의 경조치(경고·주의)로 심사 종결함

5) 감리 실시

- 심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가 고의·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 착수일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상태에서 회계처리 기준 위반혐의가 발견된 경우, 회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수정공시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리에 착수할 수 있음

〈 재무제표 심사 절차 〉



나. 감리의 절차 및 방법

1) 감리대상 선정 및 착수

- 재표제표 심사결과 고의·중과실 등, 감리 등 업무결과 위반사항 발견,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대상 회사 통지 등 감리 착수사유에 해당하는 회사를 감리대상으로 선정하고, 감리 착수시 감리대상 회사에 감리 착수사실 및 감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을 통보함

2) 감리의 실시(방법)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 관계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요구하고,
 - 금융감독원장에게 회사 및 관계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 업무·재산상태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음(법 제27조 제1항)
- 위와 같은 감리를 위한 조사업무는 감리 등 업무와 함께 감리집행기관에게 위탁되어 있어(법 제38조 제1항, 영 제44조 제2항 제17호, 제4항 제2호) 감리집행기관은 감리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감리 등 대상회사, 관계회사 및 감사인에게 요구할 수 있음(규정 제24조 제2항)
 - ① 회사, 관계회사 및 감사인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
 - ② 회사 및 관계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 회계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 업무·재산상태의 조사
- 피조사자가 변호사를 감리조사과정에 참여시켜줄 것을 감리집행기관에 요구하는 경우 감리집행기관은 원칙적으로 그 대리인을 조사과정에 참여시켜야 함

- 다만, 다음과 같은 감리지장초래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사과정 참여를 거부할 수 있음(외감규정 제24조 제4항)

조사과정 참여거부 사유

- ① 증거의 인멸·은닉·조작 또는 조작된 증거의 사용
- ② 공범의 도주 등 감리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 ③ 피해자, 해당 사건에 대한 감리 등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대한 침해
- ④ 피조사자가 진술 등 조사과정에 협조함으로 인해 소속 회사 또는 회계법인 등으로 부터 받는 불이익

- 감리집행기관은 대리인의 조사과정 참여 후 위 감리지장초래사유 또는 다음과 같은 감리방해사유의 발생·발생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음(외감규정 제24조 제5항)

대리인 퇴거 요구 사유

- ① 피조사자의 대리인 참여요청이 조사의 개시 및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② 감리집행기관의 승인 없이 심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을 하는 경우
- ③ 피조사자에게 특정한 답변 또는 부당한 진술 반복을 유도하는 경우
- ④ 조사과정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
- ⑤ 그 밖에 조사목적 달성을 현저하게 어렵게 하는 경우

- 감리집행기관은 대리인의 조사과정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를 피조사자의 문답서, 감리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안전에 각각 기재하여야 함(외감규정 제24조 제6항)
- 감리집행기관은 감리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행위에 대하여 조치를 하는 경우 조치대상 회사, 감사인에게 질문서를 발부하여 이에 대한 답변과 소명기회를 주어야 함

- 다만, 감리조사과정에서 확보한 문답서, 진술서 또는 확인서를 통해 질문서를 발부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 등이 충분히 소명된 경우에는 질문서 발부 생략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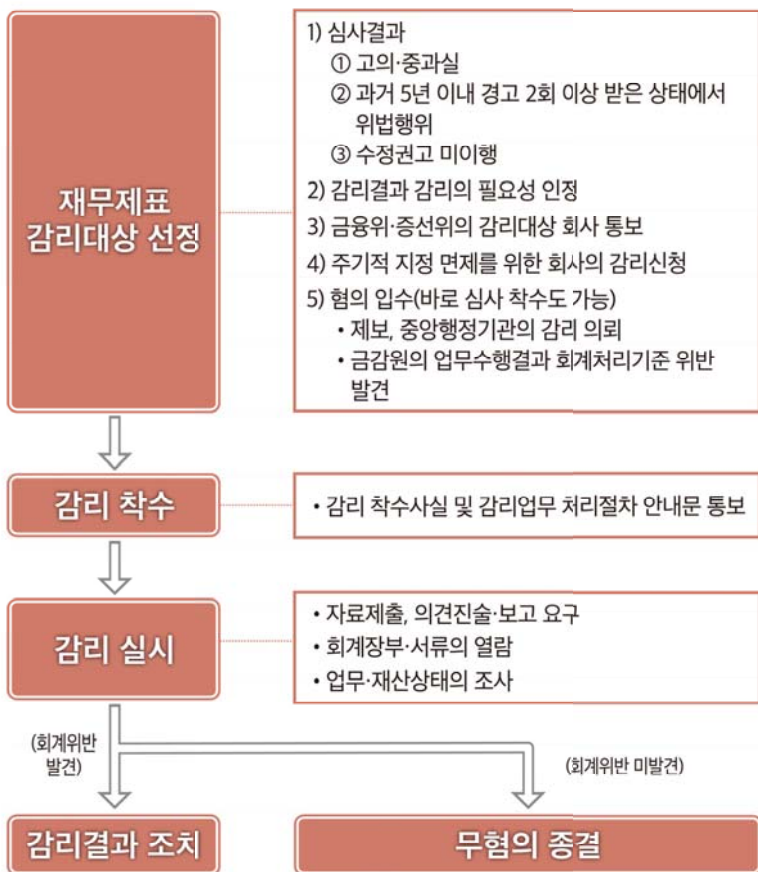
3) 무혐의 종결

- 감리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무혐의로 감리를 종결함

4) 조치안 작성

- 금융감독원장은 감리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또는 품질관리감리결과 개선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을 작성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함(시행세칙 제38조 제1항)

〈 재무제표 감리 절차 〉



3 심사·감리결과의 처리

가. 심사결과 처리절차

1) 회계심사협의회의 심의

- 수정공시권고, 금융감독원장의 조치 등 심사결과의 처리에 있어 절차의 투명성 및 조치의 일관성 등 제고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회계심사협의회의 설치·운영
 - 금융감독원의 전문심의위원(의장), 회계학교수, 회계심사·감리부서장 등으로 구성
 - 심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내용·동기, 수정공시권고 여부, 회계처리 기준 관련 쟁점의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보고 여부 등 심의

2) 위반사항 수정공시권고

- 금융감독원장은 심사결과 위반사항 발견시 심사대상 회사에게 위반의 내용 및 판단근거를 통지하고, 이에 대한 자체 검토 및 감사인 협의의 후 동 위반사항을 수정공시할 것을 권고하며,
 - 권고내용에 대한 자체 검토 및 감사인과의 협의결과,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 권고사항의 이행결과 또는 미이행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심사대상 회사가 수정공시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또는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된 이행계획기간 이내에 수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특별한 이유 없는 수정공시권고 미이행'으로 보아 감리 착수 가능.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감리 착수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① 심사대상 회사가 수정공시권고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이유를 제출한 경우



② 심사대상 회사가 수정공시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수정공시권고에 대한 이행의사 및 이행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 금융감독원장은 수정공시권고의 대상인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이미 충실하게 수정공시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수정공시권고를 생략할 수 있음 (시행세칙 제37조의2)

3) 금융감독원장의 경조치 종결

- 과실(중과실 제외)로 인한 비반복적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공시권고 이행시 금융감독원장의 경조치(경고·주의)로 심사 종결
 - 금융감독원장은 심사결과 경조치(경고·주의)를 하는 경우 조치예정일 10일 전까지 위반사실 및 예정된 조치의 종류를 기재한 조치사전통지서를 피조치자에게 송부하여야 함(시행세칙 제40조 제1항)
 - 다만,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조치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음(시행세칙 제40조 제2항)
 - 조치 내용·이유, 불복절차 등을 피조치자에게 통지하여 조치 시행

나. 감리결과 처리절차

- 금융감독원장은 감리결과 위반사항을 발견하는 경우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을 작성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치 여부를 결정함
 - 금융위원회의 조치(감사인의 등록취소·업무정지,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직무정제)의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조치를 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고, 금융위원회는 동 건의를 참고하여 조치 여부를 결정함

- 금융감독원장은 감리결과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감리 결과보고 및 처리(안)의 상정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기 전에 위반 사실 및 예정된 조치의 종류를 기재한 조치사전통지서를 피조치자에게 송부하여야 함(시행세칙 제40조 제1항)
- 다만,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조치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 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를 아니 할 수 있음(시행세칙 제40조 제2항)

1) 감리위원회의 심의

- 감리위원회는 감리결과조치·이의신청·직권재심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증권선물위원회 소속 기관임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 연임 가능
 - 감리결과조치·이의신청·직권재심 안건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경우 감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다만,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한 처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

- 증권선물위원회는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감리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금융위원회 소속 기관임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1명은 상임임
 - 위원장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한 차례 연임 가능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조치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 감리결과조치 여부 및 종류·양정을 결정함
 - 감리결과조치의 처분권자는 일반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이나 조치 중 감사인의 등록취소·업무정지,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직무정지의 처분권자는 금융위원회이며(공인회계사법 제39조, 제48조)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결과 위반행위가 등록취소·업무(직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해당 조치의 건의를 할 수 있음
 -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중 5억원 이하 과징금의 부과권자임(자본시장법 제429조, 제43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87조 제1항)

3) 금융위원회의 의결

-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 금융감독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기관임
 -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기획재정부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 임명직 위원(금융전문가 2명, 경제계대표 1명)의 임기는 3년이고, 한 차례 연임 가능
- 금융위원회는 감리결과조치 중 감사인의 등록취소·업무정지,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직무정지의 처분권자로서 증권선물위원회의 건의를 참고하여 동 조치 여부를 결정
 - 또한 금융위원회는 법에 새롭게 도입된 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중 5억원 초과 과징금의 부과권자임(법 제35조, 자본시장법 제429조)

Ⅲ **심사·감리결과조치****1** **행정제재조치****가. 회사에 대한 조치**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또한 퇴임·퇴직 임원이 해당 회사에 재임·재직 중이었다라면 동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해당 회사에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를 받은 회사는 그 사실을 해당 임원에게 통보하여야 함(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외감규정 제26조 제1항)

회사에 대한 조치

- ①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 ② 임원의 6개월 이내 직무정지
- ③ 1년 이내의 증권 발행제한
- ④ 3개 사업연도 이내의 감사인 지정
- ⑤ 경고
- ⑥ 주의
- ⑦ 시정요구, 각서(회계처리기준을 성실하게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말한다)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나. 감사인에 대한 조치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음(법 제29조 제3항, 외감규정 제26조 제3항)

감사인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에의 처분건의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의 등록취소, 1년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음
- 다만 금융위원회의 감사인 등록취소·업무정지처분은 공인회계사법 제39조의 조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모든 외부감사법령 위반이 감사인 등록취소·업무정지사유가 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의 위반사항이 외부감사법상의 조치건의사유 및 공인회계사법상의 감사인 등록취소·업무정지사유가 되는 경우 등 조치의 건의 가능

② 감사인이 조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회사 중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③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④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를 한도로 함)

⑤ 경고

⑥ 주의

⑦ 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 감리결과 감사업무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년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대한 개선권고를 할 수 있고,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음
 - 또한 개선권고사항 및 정당한 이유 없는 미이행 사실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음(법 제29조 제5항~제7항)

다.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음(법 제29조 제4항, 외감규정 제26조 제4항)

- 감사담당이사를 주책임자, 주책임자의 감사업무를 보조한 공인회계사를 보조책임자로 하여 조치(외감규정 제26조 제5항)
-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람이 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대한 조치 가능(외감규정 제26조 제6항)
 - ① 주책임자에 등록취소건의, 1년 이상의 전부 직무정지건의를 하는 경우 : 해당 감사보고서에 서명한 감사인의 대표이사
 - ② 주책임자에 등록취소건의, 직무정지건의,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 주식회사·법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을 하는 경우 : 주책임자의 지시·위임에 따라 담당 공인회계사를 감독하는 공인회계사(중간감독자)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

- ① 금융위원회에의 처분건의
 -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2년 이내의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음
 - 다만 금융위원회의 공인회계사 등록취소·직무정지처분은 공인회계사법 제48조의 조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모든 외부감사법령 위반이 공인회계사 등록취소·직무정지사유가 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인회계사의 위반사항이 외부감사법상의 조치건의사유 및 공인회계사법상의 공인회계사 등록취소·직무정지사유가 되는 경우 동 조치의 건의 가능
- ② 공인회계사가 조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회사 중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 ③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위반행위와 관련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 ④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실시의무 부과(연간 20시간 이내)
- ⑤ 경고
- ⑥ 주의
- ⑦ 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2 검찰에 대한 고발 등

- 증권선물위원회는 재무제표 감리 또는 감사인 감리를 한 결과 외부감사법상 형벌규정(법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벌칙부과 대상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관계자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함
 - 다만, 위법행위의 동기·원인 또는 결과 등에 비추어 정상참작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자를 고발하지 않고 검찰총장에 대한 통보를 할 수 있음
 - 고발은 범죄피해자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게 되는 원인이나
 - 이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고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위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제반 정황으로 보아 벌칙부과 대상행위가 있다는 상당한 의심이 가고 사건의 성격상 수사기관의 강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음(외감규정 제26조 제8항)

IV

심사·감리결과조치에 대한 불복절차



Key Point

☑ 심사·감리결과조치에 대한 주요 불복절차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다.

-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함(행정절차법 제26조)
- 금융위원회 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리집행기관은 조치 등을 하는 경우에 피조치자에게 조치 등의 내용, 사유 및 조치 등에 대한 불복절차를 알려주어야 함
 - 다만 검찰에 고발 등을 하는 경우에는 알려주지 아니할 수 있음(외감 규정 제33조 제1항)
- 처분에 해당하는 심사·감리결과조치시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절차를 준수 하여야 하므로 불복절차의 고지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고발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절차가 적용되지 아니함
- 피조치자에게 인정되는 주요 불복절차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임

1

이의신청

가.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 등을 수행한 결과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 또는 고발 등(조치 등)을 하는 경우,

- 피조치자는 조치 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외감규정 제33조 제2항)
- 외부감사법상 이의신청제도는 피조치자가 조치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조치사항의 당부에 대하여 행정청 내부에서 직권으로 재검토받을 기회를 당사자에게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행정심판 제도와 취지가 유사하나 행정심판에는 해당하지 않음

나. 이의신청 절차

- 피조치자는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 이유를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금융위원회 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함
 -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알려야 하는 기한을 연기 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 도래 7일 전까지 그 사실(연기사유, 새로운 처리 기한 등 포함)을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함
 -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린 이후에 피조치자는 동일한 조치에 대하여 추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2 행정심판

가. 개요

- 심사·감리결과조치가 행정심판법상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행정청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

- 금융감독원장은 감리업무의 수행기관이고 감리결과조치를 처분한 기관은 아니므로 금융감독원장은 감리결과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의 상대방이 될 수는 없고, 심사결과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의 상대방이 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제도와와의 관계

- 이의신청제도는 행정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의신청과 별개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함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제3항)
 - 이의신청은 행정심판 청구기간의 진행을 중단·연기시키는 효과가 없으므로 이의신청 절차 진행 중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음

3 행정소송

가. 개요

- 심사·감리결과조치가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행정청(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금융감독원장이 감리결과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점은 행정심판에서 본 바와 같음

나. 이의신청과의 관계

- 취소소송(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음(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므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 재결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음



- 다만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청구 없이 이의 신청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제소기간은 심사·감리결과조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고, 이의신청은 행정소송 제소기간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심사·감리결과조치에 대하여 제기된 행정심판·행정소송이 인용되어 조치가 취소되는 경우(쟁송취소) 당해 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됨
 - 다만 행정심판·행정소송의 결과는 당사자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유사·동일한 쟁점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은 조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V

심사·감리결과조치에 대한 직권재심

-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당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직권취소)
 -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다시 심의하여 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외감규정 제35조)

직권재심 사유

- ①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 취지를 감안하여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을 검토할 때 조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증거문서의 오류·누락 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에 반하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으로 조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고

新외부감사법규 주요 개정내용 및 시행시기

구분	내용 (법조항)	시행시기
감사인 선임절차	□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4개월→45일*) (법§10①·②) * 단, 직전년도말 자산 2조원이상 상장사 등은 사업연도 개시일 전	'18.11.1.이후 사업연도부터
	□ 감사인 평가, 대면회의, 문서화 등 선임절차 강화 (법§10⑤·⑥)	
재무제표 심사제도	□ 재무제표상 특이사항을 분석하여 법규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회계 위반 등 발견시 수정공시를 권고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외감규정§23)	'19.4.1.시행
주기적 지정제	□ 상장회사,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회사에 대한 주기적 지정제 도입 (법§11③)	
감사인 등록제	□ 인적·물적요건을 갖춘 외부감사법상 등록 회계법인만 상장회사 감사 가능 (법§9조의2①)	'19.11.1.이후 사업연도부터
외감대상 확대	□ 소규모회사를 제외한 모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법§25②)	
회계위반 제재강화	□ 외부감사법상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설* 및 형사벌칙 강화** 등 (법§35①·②) * 회사 : 분식금액 20% 이내, 임직원 : 회사 과징금 10% 이내, 감사인 : 감사보수 5배 이내 ** 10년 이하 징역 등	'18.11.1.이후 위반행위부터
회계법인 공시강화	□ 5억 이상 이사보수현황, 품질중심의 성과평가체계 구축 여부 등 사업보고서 공시 강화 (법§25②)	'18.11.1.이후 사업연도부터
	□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에 대해 주요 경영 변동사항 등에 대한 수시 보고제도 신설 (법§25⑤)	'19.11.1.이후 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 관리제도 강화	□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화 (검토→감사) (법§8⑥)	'19~'23 사업연도
	□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연결기준으로 확대 (시행령§9조2③)	'22~'24 사업연도

알기 쉬운

新 외부감사법 가이드 북

기업 실무자의 新 외부감사법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서

- 본 자료는 외부감사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공식 유권해석이 아닌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자료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 회계관리총괄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책자는 2019년 11월 1일 현재 외부감사법령 등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집필진** : 회계관리국 국장 최 상
회계관리국 팀장 김종근
회계관리국 백주현 선임조사역(변호사)
- 감수** : 회계관리국, 회계심사국,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발행처** : 금융감독원
- 조판·인쇄** : 서광인쇄공사

(비매품)